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 士 學 位 論 文

한 · 중 · 일 경제공동체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 국제법적 관점에서 -

濟州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崔 紅 東

2010年 8月

한·중·일 경제공동체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 국제법적 관점에서 -

指導教授 金 富 燦

崔 紅 東

이 論文을 法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8月

崔紅東의 法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 (인)

委 員_____ (인)

委 員_____ (인)

委 員_____ (인)

委 員_____ (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年 8月

**A Study on Modeling for
Korea–China–Japan Economic Community**

–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Law –

Hong Dong Cui

(Supervised by Professor Boo Cha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Law

201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5
제2장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에 관한 규범적 접근	8
제1절 경제의 세계화와 다자주의	8
1. 세계화와 경제세계화의 의의	8
1) 세계화의 의의	8
(1) 세계화의 발전과정	8
(2) 세계화의 개념	9
2) 경제세계화의 의의	11
2. 다자주의	13
제2절 지역주의와 지역적 경제공동체의 의의	15
1. 지역주의의 의의	15
2. 지역적 경제공동체의 의의	18
1) 지역경제공동체의 개념	18
2) 지역경제공동체의 특징	20
3) 지역경제공동체의 유형	22

제3절 경제세계화와 지역경제공동체의 관계	24
제4절 지역적 경제공동체에 관한 규범적 접근	26
1. 지역경제공동체 유형별 관련규범 검토	26
1) 자유무역협정	27
(1) EFTA	27
(2) NAFTA	31
2) 관세동맹	39
(1) 남미공동시장의 형성	40
(2) 조직기구	40
(3) 남미공동시장의 법제도	41
3) 공동시장	42
(1) EU의 설립배경	42
(2) EU의 조직기구	43
(3) 유럽연합의 분석	46
(4) 경제·화폐동맹	51
2. 지역경제공동체와 WTO의 관계	52
1) WTO의 지역경제공동체 관련 규정	52
(1) GATT 제24조	53
(2)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54
(3) GATS 제5조	54
(4) 권능부여조항	55
2)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WTO 다자규정의 문제점	56
(1) 적용범위	56
(2) 불확정적인 법률개념	57
(3)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한 심사와 감독	58
(4) 분쟁해결메커니즘	60

3) 지역경제공동체가 WTO 다자간 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	61
(1) 지역경제공동체의 적극적인 역할	62
(2) 양자의 충돌	63
제3장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과 추진현황	65
제1절 한·중·일 경제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65
1. 한·중·일 경제협력의 현황	65
2. 한·중·일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68
제2절 한·중·일 경제협력 제도화 구상으로서 경제공동체	69
1.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의 제기	69
2. 한·중·일 경제공동체에 대한 3국의 입장	70
1) 한국의 입장	70
2) 중국의 입장	74
3) 일본의 입장	79
3.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추진방안	82
제3절 한·중·일 정부간 경제협력채널과 현황	86
1. 한·중·일 정부간 협력채널	86
2. 한·중·일 정부간 경제협력의 제도화 추진현황	97
1) 한·중간 경제협력의 제도화	97
(1) 한·중 정부간 경제협력의 제도화 내용	97
(2) 한·중 FTA	101
2) 한·일간 경제협력의 제도화	108
(1) 정부간 경제협력 제도화 현황	108
(2) 한·일 FTA	110
3) 중·일간 경제협력의 제도화	113

4) 한·중·일 경제협력의 제도화 추진현황	117
(1) 한·중·일 경제협력 제도화 현황	117
(2)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과 내용	122
(3) 한·중·일 FTA 체결의 장애요인	125
제4절 한·중·일 정부간 경제협력의 제도화 장애요인 및 과제	126
1. 한·중·일 3국 정부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126
2. 한·중·일 3국 정부간 경제협력의 추진과제	129
제4장 한·중·일 경제공동체 모델 구축방안	132
제1절 한·중·일 경제협력 제도화의 단계별 발전경로	132
1. 한·중·일 상품무역협정의 추진	132
1) 한·중·일 상품무역협정의 제기	132
2) 한·중·일 상품무역협정의 체결방안	133
2. 한·중·일 투자협정의 추진	135
1) 한·중·일 투자협정의 modality의 주요내용	139
2)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의 추진방안	140
3) 3국 투자협정 틀의 구축	140
3. 한·중·일 FTA의 모델	143
1) 한·중·일 FTA 체결의 법적 기초	144
2) 한·중·일 FTA의 설립 목표와 내용	145
3) 한·중·일 FTA의 조직기관	145
4. 한·중·일 금융통화협력방안의 모색과 제도화	147
제2절 한·중·일 경제공동체 모델—공동시장 모델	151
1. 한·중·일 경제공동체 모델의 구상	151
1) EU의 한·중·일 경제공동체 모델구축에 대한 시사점	151

2) 한·중·일 공동시장 모델의 구축전략	153
2. 한·중·일 공동시장 모델 구축	154
1) 「한·중·일 공동시장 설립조약」 (가칭)	154
(1) 설립취지와 목표	154
(2) 기본원칙	155
(3) 활동분야와 법적지위	156
(4) 활동절차와 조직기관 결의의 이행	156
2) 한·중·일 공동시장 주요 조직기관의 설치	157
(1) 이사회	158
(2) 집행위원회	158
(3) 사무국	159
(4) 분쟁해결기구	159
제5장 결론	161
참고문헌	165
Abstract	184

<표 차례>

<표 3-1>	66
<표 3-2>	67
<표 3-3>	85
<표 3-4>	86
<표 3-5>	88
<표 3-6>	92
<표 3-7>	93
<표 3-8>	95
<표 3-9>	104
<표 3-10>	120
<표 4-1>	133
<표 4-2>	134
<표 4-3>	136
<표 4-4>	137
<표 4-5>	139
<표 4-6>	141

<略語表>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Associables	아프리카, 카리브 및 태 평양 제국 연합
AMF	Asian Monetary Fund	아시아통화기금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FTA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Free Trade Agreement	동남아자유무역협정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양자투자협정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경제긴밀화동반자협정
CMI	Chiang Mai Initiative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지역무역협정위원회
CTD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무역개발위원회
CUSFTA	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미-캐나다 간 자유무 역 협정
DRC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of China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 중심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협정
EAEC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
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EA	European Economic Area	유럽 경제 지역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ECJ	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사법재판소
ESCAP	Economic and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일본무역진흥회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외경제정책연구원
MFNT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
NAAEC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북미환경협력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NAALC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북미노동협력협정
NEADB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동북아개발은행
NIRA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
NT	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BEC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태평양경제협의회
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태평양경제협력회의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SS	Stand Still	현행동결
RB	Role Back	점진적 원화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협정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R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우루과이라운드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오늘날 세계경제는 경제세계화와 지역경제공동체를 2대 축으로 하여 동시에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냉전 종식과 WTO의 출범에 따라 경제세계화는 국제시장의 통합과 구속력이 있는 국제경제무역규범의 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어 있다. 그러나 2003년 제4차 WTO 도하 라운드 협상의 실패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공동체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공동체는 새로운 국제경제협력의 중요한 법률형식과 방식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RTA(FTA)는 새로운 국제경제협력의 법률형식과 방식으로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RTA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의 통계에 따라 2010년 3월 12일까지 발효·실시된 RTA는 모두 272개에 달하고 있고, 이 중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발효·실시된 RTA는 153개에 달하여 50%에 해당되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경제공동체가 공존하는 세계경제 질서의 확대는 한·중·일 3국으로 하여금 제도적인 지역경제협력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의 FTA 체결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국가들이 다른 국가 혹은 지역과 RTA를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그리고 인도와 CEPA를 체결하였고 미국, EU와 FTA를 서명·타결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캐나다, 멕시코, 페르시아만안 경제협력체(GCC), 뉴질랜드, 페루, 호주, 콜롬비아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에 있다. 둘째, 중국은 홍콩, 마카오, 파키스탄, 칠레, ASEAN, 뉴질랜드, 싱가포르 그리고 페루와 FTA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GCC와 FTA를 타결하였고, 아이슬란드, 호주, 코스타리카 그리고 노르웨이와 FTA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다. 셋째, 일본은 태국, 브루나이, 칠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 싱가포르, 스위스, 페루, 베트남 그리고 ASEAN과 FTA를 체결하였고 호주, GCC, 인도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중에 있다.

이중 한·중·일을 중심으로 RTA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한·중·일 3국은 모두 아세안과 각자 양자 FTA를 체결하였거나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중·일 3국중 한·중, 한·일, 중·일 간 등 2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 투자보장협정(BIT)이 체결되어 있고, 이를 3국간으로 확대하여 투자보장과 투자자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 및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중·일 3국내에서의 RTA에 대한 추진움직임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2003년 협상을 시작한 한·일 FTA는 한국은 제조업, 일본은 농업분야의 피해 우려로 인해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¹⁾ 또한 한·중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종료되었지만 농업분야의 피해로 인해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아시아 지역 GDP의 약 85%, 전세계 인구의 23.2%, 전세계 GDP의 18.6%, 전세계 교역규모의 17%, 세계 외환보유액의 47.3%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GDP보다 규모가 훨씬 큰 지역이다. 교역과 투자 면에서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 기능성과는 달리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세계경제의 지역화 경향과 더불어 동북아에서도 경제공동체 건설 구상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구상은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중·일 3국은 다양한 분야에 경제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공동체의 가장 낮은 단계인 FTA를 체결하지 못한 산·관·학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과 잠재력을 가지고 역내 무역의존도가 높은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지역이라고 할 수

1) 최근 협상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다. 따라서 이러한 동북아에서 지역경제공동체가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동북아 각국의 국제경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발전과 세계경제 위상의 제고에도 불리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3국의 GDP, 교역규모, 외환보유액 그리고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볼 때 한·중·일 3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한 유럽과 북미와 더불어 세계3대 경제권의 하나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의 발생은 한·중·일 3국이 정부차원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만들었다.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상호의존도, 최근의 경제발전 정도 및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한·중·일 3국 FTA의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한미, 한·EU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위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FTA 추진은 2010년 5월 23일 3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협의되었듯 통상장관회의의 정례화 → 투자협정의 체결 → FTA체결 → 동북아 경제통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5월 29일에서 30일 양일간에 한국의 제주도에서는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다. 동 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그동안 서로의 이해에만 집중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가 3국 협력의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연내 3국간 투자협정 체결과 한·중·일 FTA를 장기적 추진을 통해 공동시장의 설립에 의견을 모은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3국간 FTA 타결은 3국간 경제협력 제도화의 중요한 과제이고 제3차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의지와 필요성을 확인하며 경제공동체 비전에 합의하였다는 점은 의미있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렇게 볼 때 한·중·일 3국이 FTA를 통한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에서 비록 정치·경제적 장애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발전의 추세에 부응하여 '개방적 지역주의의 자세'로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2) "3국 FTA체결 통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 '첫 발'", 서울경제, 2010.5.30.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005/e2010053017383869890.htm>>

2. 연구목적

그 동안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축에 대한 논의를 학계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최근 경제세계화와 지역경제공동체 경향과 더불어 다시 부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결실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한·중·일 3국에서 본격적인 경제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는 지역통합이 갖는 법적 측면을 간과하고, 주로 산업별 분석, 경제적 후생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의 지역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그 운영과 관리에 대한 조직기구, 제도나 정책 등의 접근이 수반되어야 함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주로 한·중·일 경제공동체 건설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연구하기로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EU와 달리 3국간 FTA라는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상품, 서비스와 인력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하는 공동시장을 의미한다. 한·중·일 경제공동체 건설은 3국이 역외국가에 대해 서로 다른 무역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에 무역우회(迂回)를 쉽게 초래할 수 있고, 3국간에 원산지규정의 차이에 따라 무역에 있어 많은 장애가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3국은 각각 별도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수입관리제도가 상대국에 따라 복잡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농산물 무역 등에서 많은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역내 국가간 무역증대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국간 경제공동체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은 EC의 발전경로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중·일 공동시장이 형성된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단순한 FTA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 것이다. 다시 말하면 3국 경제공동체는 FTA에 비해 더욱 경제·시장 통합적이며, 무역증대와 분업촉진, 규모의 경제실현, 시장구조의 조정과 변화, 경제성장의 추진 및 각종 제도의 형성 등의 경제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지역경제공동체의 한 형식이라고 볼 때 지역

경제공동체의 법률제도는 당연히 국제법의 형태가 될 것이고, 지역경제공동체의 규범은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의 법제도 틀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기존에 존재하는 대표적 지역경제공동체인 EU, NAFTA, EFTA 등과 같은 지역경제공동체는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축에 대해 법제도 틀과 조직기구의 설치, 고효율적인 의사결정메커니즘 및 완벽한 분쟁해결메커니즘의 설립에 대해 유익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의 확산과 세계화라는 세계사적 조류를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배경으로써 규범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세계화와 다자주의, 지역주의와 지역경제공동체, 경제세계화와 지역경제공동체의 관계,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규범적 접근을 해보려고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촉진되고 있는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제도화 구상과 추진현황에 대해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경제협력 제도화 방안으로서 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해 살펴보고, 한·중·일 경제협력 제도화 채널과 현황을 경제공동체의 초보적인 단계인 FTA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셋째, 경제협력 제도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해 국제법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해보려고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한·중·일 경제협력 제도화의 구체적인 발전경로를 상품무역협정, 투자협정, FTA, 통화협력의 순으로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구체적으로 국제법적 관점에서 제안해 보려고 한다.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경제세계화에 따라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과 상호협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공동체의 발전과 성장에 따라 세계경제발전을 위한 지역경제협력은 세계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방안이 되고 있다. 80년대부터 국제경제학과 국제정

치학의 중요한 연구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대부분 경제학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고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연구 성과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경제공동체도 경제학적인 목적으로 경제협력모델이 제기되게 되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경제공동체는 세계경제의 발전조류이고 추세일 뿐만 아니라 법률통합의 과정과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경제공동체는 국제경제협력의 중요한 법률형식으로서 모두 지역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법률제도 하에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역주의 확산의 추세 하에 본 논문에서는 국제법, 국제조직법 관점에서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경제공동체 규범, 다른 유사 모델(EU, NAFTA, EFTA)의 법률특징을 깊게 연구·분석하여야 한다. 지역경제공동체 사례의 연구는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이론과 법적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 경험과 참고를 제공할 수 있다.³⁾

본 논문은 주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3국간 경제협력의 제약요인을 분석하며 앞으로 3국간 경제협력의 과제로서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다른 지역경제공동체의 발전과정을 연구·분석함으로써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한·중·일 경제공동체에 대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의하고 한·중·일 공동시장 모델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범위를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우선 세계화, 경제세계화의 정의, 지역주의, 지역화와 지역경제공동체의 개념을 정리하고 경제세계화의 의미, 지역경제공동체의 유형 및 특징, 경제세계화와 지역경제공동체의 관계를 언급하려고 한다. NAFTA, EFTA 및 EU 등 지역경제공동체의 사례를 연구·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공동체 규범의 내용을

3) 하지만 최근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문제는 북한의 핵문제와 한국의 천안함 사고로 인해 남북한 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WTO의 지역경제공동체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그 중에 문제점 및 개선전제를 제의하고 지역경제공동체와 WTO 다자간 무역체제의 관계를 언급하려고 한다.

제3장에서는 한·중·일 경제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연구하고 한·중·일 경제협력의 제도화 구상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3국 입장을 언급하고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추진방안을 제의한다. 또한 한·중·일 정부간 협력채널과 3국 정부간 경제협력의 제도화 추진현황을 연구하고 3국 정부간 경제협력 제도화의 장애요인을 분석함으로써 3국 정부간 경제협력의 추진과제를 제의하려고 한다.

제4장에서는 경제협력 제도화방안으로서 한·중·일 경제공동체 모델에 대하여 우선 한·중·일 경제협력 제도화의 발전경로, 즉 한·중·일 무역협정의 체결방안, 한·중·일 투자협정의 추진방안 및 틀 구축, 한·중·일 FTA 모델을 제의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협력 제도화의 완성 형태로서 한·중·일 경제공동체 모델의 구축전략을 제의하고 한·중·일 공동시장 모델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구축하려고 한다. 끝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중·일 공동시장이 형성되면 앞으로 발전방향을 전망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주로 사례분석법과 문헌연구법을 통해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축을 국제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3국 경제협력 현황을 기초로 3국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에 대하여 연구·분석함으로써 관련문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립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3국의 실제상황을 결합함으로써 3국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대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의하고 다른 지역경제통합조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기적 협상메커니즘의 설치, 3국 공동시장의 모델구축, 조직기구설치,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 등에 대하여 제안하려고 한다.

제2장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에 관한 규범적 접근

제1절 경제의 세계화와 다자주의

1. 세계화와 경제세계화의 의의

1) 세계화의 의의

(1) 세계화의 발전과정

세계화는 추상적인 용어이지만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인류사회 발전의 객관적 현실과 자연 추세로도 인식되기로 하며 세계상의 많은 이론문제와 실천문제도 직·간접적으로 세계화와 관련되기로 한다. 경제세계화는 국제경제관계의 주요한 발전단계이며 세계화의 주요 구성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제세계화를 연구하기 전에 세계화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화는 오늘날 세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며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세이며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화는 각각의 학문분야에서마다 논의 및 연구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분명하게 찾고 그 의미를 정립하기 힘들다.

Miyoshi⁴⁾는 1492년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넘어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부터 세계화의 기미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으며, Helleiner(1997)와 Short & Kim(1999)⁵⁾은 세계화의 발단은 이미 16, 17세기부터 있었다고 보았으며, Rodrik. D(2000)⁶⁾는

4) Miyoshi, M, "Globalization, culture and the universal", in Jameson, F & Miyoshi, M(ed). *The Culture of Globalization*,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8, pp. 247-270.

5) Helleiner, D, "Raudelian reflections on economic globalization: the historian aspioneer", In Gill, S. & Mittleman, J(Eds),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in international stud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And Short J. R. & Y. H. Kim, *Globalization and the City*, (Longman, 1999); 吳瑟致, "中國大陸經濟崛起的國際環境因素之研究: 全球主義之觀點", <<http://www2.nsysu.edu.tw/sis/discuss/1C-2.pdf>> (2009.9.

21.방문)

19세기 말기가 세계화 발전의 시작점이라고 보았다. Willkie, Wendell. L (1943)는 『하나의 세계』에서 세계화의 개념을 언급하였다. 위키 백과사전에서는 세계화를 1960년대부터 사회과학에서 사용하였다. 馬維野(2003)⁷⁾는 그의 저서에서 일부에서는 Daniel Yergin이 세계화의 아버지이며 20세기 80년대 최초로 세계화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계화라는 용어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T. 레비(T. Levitt)가 1985년에 제출한 『시장의 세계화』에서 처음 나타났고 본다. 20세기 90년대 초에 ‘세계화’ 개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석 경제학자인 Sylvia Ostry에 의해 사용되었다가, 그 이후 신문·잡지 등 간행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경제학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된다.⁸⁾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15-19 세기 사이에 세계화에 대한 기미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사람의 사상이나 관념, 인식에 따라 세계화의 의미와 범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20세기 이후에는 세계화의 기원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부터 세계화의 발전에 대해 각계가 주목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특히 20세기 90년대 이후, 냉전의 종식과 WTO의 출범에 따라 온 세계화는 온 세계가 빠르게 연결되었고, 이는 다시 각국경제 내지 세계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20세기를 대표하는 주제어로 대두되었고 아직도 그 영향력을 그대로 떨치고 있다.

(2) 세계화의 개념

세계화는 단순한 경제문제, 정치문제, 사회문제 혹은 국제관계문제도 아니고 하나의 종합적 개념이다. 그 내용이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계화의 정의를 내리는 통일 표준이 없고 국내·외 전문가, 법학계, 정치 요인은 다른 각도에서 세

6) Rodrik. D., “Has globalization gone too far” In Roberts, T. J. & Hite, A.(Eds), *From modernization to Globalization*, Oxford: Blackwell Publishers, 2000, pp. 298-305.

7) 馬維野, 『全球化時代的國家安全』, 湖北教育出版社, 2003, p. 1 참조.

8) 唐海燕, 『全球化與中國開放戰略』,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3, p. 22.

계화를 해석하며 세계화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즉, 사회과학의 학문영역에 따라 세계화를 여러 가지 의미로 특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국제화와 자본주의의 시장관계의 확대로 세계화를 보고 있으며, 국제관계학에서는 국가간 관계의 강화와 지구정치의 발달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학에서는 전세계적인 사회관계의 강화와 세계사회의 출현으로 세계화를 보고 있으며, 역사학에서는 지구적 역사의 개념화로 세계화를 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eorge C. Lodge는 세계화는 하나의 과정으로, 세계 각지의 사람을 문화, 정치, 기술, 환경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점차 서로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⁹⁾ Harvey(2000)¹⁰⁾는 세계화를 과학기술의 신속한 혁신과 시장경제의 변화로 인해 시간과 공간이 압축된 현상으로 보았다. Aseem Prakash and Jeffre A. Hart¹¹⁾는 세계화가 많은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측면으로 구성되지만 경제적 세계화가 비경제적 세계화보다 더 뚜렷하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의 학자인 막사이(莫謝伊)(2003)¹²⁾는 “세계화를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우선, 광의의 세계화는 세계 다른 국가의 정치관계, 사회관계 및 문화관계가 과거보다 더욱 강한 국제화의 과정이며, 협의의 세계화는 경제적으로 상품, 노무와 자본의 국제이동의 급격한 발전과정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학자들 중 고충홍(2007)¹³⁾은 세계화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의 통합과 국가 대 국가의 경제규칙이 협약적인 약정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윤영관(1997)¹⁴⁾은 세계화란 세계적 범위의 사회관계가 심화되는 것으로서 기능적 측면에서 금융, 생산, 기술, 환경, 안보 등이 국민국가의 경제를 넘어 범세계적으로 조직되며 경쟁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학자들도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해석하였다. 먼저 양설동 (楊雪冬)

9) George C.Lodge 지음, 胡延泓 옮김, 『全球化的管理:相互依存時代의全球化趨勢』, 上海譯文出版社, 1998, p. 7.

10) Harvey, D., “Capitalism: The factory of fragmentation”, In Roberts, T. J. & Hite, A.(Eds.), *From modernization to globalization*, Oxford: Blackwell Publishers, 2000, pp. 298-305.

11) Aseem Prakash & Jeffre A. Hart, eds., *Globalization and Fovermance*, (Rtoutledge, 1999), p. 3.

12) 莫謝伊(러시아), 王興權 譯, “世界經濟全球化與地域化過程”, 『國外社會科學』, 2003, p. 44.

13) 고충홍, “세계화의 전개와 FTA”,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의정』 통권 제2호, 2007, p. 44.

14) 윤영관, “세계화”, 김경원, 임현진 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1997, p. 40.

(1998)¹⁵⁾는 세계화란 인류가 공간장애와 제도, 문화 등의 사회장애를 넘어 세계 범위 안에서 충분한 교류의 과정을 실현하며 더 많은 공동의 인식과 공동행동을 넘은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서광 (劉曙光)(2003)¹⁶⁾은 협의의 세계화는 경제세계화를 의미하며, 세계 각국에 의한 생산, 분배, 소비 등 측면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합 움직임이며 주로 생산, 무역, 투자, 금융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자유이동이나 또는 생산요소의 세계적인 배치와 재편 및 세계 각국 경제의 높은 상호의존과 융합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이를 정리해보면 협의의 세계화와 광의의 세계화로 개념지을 수 있다. 이중 협의의 세계화는 주로 경제세계화를 가리키며, 광의의 세계화는 경제세계화, 정치세계화, 문화세계화, 생태세계화 등을 모두 포함하고 경제세계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세계화란 인류의 사회생활이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세계라는 범위 내에 드러난 긴밀한 사회관계, 상호교류와 협력, 상호의존과 견제 등 상호작용의 상태나 결과, 또는 과정 및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경제세계화란 세계화의 기초이며 핵심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세계화는 각 국간 긴밀한 경제관계와 지역경제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조직과 지역경제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 경제세계화의 의의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2) 경제세계화의 의의

경제세계화는 인류사회발전의 객관적인 추세이며 객관적으로 국제협력, 상호타협과 협상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므로 무역자유화, 자본국제화 및 하이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각국 경제적 상호의존을 증강하며 세계경제발전의 주류가 된다. 그렇지만 경제세계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계가 일치하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계에서는 경제세계화의 정의에 대한 논

15) 楊雪冬, 王列, “關於全球化與中國研究的對話”, 『當代世界與社會主義』第3期, 1998, p. 5.

16) 劉曙光, 『全球化與反全球化』, 湖南人民出版社, 2003, p. 3.

쟁이 있고¹⁷⁾ 법학계 또한 세계화와 경제세계화에 대한 정의가 엄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개념의 명확한 정의에 대한 국제법 규칙이나 국내법규범도 없으며 WTO 협정에 조차 경제세계화와 관련된 해석이 없다.¹⁸⁾ 경제세계화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지만 이하에서 경제학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으로 경제세계화를 정의하고자 한다.

경제세계화를 경제적으로 정의하면 김준현(2005)¹⁹⁾은 오늘날 세계경제질서는 상품시장은 물론이고 서비스시장, 자본시장, 금융시장 등 모든 시장이 범세계적 차원에서 자유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경제적 세계화라 불렀다. 또한 국제통화기금(1995)²⁰⁾은 세계화에 대하여 “다국적 상품과 서비스거래 및 국제자본 이동규모와 형식의 증가, 신속하고 광범위한 기술의 전파로 인해 세계 각국 경제의 상호의존성 강화이다.”라고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경제세계화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이해한다. 장효정(張曉靜)²¹⁾은 경제세계화를 상품, 화폐, 자본, 자원 등 요소가 국제시장에 효과적으로 배치되고 합리적으로 이동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익이 전체적으로 협의되는 과정에서 달성된 최대한 국가간 의지조정을 드러낼 수 있고 시장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원칙, 규칙, 기구와 절차의 국제적인 제도협의로 보았다. 심문고(沈文高)(1997)²²⁾은 경제세계화란 우선 하나의 상태와 지속적인 심화의 동태과정이며 세계라는 범위 내에서 상품, 자본, 기술, 자원 등 생산요소가 국제시장에 합리적으로 자유롭게 이동되고 최적 배치되며 시장결함을 보완함으로써 시장운영 규칙을 규범화, 통일화하도록 하고 세계 각국을 상호의존, 상호융합, 공동발전을 하게 하기 위하여 달성하는 원칙, 규칙, 기구와 절차의 국제적인 제도협이라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종합하여 심문고(沈文高)가 법률적으로 내린 경제세

17) 徐光旦, 『全球化熱點問題聚焦』, 學林出版社, 2001, pp. 1-7.

18) 慕亞平, 洗一帆, “對WTO體制下的區域經濟一體化的法律分析”, 『學術研究』 第6期, 2003, p. 71.

19) 김준현, “경제적 세계화와 경제정의”, 한국사회역사학회, 『지방시대』 8권 4호(통권 21호), 2005, p. 112.

20) 國際通貨基金, 『世界經濟展望』, 中國金融出版社, 1997. 5, p. 45.

21) 張曉靜, “經濟全球化背景下的區域經濟一體化研究”, 『2008年中國國際經濟法學會暨學術研討會論文集(上)』, 2008, p. 286.

22) 沈文高, “特許經濟與品牌保護”, 『商業現代化』 第10期, 1997, pp. 20-21 참조.

계화의 개념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전반적 해석이다. 경제세계화는 하나의 현상과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의 점진하는 과정으로, 통일하고 완전한 이론을 아직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의에 대한 합의조차 달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내리는 정의를 살펴보면 경제세계화는 국제경제무역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경제세계화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경제세계화는 시장의 세계화, 경쟁의 세계화, 기업의 세계화, 산업의 세계화, 통상의 세계화를 가지고 있고, 세계화 사회에서의 경쟁력 원천은 정보화와 네트워크 조직의 발전이라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다자주의

국제무역체제에서 다자주의란 GATT/WTO와 같은 전 세계적 국제제도 또는 기구를 중심으로 대다수 국가가 참가하여 형성되는 질서를 의미하는데, 회원구성의 보편성과 대우의 비차별성이라는 그 핵심적 특징을 갖고 있다.²³⁾ WTO는 경제세계화의 산물로 다자적이고 세계적인 규범체제를 의미한다. 실제로 WTO는 각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WTO의 발전이 경제세계화의 추진과 발전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의 대표적인 다자주의 규범은 결국 WTO 법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다자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WTO의 전신은 1947년 GATT이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하여 출범한 국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GATT는 WTO로 대체된 1995년까지 전 세계에서 120여개 국가가 참여한 협정으로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으로 활동하였다. GATT의 주요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배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된

23) 문돈,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한국: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 한국”, 『한국정치연구』 제16집 제2호, 2007, p. 168.

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지불의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 한다는 것 등이다.

GATT체제는 창설 이래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딜런 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과 다자간 무역협상을 이끌어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를 마지막으로 하여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막을 내렸다.²⁴⁾

WTO는 2008년 현재 153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또한 주로 UR 협정에 대한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을 갖고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게 된다. 그 밖에도 WTO는 GATT체제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리고 GATT외에도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며, 회원국의 무역 관련법·제도·관행 등을 검토하여 세계교역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WTO의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WTO의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기존의 GATT체제에서 채택하고 있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고 있으며, 조직으로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존재한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고,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여도록 하고 있다.²⁵⁾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은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달성된 무역과 관련된 12개 협의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 GATT는 WTO의 조직과 법률체제의 중요한 구 WTO 다자무역체제이며 「WTO협정」, 「WTO협정」의 부속서1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과 「서비스

24)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18140>> (2010.4.14.방문).

25)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241169>> (2010.4.14.방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부속서2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부속서3 「무역정책검토제도」, 부속서4 「다자무역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WTO의 「상품성 부분이며 무역과 관련된 12개 협의의 원칙과 법적기초이다. 결과 1994년 GATT는 국제무역관계를 조정하는 국제적 다자협정이며 WTO의 조직과 법적기초이다. 결과적으로 WTO는 국제무역의 규칙체계로 다자무역협상을 통해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하나의 규범체계라고도 볼 수 있다.

제2절 지역주의와 지역적 경제공동체의 의의

1. 지역주의의 의의

지역주의는 보편주의나 또는 다자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용어가 모두 세계경제발전의 추세와 형태를 설명하는 주요 용어가 되고 있다. 다만 WTO 도하 라운드 협상의 지지부진(遲遲不進) 때문에 최근 지역화의 발전이 세계화보다 더욱 빠르고 원활해 보이고 있다. 지역화의 발전과 심화에 따라 지역주의의 산물로 많은 지역경제공동체가 나타나고, 지역경제공동체의 형성은 점차 국가간 경제협력의 중요한 법률형식이 되고 있다.

지역주의(regionalism), 지역화(regionalization), 양자주의(bilateralism),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지역경제협력(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그리고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등 용어는 보편주의 또는 다자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지역(region), 지역화와 지역주의는 지역경제공동체를 연구할 때 3개의 핵심개념으로 지역경제공동체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정의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효율적인 논문의 전개를 위하여 이러한 용어의 의미를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Bruce Russett은 『국제지역과 국제체제』(*International Region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1967)라는 저서에서 ‘지역’을 정의하기 위한 지리적 근접성

과 독자성, 상호의존성 그리고 동질성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²⁶⁾ 이 세 기준을 통해서도 지역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도 없고 지역에 대한 통일적 개념도 없다. 본 논문에서 지역의 의미는 주로 경제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경제통합을 진행하는 국가로 구성된 국제적 지역을 의미한다고 본다. 한국, 중국과 일본 3국 등으로 구성된 동북아 지역이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공동체의 구체적인 지역단위이다.

지역화는 지리적 분포에 기초하여 동일지역 혹은 인접지역에 속하는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긴밀한 교류의 지역적 집중화된 현상을 지칭한다.²⁷⁾ 네덜란드의 학자 Jan Tinbergen은 처음으로 지역화에 의미를 경제학적 차원에서 명확히 하였다. Jan Tinbergen은 말하는 지역화란 세계화에 상대되는 개념이며 경제학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지역주의는 보편주의 또는 다자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국제관계의 한 현상을 의미한다. Berslin, Higgott & Rosamond²⁸⁾는 먼저 지역주의를 개별국가의 정부간 조약과 협정 등에 의해 전개되는 국가주도의 지역통합 사업의 정책과 방향으로 정의했으며, 지역화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사전적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무역과 투자의 흐름과 같은 시장기능에 의해 추동(推動)되는 통합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국제경제법에 있어서 지역주의는 역외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는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둘 이상의 정치적 실체 상호간에는 무역에 있어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경제통합’이나 ‘지역무역체제’(regional trading system)를 의미하거나 이의 기초가 되는 조약으로서 ‘지역경제통합협정’(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또는 ‘지역무역협정’을 지칭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²⁹⁾

26) 물리적 근접성과 지리적 독자성은 지리학적 척도이다. 동질성은 주로 문화, 경제수준, 정치체제 등에서의 유사성이다. 상호의존성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다. 최영중,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아연출판부, 2003, p. 35 참조.

27) 문돈, 전개논문, p. 168 참조.

28) S. Berlin and R. Higgott & B. Rosamond, “Reg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CSGR Working Paper*, No. 107, 2002; 장동식 외,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의 제도화에 관한 일고찰”,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2008, p. 301 재인용.

29) 채형복 외, 『국제경제법』, 영남대학교출판부, 2005, pp. 324-325.

일반적으로 지역화는 세계화의 상대 개념으로 주로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지역화는 세계경제발전의 한 현상이자 무역과 투자의 흐름과 같은 시장기능에 의해 추동(推動)되는 통합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주의는 다자주의 또는 보편주의의 상대된 개념이자 국제관계의 한 현상으로 개별국가의 정부간 조약과 협정 등에 의해 전개되는 국가주도의 지역통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 지역화는 지역주의와 다르고, 이하에서 주로 지역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주의의 형태는 두 차례에 걸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제1차 지역주의 물결이 195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서 나타났으며 제2차 물결은 20세기 80년대 이후에 나타났으며, 이를 ‘지역주의의 신 물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또는 냉전종식 이후부터 지역경제통합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발전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 유럽통합을 위한 노력은 1953년 5월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부터 촉발되었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대륙의 경제는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전후 어려운 경제의 회복과 유럽의 재건을 위해서는 1951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1957년에는 상품, 노동력, 자본 및 서비스에 관한 유럽경제공동체(EEC) 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EAEC)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1976년에는 별도의 기구로 존재하던 ECSC와 EEC 그리고 Euratom 등의 3개 공동체가 통합조약의 발효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를 공유하게 되며 명칭도 유럽공동체(EC)가 사용되게 되었다.

EEC의 형성과 발전, EC로의 진화과정을 통해 지역주의는 시작되었고, 그 후 국가들간의 정치·경제관계는 지역주의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국가들간의 정치·경제관계는 지역주의 추세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EC 출범원년인 1967년 또 다른 지역주의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즉, APEC의 전신인 태평양경제협력회(PBEC)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APEC의 경제협력은 역사가 유구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협력이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느슨한 형식에서 긴밀한 것으로, 민간차원에서 정부간으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의 발전과정을 거쳤다. PBEC는 태평양경제협력회, 태평양연안 국가간 경제협력과 지역사회발전

을 위해 설립된 민간협력기구로 1967년 4월 동경에서 3개국으로 출발하였다.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는 1980년 설립되었고 한국이 1984년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한편, 80년대 후반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라 EU통합이 가속화되고, 우루과이 협상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울 때, 범 세계주의(globalism)에 대한 지역주의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냉전기간 중 구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EU의 통합을 용인하였던 미국도 NAFTA 체결을 서두르게 되었다.

EU와 NAFTA 등의 설립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태평양연안 국가들의 경제력 부상과 경제적 상호의존도 심화로 인해 정부차원에서의 지역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호주의 전 총리 Robert James Lee Hawke의 제의를 계기로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한국 포함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와 ASEAN 6개국 등 12개국간 각료회의로 출범하였다. 그리고 1990년 싱가포르 제2차 각료회의에서는 각료회의 형태를 정례화하게 되었고, 1993년까지 5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었고,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에서 미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매년 한 차례씩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이 1991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2009년 제17차 APEC 정상회의가 페루에서 열렸고 현재 중국,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2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PEC는 UN, WTO와 같이 국제조약의 기반위에 설치된 국제기구와 달리, 성격이 판이한 ‘느슨한 포럼(forum)’형태의 협력체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경제성장, 협력,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최고의 포럼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정부간 그룹이다. APEC는 한·중·일 3국이 모두 가입한 최초의 지역경제협력체로 동 기구에 대한 가입에 의해 한·중·일 3국은 지역화와 지역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협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지역적 경제공동체의 의의

1) 지역경제공동체의 개념

지역경제공동체의 개념은 그 동안의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술적인 차원에서 만족할 만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지역경제공동체는 현재 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공동체, 지역경제통합체, 지역경제통합조직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경제통합은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공동체의 발전과정은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단일시장의 단계로 가는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³⁰⁾ 최승환 교수(2006)³¹⁾는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이란 일정지역내의 국가들이 지역경제권을 형성하여 역내의 국가간 관세 등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는 경제공동체를 일컫는 것으로, 경제통합, 경제블록 또는 무역블록, 지역협력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의 발전과 심화에 따라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정의를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내리는 것은 단편적인 차원에서의 개념정립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시각에서 지역경제통합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중국의 학자들이 법률적으로 지역경제통합에 대하여 정의를 내린 적이 있다. 번영(樊瑩)(2005)³²⁾은 “경제통합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경제체가 이익을 최대화하게 하고 생산요소의 최적 배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의 명의로 교섭과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연합을 설립하는 과정으로서, 회원국간의 상호이익 및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제도적 협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양려염(楊麗艷)(2003)³³⁾은 지역경제통합이란 모든 국가 혹은 관세영역이 일정한 협의에 따라 일정한 조직기구를 설립하고 경제통합의 유형을 확립하며 어떠한 특정 경제영역에서 통일 규칙을 효과적으로

30) 특정 역내 국가의 경제통합은 대체로 시장 접근 확대에 대한 ‘제도화’라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주로 국가간의 협정 및 협약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음, 구체적 내용은 안충영 외 역음,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2003, p. 369; 신장철, “동북아경제공동체 논의와 그 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한·일 경 상논집』 제38권, 2007, p. 125.

31)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6, p. 893.

32) 樊瑩, 『國際經濟一體化的經濟效應』, 中國經濟出版社, 2005, p. 17.

33) 楊麗艷, “地域經濟一體化法律制度研究”, 武漢大學博士學位論文, 2003, p. 17.

실시하는 통합과정을 말한다. 지역경제통합의 개념에 대한 법률적 정립은 비록 완벽하게 정립되지는 못했지만, 경제통합에 대한 실무와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차츰 보완되어지고 완벽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비록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개념과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고자 한다.

2) 지역경제공동체의 특징

지역경제공동체의 개념을 법률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지역경제공동체는 국제 지역적 성격을 갖고 있다. 지역경제공동체의 지역은 한 국가 국내의 지역이 아니라 2개 혹은 그 이상 국가로 구성된 특정 지역, 즉 어떠한 국제적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지역경제공동체에 참여하는 주체가 어떠한 국제지역 내의 주권국가 혹은 관세영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EU와 NAFTA 그리고 ASEAN 등의 예에서 보면 지역경제공동체의 주체는 주로 주권국가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지역경제공동체의 주체가 모두 국가이다.

셋째, 지역경제공동체 규범은 지역경제통합 과정에 형성하는 국가간의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규범이다. 그리고 조약은 지역경제공동체 규범을 구성하는 주요 형식이 된다. 지역경제공동체는 그 주체가 조약 체결을 통해 어떠한 특정 경제영역에서 통일 규칙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자체의 규범 즉, 지역경제공동체 규범이 따로 있어야 한다. 조약은 지역경제공동체내의 주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확립하는 계약규정이므로 지역경제통합의 효과적인 진행에 법률보장을 제공한다.

넷째, 지역경제공동체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은 주로 국제경제영역의 일정한 범위, 즉 어떠한 특정 경제영역이다. 이 특정 경제영역은 전통적인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투자, 금융, 분쟁해결 등이 포함되고 있는 영역이다. 경제통합의 내용은 회원국 간에 달성되는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통합도 포함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경제의 비교우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지역경제공동체가 중시하는 지역경제통합의 내용도 다

르다. 선진국은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중시하고 개발도상국은 농산품과 방직물 등의 상품무역의 자유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지역경제공동체에는 고정된 상설기구가 있다. 경제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고권력기관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구, 여러 가지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 혹은 준사법적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설기구는 집행, 행정, 사법 혹은 준사법적 기능 등을 가진 제도적 장소를 갖고 있고 상당히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³⁴⁾ 이러한 상설기구의 설치는 경제공동체 회원국의 의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경제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중요한 기초와 보증이며, 경제통합의 목적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섯째, 지역경제공동체는 조직화, 법제화 및 일정한 강제성을 갖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의 통일규칙, 법률제도와 협정 또는 협약은 모두 회원국의 행위를 구속하는 것이며, 고정된 상설기구 또는 일정한 메커니즘은 지역경제공동체의 통일규칙과 법률제도를 실시하는 보장이다. 이러한 통일규칙과 법률제도의 실시, 조약 체결, 고정된 상설기구 또는 메커니즘의 설치는 지역경제통합이 일정한 강제성을 갖도록 한다. 게다가 지역경제통합 자체는 특정의 강제적 메커니즘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EU에 대하여 EU법의 우선원칙과 주권양도원칙, NAFTA와 ASEAN의 분쟁해결메커니즘 등이 있다.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하여 경제학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두 개념의 차이점과 연관성을 알 수 있다. 먼저 양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경제학적 차원에서 지역경제공동체의 개념은 회원국간 무역장벽의 철폐를 강조하고 하나의 경제발전모델을 형성하며 이 경제발전모델에 지역적 국가간에 부분적인 상품과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 차원에서 지역경제통합의 개념은 규칙을 기초로 일정한 강제적 규칙의 통일과 통합이다.³⁵⁾ 양자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은 경제발전모델을 기초로 발전하는 것이고 경제발전모델의 확립은 경제학이론으로 논증될 필요가 있으며 경제발전모델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논증한 후 합리적인 경제발전모델을 제도화

34) 梁西, 『國際組織法』, 武漢大學出版社, 2001, p. 6 참조.

35) 楊麗艷, 前揭論文, p. 21.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제학은 법률적 지역경제통합의 개념에 더욱 과학적 경제발전모델을 제공하고 법률은 경제학적 지역경제통합의 효과적인 실시에 제도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장에서는 지역경제공동체는 경제학적 시각뿐만 아니라 법률적 시각에서도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지역경제통합을 경제적 차원에서만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법률적 시각에서 정의를 내리고 분석하였다. 지역경제통합은 경제조류뿐만 아니라 법률 제도의 컨버전스(convergence) 혹은 통일을 의미한다.³⁶⁾

3) 지역경제공동체의 유형

지역경제공동체의 통합수준은 느슨한 협력에서 국가주권의 양도까지와 관련된다. 따라서 지역경제공동체는 통합수준에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화폐동맹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의 유형은 지역경제통합의 모델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경제통합의 단계적 형태와 다른 기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정부의 참여 및 역할의 범위에 따라 지역경제통합의 운영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법적·제도적 기관을 구비한 제도적 통합과 그러한 공동체 기관의 개입없이 시장기능에 의해 공동체를 운영하는 기능적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³⁷⁾ 이 밖에도 지역경제공동체는 통합의 범위에 따라 부문별 경제통합과 전반적 경제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고,³⁸⁾ 참여국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수평적 경제통합과 수직적 경제통합으로³⁹⁾ 구분할 수 있다.

36) 楊麗艷, 前揭論文, p. 21.

37) 최승환, 전제서, p. 893 참조. 기능적 통합은 가맹국들이 경제운영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강화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점차 시장을 확대하면서 역내의 상품무역을 자유화하는 가운데 경제통합을 실현하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도적 통합은 정부의 주도하에 법규, 협정, 행정조치 등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시장을 형성하고 경제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여, 이 제도와 범위 안에서만 공동의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함으로써 형성하는 경제통합을 말한다. (예를 들어 NAFTA, EU). 이영훈,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장백, 1994, p. 48 참조.

38) 부분적 경제통합은 지역내의 회원국간에 부분 상품 혹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 즉 부분 상품 혹은 생산요소의 통합이다. 예를 들어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1958년 유럽원자력공동체. 전체적인 경제통합은 지역내의 회원국의 모든 경제부문의 통합이다. 예를 들어 유럽경제공동체(혹은 유럽연합).

그렇지만 지역경제통합의 유형에 대해서는 경제학적 시각과 법률적 시각에서 경제통합의 발전단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경제학적 시각에서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의 통합단계는特惠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의 여섯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는 견해와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의 다섯 단계로 보는 견해 그리고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화폐연합의 네 단계로 보는 견해와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의 세 단계로 보는 견해가 있다.

特惠무역협정은 통합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지역경제공동체들은 대부분이 FTA를 첫 출발점으로 지역경제통합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통합을 위의 다섯 단계의 형태로 구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통합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적 시각에서 지역경제공동체의 통합과정에 대한 주장은 4가지가 있다. 첫째, WTO의 법률 틀에서는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은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혹은 관세동맹으로 넘어가는 임시협정의 세 단계가 있다. 둘째, 曾令良은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을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경제화폐연합의 세 단계로 나누고 통합조직이라고 부른다.⁴⁰⁾ 셋째, 劉世元은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을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의 네 단계로 나누고 이러한 형태를 지역경제공동체 규범, 즉 자유무역지역 규범, 관세동맹 규범, 공동시장 규범, 경제연합 규범이라고 칭한다.⁴¹⁾ 넷째, 傅岷成은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을特惠무역협정,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의 다섯 형태로 구분한다.⁴²⁾

39) 수평적 경제통합은 횡적 경제통합이라고도 불리고 같거나 비슷한 경제발전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경제통합이며 현존의 지역경제공동체는 대부분이 수평적 경제통합에 속한다. 예를 들어 유럽경제공동체, 동남아 국가연합. 수직적 경제통합은 종적 경제통합이라고도 불리며 다른 경제발전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경제통합이다. 예를 들어 북미자유무역지역. 範愛軍, 陳曉文, 『國際貿易: 理論與政策』, 山東人民出版社, 2009, p. 256 참조.

40) 梁西, 『國際法』, 武漢大學出版社, 2000, p. 463.

41) 劉世元, “區域國際經濟法的發展趨勢及其影響”,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第4期, 1998, pp. 1-3.

42) 傅岷成, “從南中國的區域經濟一體化走向大中華”, 王貴國 編: 『區域安排法律問題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04, p. 127.

오늘날 많은 지역경제공동체들은 대부분이 자유무역지역을 첫 출발점으로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의 과정을 시작한다. 완전경제통합은 EU처럼 회원국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한 회원국의 모든 경제정책을 조정·통합·관리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의미하며⁴³⁾ 정치동맹이라고도 불리고 지역경제공동체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완전경제통합의 수준에 이른 지역경제공동체는 거의 없다. 따라서 완전경제통합은 단지 하나의 움직임으로 보일 수 있다. 지금까지 경제통합수준이 가장 높은 EU도 완전경제통합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다만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劉世元이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을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의 네 단계로 나누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의 유형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의 순으로 통합과정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넘어간다. 하지만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의 통합단계는 주권국이 지역경제공동체에 양도하는 주권의 다소와 각국의 실제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낮은 단계의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에서 높은 단계의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으로 올라가는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경제세계화와 지역경제공동체의 관계

경제세계화와 지역경제공동체는 세계경제발전의 조류이다. 경제세계화와 지역경제공동체의 관계를 연구하기 전에 경제세계화와 세계적 경제통합의 관계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구별이 없이 혼용되는 경우 많다. 실제로 양자는 차이점과 관련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경제통합은 세계적 경제통합과 지역적 경제통합로 구성된다. 세계경제통합은 세계 각국경제연합 또는 통합의 발전움직임 또는 발전결과, 즉 세계경제컨버전스

43) 이홍중, “동북아공동체의 구축현황과 전망: 정치, 경제, 및 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5집 1호, 2002, p. 27.

(global economic convergence)이다.⁴⁴⁾ 경제세계화는 세계적 경제통합과 달리, 세계 각국경제의 상호연결과 상호의존을 지속적으로 확대·심화하는 과정이며 소수 국가를 제외하여 거의 모든 국가가 세계경제운영체계에 접어놓는 객관적인 현실이며 국가간에 경제관계가 밀접해지는 전반적인 움직임을 반영한다.⁴⁵⁾

세계적 경제통합의 형성조건은 경제세계화보다 훨씬 높다. 세계경제통합은 세계 각국이 국가경제제도의 차이를 제거하고 경제주권의 부분을 양도하고 주권공유와 통일된 세계경제제도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며⁴⁶⁾ 상설기구, 통일된 제도규범과 관리메커니즘 등이 있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경제세계화와 세계적 경제통합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로 양자 간에 긴밀한 관계도 있다. 경제세계화와 세계적 경제통합은 세계경제발전에 다른 두 단계이다. 경제세계화는 세계경제통합의 기초와 전제이며 세계적 경제통합은 경제세계화의 발전 추세와 가장 높은 단계 및 궁극적인 목표이다.⁴⁷⁾ 경제세계화는 세계적 경제통합의 기초와 초기단계이고 세계적 경제통합은 경제세계화의 발전 추세와 가장 높은 단계이며 경제세계화에 포함된다. 또한 세계적 경제통합은 경제세계화로 불릴 수 있지만 경제세계화는 세계적 경제통합으로 불릴 수 없다.

현재의 정세에서 보면 경제세계화는 이미 세계경제발전의 현상이 되어 있으나 세계 각국에 다른 경제발전수준, 큰 제도장애와 심한 이익충돌 등의 존재로 인해 세계라는 범위에서 경제통합은 실현되기 어렵다. 세계적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하나의 점진적인 과정으로 궁극적으로 달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언급한 세계적 경제통합은 실제로 단지 지역경제통합 또는 지역경제공동체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특정 지역 내에서는 세계라는 범위보다 경제통합합의를 상대적으로 달성하기도 쉽고 더 높은 경제통합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은 부분 지역과 부분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 경제통합의 선행단계도 할 수 있으며 세계적 경제통합은 지역경제통합의 최고단계

44) 虞學群, “談世界經濟全球化與世界經濟一體化的區別”, 『審記與經濟研究』 제6期, 1994, p. 62.

45) 伍貽康, 張海水, “全球化與一體化辨析”, 『世界經濟研究』 第5期, 2002, p. 9.

46) 崔炳強, “論經濟全球化與世界經濟一體化的現實性與障礙”, 『經濟論壇』 第10期, 2009, pp. 57-58 참조.

47) 張幼文, 『世界經濟學』, 立信會計出版社, 1999, p. 135 참조.

와 궁극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세계적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경제통합 또는 지역경제공동체를 촉진하여야 한다.

경제세계화는 각국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간 발전의 불균형을 격화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는 자체의 경제이익을 유지·발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통합 또는 지역경제공동체의 발전방식을 취한다.⁴⁸⁾ 그러므로 경제세계화는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였고 경제세계화의 지속적 발전과 심화에 따라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은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세계적 경제통합은 경제세계화의 고급단계이며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은 세계적 경제통합의 선행단계이므로 경제세계화의 발전단계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의 형성은 지역내 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발전을 이끌며 최종적으로 경제세계화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세계화는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과 서로 촉진하고 병행하여 발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자는 충돌이 발생할 경우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양자간 충돌을 취급하지 않는다.

제4절 지역적 경제공동체에 관한 규범적 접근

1. 지역경제공동체 유형별 관련규범 검토

지역경제공동체는 주로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화폐동맹 등으로 구성되므로 지역경제공동체 규범은 자유무역지역 규범, 관세동맹 규범, 공동시장 규범, 경제·화폐동맹 규범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공동체의 4개 유형에서 자유무역지역이 가장 많은 유형이고, 관세동맹은 성공적 사례가 많이 없고 공동시장을 취해서 성공한 사례 EEC뿐이다. 그리고 경제·화폐동맹의 경우 통합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수준에 이른 경제공동체가 EC밖에 없다.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주

48) 虞學群, 前揭論文, p. 64.

로 자유무역지역과 관련 사례, 관세동맹과 관련 사례, 공동시장과 관련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1) 자유무역협정

NAFTA와 EFTA는 대표적인 FTA이다. FTA를 연구하면 먼저 설립배경, 조직기구 및 법률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NAFTA와 EFTA를 분석해 봄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에 교훈과 경험을 제공하려고 한다.

(1) EFTA

가. 형성과 발전과정

EEC의 형성에 따라 EEC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7개 국가는 EEC에 대항하기 위해서 영국이 중심이 되어 1960년 1월 4일 「유럽자유무역연맹(EFTA)조약」을 체결하였고 1960년 5월 3일부터 발효시켰다. EFTA는 공산품의 자유무역을 토대로 한 유럽제국의 지속적 경제발전과 세계무역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하였다.⁴⁹⁾ 아이슬란드, 핀란드, 리히텐슈타인은 따로 1970년, 1986년, 1991년 EFTA에 가입하였다.

그 후 덴마크와 영국, 포르투갈,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및 스웨덴은 따로 1972년, 1985년, 1995년 EFTA를 탈퇴하고 EU에 가입하였다.⁵⁰⁾ EFTA는 1994년 EEC와 통합하여 EEA를 결성하였다.⁵¹⁾ 최근에 EFTA는 제3국, 특히 중동부유럽 국가, 지중해국가, 중동부 및 기타 내륙 국가와 무역관계를 발전하고 강화하고 있다.⁵²⁾ EFTA는 현재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유럽 및 다른 지역과의 통

49) 손상익, “EFTA의 최근 동향”, 『KIET 실물경제』, 산업연구원, 1998, p. 80 참조.

50) [http://www.efta.int/content/about-efta/history\(2009.12.25.방문\)](http://www.efta.int/content/about-efta/history(2009.12.25.방문))

51) 엔사이버(EnCyber) 두산백과검색<<http://ko.wikipedia.org/wiki/EFTA>>(2009.12.26.방문)

52) [http://www.efta.int/content/legal-texts/efta-convention/detailed-overview\(2009.12.26.방문\)](http://www.efta.int/content/legal-texts/efta-convention/detailed-overview(2009.12.26.방문))

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국과 FTA 체결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세계적으로 FTA 연결망을 확대하는 동시에 FTA의 대상범위에 서비스와 투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나. EFTA의 조직기구

EFTA의 조직기구는 주로 ① 이사회(Council), ② 사무국(secretariat), ③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④ 감사기구(Board of Auditors)와 ⑤ 법원(Cour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이사회는 최고정책결정기구와 권력기구이며 회원국의 장관 혹은 상주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관세, 무역, 경제, 경제발전, 농업, 어업과 예산 등 산하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였다.⁵³⁾ ② 사무국 총장은 사무국(secretariat)을 2명 사무국 부총장의 협력 하에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EEA협정의 운영에 도와주고 회원국의 EEA 협정 가입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준비한다.⁵⁴⁾ ③ 자문위원회는 EFTA의 사회적 파트너와 당국(authorities)간에 하나의 중요한 대화와 협상의 플랫폼이다. ④ 감사기구(Board of Auditors)는 EFTA의 상설감사위원회이며 사무국, 감독국(surveillance authority)⁵⁵⁾과 법원에 최고 감사권을 행사한다.⁵⁶⁾ ⑤ 법원은 주로 EEA 규칙의 집행, 적용 혹은 해석에 있어서 EFTA 감독국이 2개 혹은 그 이상 EFTA 국가간의 분쟁해결, EFTA 감시국이 내린 결의에 대한 항소, EEA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 EFTA 국가에 있는 법원들에 제출한 권고적 의견에 대해 EFTA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능숙하게 처리한다.⁵⁷⁾

53) 高明振, 『二十世紀要事概覽』, 湖北人民出版社, 1994, p. 292.

54) <http://www.efta.int/content/about-efta/EFTAscretariat>(2009.12.26.방문)

55) 감독국(surveillance authority)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에 있어 EEC 규칙에 준수함을 감시하고 그들을 유럽내부시장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http://www.eftasurv.int/about-the-authority/the-authority-at-a-glance/>> (2009.12.27.방문)

56) http://www.efta.int/content/about-efta/EFTA_Council/efta-council/EFTACouncil(2009.12.27.방문)

57) <http://www.eftacourt.int/index.php/court/mission/introduction/>(2009.12.27.방문)

다. EFTA의 분석

EFTA의 자유무역규범은 EFTA 설립협약 및 이사회의 결정과 건의로 구성되어 있다. EFTA 설립협약의 주된 취지는 체약국간 공산품의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농산물 무역을 확대하며 회원국간의 무역이 공정한 경쟁조건 하에서 진행되도록 보증하고 세계무역을 발전하고 확대하며 차츰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이다. 공산품의 관세와 수량제한에 1966년 12월 3일 공산품의 역내관세를 철폐하고 1969년 말까지 수량제한을 전폐하였다.⁵⁸⁾ 물고기와 기타 수산물의 자유무역은 1989년에 이루어졌다.⁵⁹⁾

EFTA 설립조약은 많은 회원국의 탈퇴와 기타 국가의 가입 및 공산품과 수산물의 자유화 실현 등으로 인해 2001년에 수정되었다. 수정된 EFTA 설립조약은 상품(농산물을 제외함)의 자유로운 이동,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투자와 서비스무역의 지속적인 자유화, 회원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한 경쟁조건의 제공, 회원국 공공조달시장의 개방, 최고국제기준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⁶⁰⁾ 여기서 EFTA 중에서 주로 상품(농산물을 제외함)의 자유로운 이동,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투자의 지속적 자유화와 서비스의 지속적 자유화 등에 대한 법률규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이다.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회원국간에 수출관세 및 모든 동등한 효과가 있는 부과금을 철폐하는 것이다. 수정된 EFTA 설립조약 제8조, 제9조는 농산물, 가공된 농산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농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은 제외된다. 또한 EFTA는 자유무역지역이며 관세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간에 공동농업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비회원국에 통일한 관세제도와 무역정책을 실시하지도 않는다.

둘째,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이다. 수정된 EFTA 설립조약 제20조 1항에는 사람이동의 자유는 부속서K와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간 사람이동의 자

58) 엔싸이버(EnCyber) 두산백과검색 참조. <<http://ko.wikipedia.org/wiki/EFTA>>(2009.12.27.방문)

59) <http://www.efta.int/content/legal-texts/efta-convention/detailed-overview>(2009.12.27.방문)

60) Convention Establishing the EFTA, Article 2.

유에 관한 부속서K의 의정서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회원국간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에는 회원국 국민에 대한 입국권, 거주권, 체류권, 고용 인권의 취직권, 자유업의 설립권, 서비스의 제공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조에는 사람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부속서 K의 부록2와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간 사람이동의 자유에 관한 부속서K 의정서에 의해 사람이동의 자유에 관한 대우평등의 보장, 수익권의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2조에는 전문적인 자격의 상호인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정된 조약 제20조, 제21조에는 사람자유의 이동을 간단하게 규정하지만 부속서K의 부록1, 2, 3과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간에 사람이동의 자유에 관한 부속서 K 의정서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자격의 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리히텐슈타인에만 효력이 있는 전문적인 자격의 인가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에 효력이 있는 전문적인 자격의 인가가 부속서K의 부록3에서 따로 규정되고 있다.

셋째, 투자의 지속적인 자유화에 관한 규정이다. 투자의 지속적인 자유화에 대해서는 수정된 EFTA조약 제9장 제23조-28조에서 규정되어 있고 설립과 자본이동으로 구성된다. 회사의 설립권에 대해서는 제23조-27조에서 규칙과 범위, 국민대우, 금융시장 규제, 인가, 예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에서 자본이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 L-O에서 설립권에 관한 특별한 조항과 예외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다. 제23조 3항의 규정에 의해 회원국은 수정된 EFTA 조약이 2001년 6월 21일부터 발효한 후 2년 이내에 현존의 조항을 재검토하는 것을 동의하고 남아 있던 제한을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것이다. 제23조 4항에는 당해 조약이 발효할 때부터 어떠한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새롭거나 더욱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제28조에는 “제9장의 틀 내에 한 회원국의 회사가 다른 회원국 영토에의 설립에 관한 자본이동에 대하여 회원국간에 제한이 없어진다. 회원국간의 설립과 관계없는 자본의 이동은 그들이 조약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따라 보증되는 것이다. 회원국들은 수정된 EFTA 조약이 2001년 6월 21일부터 발효한 후 2년 이내에 현존의 조항을 재검토하는 것을 동의하고 범위를 확대하며 자본의 이동에 대하여 남아있는 제한을 최종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규정한다. 투자 자

유화의 추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회원국들은 수정된 EFTA의 재검토를 통해 자본이동을 포함하는 투자에 관한 제한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최종적으로 철폐함으로써 투자는 차츰 자유화해지는 것이다.

넷째, 서비스무역의 지속적인 자유화이다. 수정된 EFTA 조약 제10장에서는 서비스무역의 원칙, 범위, 국민대우, 금융시장 규제, 인가, 예외, 공공조달, 운송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9조 1항에는 “조약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에 따라 회원국 영토 내에서 서비스제공대상인 자연인, 법인의 국가가 아닌 자연인, 특정 회원국에서 설립된 회원국 법인에 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에 관한 제한을 가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부속서 L-O에는 서비스의 제공권에 관해 특별한 조항과 예외를 포함한다. 또한 제29조 제3항에 의해 수정된 EFTA 조약이 2001년 6월 21일부터 발효한 후 2년 이내에 회원국이 현존의 조항을 재검토하는 것을 동의하고 남아 있던 제한을 감소하고 최종적으로 철폐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9조 제4항에 의해 당해 조약이 발효할 때부터 어떠한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회사의 서비스와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제공자에의 대우보다 새롭거나 더욱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금융서비스에 제10장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신탁의무를 가지는 사람의 보호를 보장하거나 금융체계의 완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중한 이유로 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의 권리가 훼손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2) NAFTA

가. NAFTA의 설립배경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선진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및 개발도상국인 멕시코 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하나의 종합적이고 획기적 자유무역과 투자협정으로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NAFTA는 1989년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체결된 독특한 형태의 협정인 쿠스타(CUSFTA)에 기초한 것이다.⁶¹⁾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는 1993년 환경보호, 노동에 대해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과 북미노동협력협

61) 박정동,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에 관한 고찰”, 인천발전연구원, 2003.12, p. 57 참조.

정(NAALC)등 2개 부속협정을 체결하였고 1994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NAFTA는 농업, 투자, 지적재산권과 서비스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비교적인 높은 수준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이정표로 간주된다.⁶²⁾ NAFTA는 회원국들의 통합구매력 평가 GDP에 2007년 현재 세계최대의 무역블록이며 명목 GDP 비교에 의해 두 번째 큰 무역블록이다.⁶³⁾

나. NAFTA의 조직기구

NAFTA는 EU처럼의 초국가적인 입법과 사법기구가 없다. 그 조직기구는 주로 자유무역위원회(freed trade commission; FTC), 사무국(secretariat), 전문위원회(committee) 또는 작업그룹(working group), 조정자(coordinator)가 있다.⁶⁴⁾

첫째, 자유무역위원회이다. 자유무역위원회는 3개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로 구성되어 NAFTA의 중앙기구라고 볼 수 있다. 그 機能은 주로 NAFTA의 모든 전문위원회, 작업그룹 및 부속기구의 작업을 감독하고, NAFTA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며 NAFTA의 실행을 감독하는 것 등이다.⁶⁵⁾ 그 밖에 분쟁해결패널이 내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에 대한 해석권이 있다.⁶⁶⁾

둘째, 사무국이다. 사무국은 3개 회원국의 담당부처들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은 자유무역위원회를 보조하고 다른 전문위원회와 작업그룹의 작업에 도움을 주며 NAFTA의 제11장, 제14장, 제19장과 제20장에 의해 설립된 분쟁해결패널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⁶⁷⁾

셋째, 전문위원회 또는 작업그룹이다.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NAFTA의 효과적인 이행과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NAFTA의 후원 하에 30여개 작업그룹, 전문위원회와 기타 부속기구가 설립되어 있다. NAFTA의 규정에 의해 작업그룹,

62) http://www.bilaterals.org/rubrique.php?id_rubrique=14(2010.2.3.방문)

63) http://en.wikipedia.org/wiki/North_American_Free_Trade_Agreement(2010.2.3.방문)

64)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nafta-alena/inst.aspx?lang=en>(2010.2.5.방문)

65) 1992 NAFTA 제2001조 제2항.

66) Philippe Sands & Pierre Klein, *Bowett's Law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5th ed. (Sweet & Maxwell, 2001), p. 223.

67) 1992 NAFTA 제2002조 제3항.

전문위원회와 기타 부속기구가 담당하는 영역은 주로 상품무역, 원산지규칙, 관세, 농업무역, 정부조달, 투자와 서비스 등이 있다.⁶⁸⁾ 작업그룹과 전문위원회는 NAFTA의 순조로운 실행에 도움이 되고 회원국간 무역을 더욱 자유화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하며 문제의 토론을 위한 정치논단을 제공하고 쟁점에 대하여 일찍이 대화함으로써 분쟁을 가능하게 피한다.⁶⁹⁾

넷째, 조정자이다. 조정자는 회원국에서 임명된 3명 무역부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AFTA 작업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NAFTA를 더욱 광범위하게 실행한다.⁷⁰⁾

다. NAFTA의 분석

NAFTA의 설립목적은 주로 역내 상품과 서비스 무역장벽의 철폐, 상품과 서비스 자유로운 이동의 추진, 공정한 경쟁과 투자의 추진, 지적재산권 보호,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지역간과 다자간 협력의 증진이다.⁷¹⁾ NAFTA의 주된 내용은 상품무역,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정부조달, 투자와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행정과 제도적 규정 등이 있다. NAFTA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본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 대우원칙과 투명도원칙이 있다. NAFTA의 내용은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상품무역, 투자와 서비스무역,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가) 상품무역

상품무역에 관한 법률규정은 주로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에너지와 기초석유화학제품, 농산물, 긴급조치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주로 관세·비관세장벽의 철폐와 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68) 주 64) 참조.

69) 주 64) 참조.

70) 주 64) 참조.

71) 1992 NAFTA 제102조 제1항.

한다.

첫째, 관세·비관세장벽의 철폐이다. NAFTA의 규정에 의해 역내의 모든 관세·비관세장벽은 10년 내에 단계적으로 제거되고 일부 농산품 등에 대해서는 15년 내에 단계적으로 철폐될 것이다. 관세철폐는 상품별에 따라 즉시 철폐, 5년 이내에 점진적인 철폐, 10년 이내에 단계적인 철폐와 15년 이내에 단계적인 철폐로 나누어진다. 여기서의 관세는 미국과 캐나다의 일반적인 특혜관세를 포함하며 1991년 7월 현재 적용관세율로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다. NAFTA에 의한 관세철폐는 예정대로 시행되며 당사국은 보다 신속한 관세철폐를 합의할 수 있다.⁷²⁾ 마지막 농산물 관세는 2008년 1월 1일 철폐되었다. 비관세장벽의 철폐는 쿼터, 수입인증 등과 같은 수량제한 및 수출입제한의 금지, 세관사용료의 철폐 등이 있다. 그러나 인류와 동식물의 생명 및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석유화학제품, 농산물 등의 무역제한에 관하여는 따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⁷³⁾

둘째, 원산지 규정이다. NAFTA의 회원국은 공동의 대외관세정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NAFTA는 엄격한 원산지규칙을 제정한다. 원산지 규정은 어떠한 상품이 NAFTA 역내국 상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특정 상품이 전체적으로 북미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북미산 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은 협정의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한하며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가 NAFTA 역외 국가에서 만들어진 상품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결과 동 조항은 원산지 판정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예측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며, 협정 하에서 무역하는 수출업자, 수입업자 및 생산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⁷⁴⁾ NAFTA 역외의 재료 및 부품을 포함하더라도 그 제품이 북미지역에서 충분히 변형되어 관세 분류표상 변화가 생기면 북미산으로 간주한다. 특정상품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특정비율의 북미산 부품을 포함하여야 한다.⁷⁵⁾

72) 연세대학교동서문헌연구원, “북미자유무역협정안 해설”, 『캐나다연구』 제4권, 연세대학교동서문헌연구원 캐나다연구센터, 1992, p. 211 참조.

73) NAFTA 부속서 300-A, 300-B.

74) NAFTA 제401조.

75) 연세대학교동서문헌연구원, 전제논문, p. 209.

(나) 투자

투자에 관한 법률규칙은 주로 NAFTA 회원국들이 이행해야 하는 투자자 대우와 보호, 투자에 관한 분쟁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분쟁해결은 아래의 (4) 분쟁해결 메커니즘에서 언급될 것이며 여기서 투자자에 관한 대우와 보호를 언급하고자 한다.

NAFTA 제11장에는 역내국가간의 투자와 관련된 장애를 철폐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두고 있다. 당사국의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포함하며 투자의 범위는 기업에서의 모든 형태의 소유와 이자, 유무형의 자산과 계약적인 투자이익을 포함한다.⁷⁶⁾ 투자의 대우와 보호에 관한 법률제도는 주로 내국민대우원칙, 최혜국대우원칙, 수행요건, 수용과 보상, 외환자금이전 등 조치를 포함한다. NAFTA는 역내국의 투자에 대해 원칙으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역외국의 투자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를 내주어야 한다.⁷⁷⁾ 수행요건은 타 당사국의 자국내 투자에 대해 특정수준의 수출이행, 최소한 자국산 부품조달비율, 수입대체를 위한 국산품의 우선사용,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외화지급제한, 현지투자기업의 기술이전이나 지적재산권이전과 같은 이행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⁷⁸⁾

또한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당사국 영역 투자자의 투자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에도 무차별기준과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수용당한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가격과 적절한 이자를 합산하여 즉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⁷⁹⁾ NAFTA는 투자자유화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대다수 산업부문의 투자 자유화를 할 수 있지만 각국의 실정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바 미국은 어업, 항공, 핵, 방송분야를 제한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문화산업, 멕시코는 석유산업을 제한하고 있다.⁸⁰⁾

76) NAFTA 제1101조.

77) NAFTA 제1102-1103조 참조.

78) NAFTA 제1106조.

79) 연세대학교동서문헌연구원, 전제논문, p. 242.

(다) 서비스무역

NAFTA 제12장에는 서비스무역이 국경을 넘는 서비스 무역이며 이에 관한 법률체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경을 넘는 서비스 무역의 적용범위는 주로 생산, 배분, 시장, 판매와 인도, 구매 또는 사용 혹은 서비스를 위한 지불, 서비스 규정과 관련된 유통과 운송 등을 포함한다.⁸¹⁾ 단 금융, 항공, 한 당사국 혹은 국가기업의 조달, 정부대출, 보증과 보증을 포함, 한 당사국 또는 그 국가기업의 제공한 보조금 또는 수권에 적용하지 않는다.⁸²⁾ 국경을 넘는 서비스무역 법률체도는 서비스 제공자의 대우(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대우표준, 유보조항, 수량제한, 비차별적 조치의 자유화, 허가와 인증, 혜택의 거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⁸³⁾

(라) 분쟁해결메커니즘

NAFTA는 동일한 분쟁해결메커니즘이 없고 NAFTA 제11장에 규정된 당사국의 투자자와 주최국간의 분쟁해결메커니즘(투자분쟁해결메커니즘), 제14장에 규정된 금융부분의 분쟁해결메커니즘, 제19장에 규정된 반덤핑/상계관세법상 분쟁해결메커니즘(반덤핑/상계관세분쟁해결메커니즘), 제20장에 규정된 일반적인 무역분쟁(반덤핑/상계관세분쟁과 투자분쟁은 제외됨) 해결메커니즘이 규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NAFTA 부속협정인 북미환경협력협정과 북미노동협력협정에서 따로 관련 국내환경법 국가간 분쟁해결메커니즘과 노동법 국가간 분쟁해결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11장 투자분쟁해결메커니즘, 제19장 반덤핑/상계관세분쟁해결메커니즘과 제20장 일반적인 무역분쟁해결메커니즘이다. 이하에서 이러한 세 가지 분야에서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을

80) 서헌제,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8, pp. 133-134.

81) NAFTA 제1201조 제1항.

82) NAFTA 제1201조 제2항.

83) NAFTA 제1202조-1213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분쟁해결메커니즘이다. 투자유치국의 NAFTA 제11장 A의 의무 혹은 제1502조 제3항과 제1503조 제2항의 내용에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해당국과 협상 또는 교섭을 통해 투자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⁸⁴⁾ 투자분쟁해결절차는 중재의 청구, 중재 판정부의 구성, 중재판정으로 구성된다. NAFTA 제11장 B에는 투자유치국에 의한 NAFTA 투자 관련 조항의 위반에 관한 투자분쟁해결의 세부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NAFTA 제11장 제1120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⁸⁵⁾ 및 그 부가규정⁸⁶⁾,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의해 투자분쟁에 대해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 판정은 최종적인 판정이다.

둘째, 제19장 반덤핑/상계관세 분쟁해결메커니즘이다. NAFTA 제19장은 반덤핑/상계관세법개정의 심사와 최종적인 행정결정의 심사와 관련된 무역분쟁의 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9장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의 핵심은 회원국들이 각기 자국의 반덤핑/상계관세법을 보유할 수 있고, 이러한 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내려진 행정당국의 결정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양국간 패널을 설치한다.⁸⁷⁾ 양국간 패널의 심사는 체약국의 청구에 의해 다른 체약국 당국의 반덤핑/상계관세법에 대한 개정안은 반덤핑 및 보조금을 포함한 GATT 규정에 NAFTA의 목적에 합치하는지를 심사한다.⁸⁸⁾ 또한 양국간 패널은 회원국의 행정당국이 내린 반덤핑/상계관세 결정에 대한 국내심사를 대신한다.⁸⁹⁾ 그리고 제19장은 특별이의절차⁹⁰⁾와 특별이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 특별이의절차는 실제로 양국간 패널

84) 중재신청의 요건은 NAFTA 제1116조-제1121조를 참고할 수 있다.

85) 분쟁당사국들은 모두 ICSID의 체약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86) 분쟁당사국 중 한 국가만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의 체약국일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 부가규정에 적용할 수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 부가규정은 ICSID 비가입국과 가입국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것이다. 캐나다 2006년 12월 15일 ICSID에 가입했지만 비준되지 못하고 멕시코는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NAFTA의 3개 회원국은 미국만 ICSID의 체약국이다.

87) NAFTA 제1904조.

88) NAFTA 제1902조.

89) NAFTA 제1904조.

90) NAFTA 부속서 제1904조 15항.

결정에 대한 상소절차이다. 그리고 제19장은 전문가패널심사 보장제도⁹¹⁾를 설립하고 있다.

셋째, 제20장 일반분쟁해결메커니즘이다. NAFTA 제20장에는 투자분쟁, 반덤핑상계관세분쟁을 제외하고 역내국간의 일반적인 무역분쟁을 위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NAFTA 제11장이나 제19장의 절차와는 달리 사적당사자간의 분쟁이 아닌 국가간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GATT 제23조의 절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⁹²⁾ 제20장 일반적인 분쟁해결메커니즘이 해결하는 분쟁의 범위는 아주 광범위하다. NAFTA의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한 당사국은 실시하는 NAFTA와 일치하지 않는 국내조치, 한 당사국이 실시하는 국내조치는 NAFTA의 규정에 위반될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일반분쟁해결절차는 우선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NAFTA의 일반적 무역분쟁은 자유무역위원회가 해결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위원회는 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 작업그룹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선, 중개, 조정 등 많은 분쟁해결방법을 이용하거나 협의당사국들에게 권고를 행하기도 한다.⁹³⁾ 분쟁 발생하면 주선, 중개, 조정 등 정치방법을 통해 해결되지 못할 경우 관련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구하게 되며 중재패널에 이 분쟁을 회부할 수 있으며, GATT상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20장의 패널판정은 분쟁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당사국들은 패널보고서를 접수한 후 보고서에서 권고한 내용에 따라 이를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패널보고서는 집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소국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분쟁에 따른 피해상당액 만큼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제20장의 절차상 당사자들에게 인정된 실제적인 구제방법은 보복조치뿐이다.⁹⁴⁾

NAFTA와 EFTA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본 논문에는 지역경제공동체의 구성주체는 주로 국가이므로 자유무역지

91) NAFTA 제1905조.

92) 서헌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의 분쟁해결절차”, 『중재학회지』 제3권 제1호, 1993, p. 83.

93) NAFTA 제2007조 제5항.

94) 서헌제, 전제논문, 1993, p. 87.

역이란 2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는 FTA를 체결함으로써 회원국간에 서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상품과 서비스무역,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며 형성하는 지역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지역경제공동체에 가장 일반적인 조직형식이다. 그 기본특징은 회원국간에만 관세와 기타 무역제한을 제거하고 상품과 서비스, 투자를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며 각 회원국이 비회원국에 각자의 관세와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의 기본특징을 살펴보면 FTA를 半관세동맹 혹은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으며⁹⁵⁾ 회원국의 대외무역권한에 대한 제한이 다른 지역경제공동체의 형태보다 가장 적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역경제공동체 형식이다.

오늘날 자유무역지역은 예전과 달리,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금융 등 많은 부문을 포함한다. 자유무역지역의 규범은 주로 당해 조직을 설립하는 조약 및 그 보완 문서로 구성되고 회원국이 조약을 이행함으로써 관련 법률 제도를 집행하는 것이다.⁹⁶⁾ 자유무역지역 규범의 주요내용은 상품무역의 관세·비관세 철폐에 관한 규정, 서비스무역 지속적인 자유화의 관련 규정, 투자의 지속적인 추진 조치, 지적재산권보호 조치, 상품 수출입에 관한 원산지 규칙, 분쟁 해결 등 규정이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지역경제공동체의 주요 유형이며 그 법률 제도의 실시는 상당한 효과를 얻었으므로 자유무역지역 규범은 지역경제공동체의 규범에 일반적으로 채용된다.

2) 관세동맹

관세동맹이란 2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원국간에 무역장벽을 완전히 제거하고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며 역외국가에서 수입상품에 동일한 관세율과 대외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설립하는 지역경제공동체의 하나다. 관세동맹은 일반적으로 선진국가로 구성된 관세동맹과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이 있다. 선진국가로 구성된 관세동맹인 유럽경제공동체의 관세동맹은 西歐국가의 시장을 확보하고 미국의 상품경쟁을 저지하며 역내무역의 발전과 유

95) 羅剛, “自由貿易區法律制度比較研究”, 『云南大學學報(法學版)』 第4期, 2007, p. 120.

96) 劉世元, 前揭論文1998(4), p. 2 참조.

림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은 역내 각국의 이익을 유지하고 역내의 경제협력과 공동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중부아프리카 관세경제동맹(UDEAC), 안데스공동체(CAN) 등이 있다. 이하에서 관세동맹의 대표적 사례인 남미공동시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남미공동시장의 형성

MERCOSUR는 남미공동시장(Southern Common Market)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Mercado Común del Sur의 약칭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인접국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4개국은 1991년 3월 파라과이에서 「아순시온협약」을 체결하였고 199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아순시온협약」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회원국 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순시온협약」은 남미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하고 통합과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조화 또는 통일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1995년부터 공동대외관세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까지 관세동맹을 완료하여 2006년 이후 완전한 공동시장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⁹⁷⁾

2006년 7월 베네수엘라는 남미공동시장에 가입하였다. 남미공동시장은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개국이 있으며 칠레와 볼리비아가 준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은 중남미최대 경제공동체이며 공동대외관세제도를 채택하여 관세동맹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일정기간 예외품목을 규정하고 있어 대외공동관세가 최고 20%까지 11단계로 나누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동맹수준의 공동시장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남미공동시장이 실질적으로 관세동맹이라고 주장한다.

(2) 조직기구

남미공동시장의 조직기구는 주로 공동시장이사회, 공동시장 그룹, 공동시장 무

97) 최승환, 전제서, p. 917 참조.

역위원회, 공동시장 의회, 공동시장 사무국과 공동시장 상설중재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공동시장 이사회는 최고정책결정기구이며 회원국의 외교장관과 경제장관으로 구성되고 이사회 주석이 각회원국의 외교장관으로부터 차례로 담당하고 임기 6개월이다. 1년에 한번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사회가 정상회의를 준비·조직한다. ② 공동시장 그룹은 집행기구이며 공동시장조약과 이사회 의 결의를 실시하고 무역에 대한 개방계획, 거시경제정책의 조정, 제3국과의 경제무역협정의 체결 등에 대하여 제의한다. 또한 회원국별로 4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예비위원을 두고 회원국의 외무·경제·중앙은행 대표로 구성된다. 무역사무, 세관사무, 기술표준, 세수와 금융정책, 유지·해상운송, 공업과 기술정책, 농업정책, 에너지정책과 거시경제정책조정 등 10개의 산하 작업그룹을 설립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역내무역사무기구이며 세무와 상품품목, 세관사무, 무역규칙, 경쟁보호 등 8개의 산하 위원회를 설립한다. ④ 남미공동시장 의회는 입법기구이며 회원국의 18명 의원으로 구성된다. ⑤ 사무국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구이다. ⑥ 상설중재법원은 사법기구이며 회원국간 분쟁을 해결한다.⁹⁸⁾

(3) 남미공동시장의 법제도

「아순시온협약」은 남미공동시장을 설치하는 설립조약으로 남미공동시장의 법적 기초가 된다. 동 조약은 역내 관세철폐에 관한 무역자유화계획서, 전체적 경제정책조정과 통합, 공동대외관세, 상품, 노동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목표, 조직기관, 가공구역과 자유무역지역, 경쟁정책, 원산지규정, 분쟁해결, 방어조항, 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의 목적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하며 경제보완성을 극대화하고 역내 경제통합의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남미공동시장은 공동대외관세제도를 실행할 때 공동대외관세가 최고 20%까지 11단계로 나누어진다.

남미공동시장을 살펴보면 관세동맹 규범의 주요내용은 주로 회원국간에 상품 무역의 관세와 수량제한의 제거에 관한 규정, 공동대외관세세율, 공동대외무역정책, 원산지규칙, 환경보호, 분쟁해결, 긴급수입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히

98) 중국외교부, <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hdqzz/lhg_43/jbqk/t4574.htm>(2010.5.10.방문)

다른 관세동맹은 범규범이 다르다. 각 회원국의 경제구조, 상품의 생산표준, 시장 수요에 따라 동일한 대외관세율과 무역규칙은 회원국에 다른 이익과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회원국은 동일 조치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다.⁹⁹⁾ 또한 회원국간의 관세는 제거되기 때문에 회원국은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타 비관세장벽을 취할 수 있다. 원래 동 협정은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목표로 하였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동일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조치를 제한할 수 없다.¹⁰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세동맹의 경제통합형식을 취한 지역경제공동체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다.

3) 공동시장

공동시장이란 2개 혹은 그 이상의 회원국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품무역에 관세와 수량제한을 제거하고 비회원국의 상품수입에 공동의 관세를 징수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본,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자유화를 실현하는 지역경제공동체이다. 공동시장은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보다 더욱 높은 통합단계의 지역경제공동체이다. 공동시장의 규범을 연구하기 위하여 EU 사례를 연구·분석하고자 한다.

(1) EU의 설립배경

EC에서 발전된 EU는 2010년 1월까지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등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AEC)와 유럽경제공동체(EEC)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경제공동체이다. ECSC 조약의 규정에 따라 그 유효기는 50년이며 1992년 7월 23일 만료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대륙의 경제는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프랑스와 독일간의 철강과 석탄전은 격렬하게 진행되어 있다. 전후 어려운 경제의 회복과 유럽

99) 劉世元, 前掲論文1998(4), p. 2 참조.

100) 張曉靜, 前掲論文, p. 287.

의 재건을 위해서는 1950년 4월 16일 유럽통합의 아버지인 Jean Monnet가 유럽 석탄철강공동계획¹⁰¹⁾을 기초하고 프랑스의 외무장관 Robert Schuman에 제출하였다. Robert Schuman은 독일과 프랑스간의 석탄철강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0년 5월 프랑스와 독일 석탄철강생산의 연합계획을 발표하였고 Schuman Plan이라고 불린다.¹⁰²⁾ 1951년 4월 18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은 ECSC 조약을 체결하고 1952년 7월 25일부터 발효시키며 ECSC가 형성되었다.

위의 6국은 경제협력을 석탄철강 부문에서 경제영역의 기타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년의 협상을 거쳐 1957년 3월 25일 로마에서 상품, 노동력, 자본 및 서비스에 관한 EEC 조약과 EAEC 조약¹⁰³⁾을 체결하였고 1958년 1월 1일부터 발효시켰다.¹⁰⁴⁾ 이로써 1965년 4월 8일 위 6개국은 ECSC, EAEC와 EEC를 유럽공동체(EC)로 합병하기 위하여 브뤼셀조약을 체결하였고 1967년 7월 1일부터 발효시켰다. 1992년 2월 7일 12개 국가 정부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연합 조약(TEU)을 체결하였고 1993년 11월 1일 발효시키고 이 조약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도 부른다.

(2) EU의 조직기구

EU의 조직기구는 주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EU정상회의),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유럽감사원(Court of Auditors) 등 있다.¹⁰⁵⁾

첫째, 유럽위원회는 집행위원회라고도 불리며 공동체 정책을 제안하고 이행할

101) 유럽석탄철강공동계획은 선탕과 철강 2개 경제분야가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와 통합으로 향하는 돌파구라고 주장한다.

102) Schuman Plan는 유럽국가의 통합은 세계평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1세기를 걸친 적대 관계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曾令良, “歐洲共同體對外關係與西歐一體化”, 『武漢大學學報』第5期, 1992, p. 65 참조.

103) EAEC조약과 EEC조약은 흔히 로마조약(Treaty of Rome)으로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조약만을 의미하는 로마조약은 EEC조약을 의미한다. 김재한, 『동북아 공동체』, 집문당, 2005, p. 38 참조.

104) 이호선, 『유럽연합(EU)의 법과 제도』, 세창출판사, 2006, pp. 8-9 참조.

10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동식 외2,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삼영사, 2006, pp. 269-313 참조.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기관인 동시에 입법보조기관이다. 유럽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전체로서 EU의 이익을 대표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유럽법률(European laws)을 제안하고, 이를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공동정책들을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행정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구성은 각 회원국 정부에 의하여 선임된 5년 임기의 중임 가능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위원회의 각 위원들은 각료(portfolio)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총(Directorates-General)을 관할한다.

둘째, 유럽이사회(Council)이다. 유럽이사회는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 EU회원국 정부수반의 집합체이다. 유럽이사회를 하나의 공식기구로서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조약에 의하면 유럽이사회는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소집되며, 회원국의 국가 또는 정부 수반들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참가하게 된다. 유럽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외무부 장관들이나 또는 위원회의 관련 부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럽이사회는 입법(legislation)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회원국들의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행한다. 그리고 유럽이사회는 EU가 행하는 국제협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론짓는 역할을 행하며, EU 재정계획에 대한 승인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유럽이사회는 공동외교 및 안보정책에 대한 책임도 지며, EU내에서의 자유와 안전보장 및 사법권과 관련된 책임을 진다.

셋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이다. 유럽의회는 입법과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예산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감독기구이다. 유럽의회의 권한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하여 상당히 강화되었지만 전형적인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의회보다는 훨씬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의회는 EU시민들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선출되며 EU 시민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유럽법안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며, 유럽이사회와 공동으로 입법권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의회는 유럽이사회와 협력절차로 유럽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작성된 유럽이사회와 유럽입법이나 지침의 초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으로 유럽입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의회는 유럽이사회와 공동의 의사결정(co-decision) 절차를 통해 유럽입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럽의회

는 전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에 대한 불신임을 2/3 다수결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의회는 유럽이사회와 함께 EU 예산에 대한 편성책임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현재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연장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추진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시민 또는 기관들로부터 청원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심사는 유럽연합의 상설위원회중 한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넷째 유럽사법재판소(ECJ)이다. EU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공동체 법이 모든 회원국내에서 일관된 방법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는 독립기구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개별 국가의 재판소가 다른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유럽 회원국들과 EU 기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개인간의 법적 분쟁을 처리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에는 각 회원국의 법률 체계를 대표하는 한명씩의 판사가 지정되어 있으나 재판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체 판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재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이 13명이나 또는 3인, 5인의 재판관이 하나의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특별재판(Chamber) 방식을 취하게 된다.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임무는 실제로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법이 준수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구체적 임무를 살펴보면 ECJ는 국내재판소가 EU협정에 대한 내용이나 범위의 해석에 관한 또는 유럽연합의 기구들에 의하여 채택된 조치들의 유효성에 관한 선결적 판결(a preliminary ruling)을 행하고, 회원국들이 의무이행에 실패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행한다. 그리고 ECJ는 다른 공동체 기구들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부작위소송(Proceedings For Failure to Act)을 행한다.

다섯째, 유럽감사원(Court of Auditors)이다. 유럽감사원은 EU의 공공재정의 운영을 감시하게 위해 1975년 룩셈부르크에 설립되었다. 감사원의 위원들은 연임 가능한 6년 임기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으로부터 1인씩 선임하게 된다. 주된 업무는 유럽공동체들과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들의 모든 세입과 세출의 회계를 감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회원국에서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원조를 받는 비회원국들, 즉 유럽개발기금의 지원을 받는 아프리카, 카리브 및 태평양(ACP) 국가들 또는 중동부 유럽국가들에 대해서도 수행된다. 이 밖에도 유

립감사원은 공동체의 재정이나 예산 관련 입법안의 초안에 대한 자문기능도 가지고 있다.

(3) 유럽연합의 분석

유럽연합법은 유럽연합의 설립과 관련된 기초적인 조약, 유럽연합이 통과한 법률 및 제3국과 체결한 국제조약의 총칭이다¹⁰⁶⁾. 유럽통합을 선도한 주역중의 한 사람인 장모네(J. Monnet)는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¹⁰⁷⁾ ECSC의 설립부터 오늘날까지 EU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회원국간에 체결된 조약들과 각 기구에 제정된 법규와 제도이다. EEC 조약은 EU의 법적 기초이며 EU의 목표, 조직기구의 기능, 정책조치 등을 규정한다.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는 EEC조약과 관련 법률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EEC 조약은 내용이 아주 광범위하나 그 주된 내용은 공산품 관세동맹과 농업공동시장의 설립, 공동체내부 공산품, 자본, 서비스,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품, 사람, 서비스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유럽경제공동체(EEC)의 기반이다. 본 절에서는 EEC조약을 근거로 한 EU의 주요내용을 주로 상품, 사람, 서비스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조절하는 법률과 제도 및 실현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법률제도이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해 12년의 과도기간에는 3개의 단계로 나누어지고 회원국간에 공산품의 관세와 수량제한 및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며 공산품 관세동맹을 실현하고 공동시장도 형성하게 된다. EEC조약 제9조는 EEC는 관세동맹을 기반으로 설립되는 것이며 또한 이 관세동맹은 모든 상품무역을 포함하고 회원국간에 수출입 관세와 동등한 효과의 조치를 금지하며 제3국에 공동의 관세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와 제15조 관세 삭감의 시간표에 따라 1958년 1월 1일부터 1968년 7월

106) 郭瑜, 『國際經濟組織法教程』, 北京大學出版社, 2008, p. 147.

107) 장철호, “EU 경제통합과정이 한·중·일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 36.

까지 차츰 EEC 내부 공산품의 관세와 수량제한이 완전히 철폐해지고 대외무역에 공동의 관세정책이 실시되고 공산품관세동맹이 형성되었다. 같은 해 주요 농산품의 공동가격은 실현되었고 1969년 농산품의 내부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어 내부 무관세의 주요 농산품공동시장이 실현되었다. 상품관세 감소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13조, 제16조 등에서 규정된다.¹⁰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수량제한 내용은 제30조-제34조 및 기타 조항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해서는 조약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집행위원회 명령 70/50(수입에 관한 수량제한)¹⁰⁹⁾, 수입금지에 관한 집행위원회 Practice Note¹¹⁰⁾, 이사회 규칙 2679/98(상품의 자유로운 이동)¹¹¹⁾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EEC는 농산물 수출에 수출보조정책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회원국간에 다른 경제구조와 경제수준의 차이로 인해 회원국간의 이익충돌을 야기하기 때문에 실천에 있어서 회원국간에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요소가 완전히 없어질 수 없다. 현재 이러한 요소는 여러 가지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상품이 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¹¹²⁾

둘째,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법률제도이다. 노동자 이동의 자유는 EEC 조약전문(acquis communautaire) 중 하나의 정책 부문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의 일부이다.¹¹³⁾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해서는 주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설립의 자유로 구성되어 있다. EEC 조약 제48조-51조에서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52조-58조에서는 설립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8조는 노동자의 고용, 급여, 노동 및 고용조건에 관한 규정, 회원국의 영토

108) 제12조에는 “회원국은 회원국간에 수출입에 관한 모든 새로운 관세 또는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를 도입하고 증가하도록 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에는 “회원국간에 실시하는 수입관세가 과도기간에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해 점점 철폐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에는 회원국에 회원국간에 수출에 관한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를 늦어도 제1단계에 철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9) Nigel G. Foster, *EU Treaty & Legislation*, 19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172-173.

110) *Ibid*, pp. 174-175.

111) *Ibid*, pp. 175-177.

112) 劉世元, 前掲書, p. 102 참조.

113) ‘노동자의 자유(셩겐 조약)’ <<http://pythagoras2.springnote.com/pages/4670961>> (2010.6.1.방문).

내에서 노동자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 노동자의 체류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¹¹⁴⁾ 제49조는 노동자 이동의 자유에 관한 규정의 실시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제51조에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노동자 이동의 자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2조에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서 회원국 국민의 대리점, 지사 또는 자회사의 설립권과 경영권, 자본에 관한 장의 규정에 따라 자영업 종사자의 경영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53조에는 “조약은 따로 규정해야 만, 회원국들은 본국 영토에서 기타 회원국 국민의 설립권한에 관한 모든 새로운 제한을 도입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4조에는 공동체에서 설립 자유의 제한에 관한 폐지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제55조, 제56조에서는 설립권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¹¹⁵⁾

EEC 조약은 대체적으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사회규칙 1612/68¹¹⁶⁾에서도 노동자의 이동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유럽의회의 명령 98/5/EC¹¹⁷⁾에서, 수정된 명령 2004/38/EC¹¹⁸⁾(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에서, 2005년 9월 7일 직업자격증의 인가에 관한 수정된 유럽의회와 이사회 명령 2005/36/EC¹¹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법률제도이다. EEC 조약 제59조-제66조

114) 제4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노동자들의 이동의 자유는 EEC 내에서 늦어도 과도기간의 종료에 보장될 것이다. 2. 그러한 이동의 자유는 고용, 급여와 기타 노동 및 고용조건에 관해서는 회원국의 노동자간 국적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3. 공익정책, 공공안전 또는 공중보건 분야에서 정당화된 한계 범위에서 아래와 같은 권리들이 있다. (a) 실제로 제시된 고용 기회를 수락할 수 있는 권리; (b)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c) 고용을 목적으로 회원국 국민의 고용에 관한 법률, 규칙 또는 행정행위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d) 회원국에서 고용되어 온 후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이행규칙들에 의해 구체화되는 조건들에 따라 해당 회원국의 영토에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4. 본조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의 고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채형복 옮김, 『유럽헌법조약』, 높이깊이, 2006, p. 75 참조.

115) 제55조에는 “본장(설립권)의 규정은 해당 회원국에서 일시적인 경우를 포함한 공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사회는 자격이 있는 다수결로 집행위원회의 勳議에 의해 특정한 활동이 본장의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6조에는 “본장의 규정과 이에 따라 취하는 조치는 공공정책, 공공안전 또는 공중보건을 사유로 외국인을 특별 처우하는 법률, 법칙 또는 행정행위 규정의 적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16) Nigel G. Foster, op.cit, pp. 178-180.

117) See id. pp.183-191.

118) See id. pp.191-206.

119) See id. pp.206-244.

에서는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9조는 다른 회원국에 정주하는 한 회원국 국민의 서비스제공 자유를 규정하고 제60조는 급료를 위하여 상품, 자본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¹²⁰⁾ 제62조에는 조약의 규정에 의해 회원국은 실제로 조약이 발표할 때 이루어진 서비스 제공 자유에 대하여 모든 새로운 제한을 도입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제63조에는 공동체에서 서비스 제공 자유의 현존 제한폐지에 관한 계획을 규정한다. 제64조에는 “회원국은 자국의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해당 경제부문의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에 제63조 제2항에 따라 내려진 명령에 의해 필요한 범위를 넘는 서비스의 자유화를 실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EC 조약뿐만 아니라 개정된 이사회 명령 77/249¹²¹⁾에서도 서비스 제공 자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립 변호사의 서비스 제공의 자유이다. 유럽법원은 판결에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관한 법률규정이 서비스를 받은 자유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제출하였다.¹²²⁾

넷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법률제도이다. EEC조약 제67조-제73조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7조는 공동체에서 회원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자본이동에 관한 모든 제한과 국적 혹은 거주지 또는 자본투자지에 기초하는 차별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8조는 회원국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행하는 자본시장과 대출제도에 관한 관리 및 차별금지를 규정한다.¹²³⁾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勳議를 기초로 제67

120) 제59조에는 “본관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공동체의 특정 회원국에 정주하는 회원국의 국민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대상인 사람의 국가가 아닌 공동체의 특정 회원국에 정주하는 회원국의 국민에 관하여 공동체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한은 과도기간에 점점 폐지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본관의 규정을 제3국의 국적을 가지는 서비스 공급자와 공동체내에서 정주되어 있는 제3국의 국민에게도 확대 적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에는 “급료를 위하여 제공되고 상품, 자본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는 본 조약의 범위 내에 속하는 서비스로 간주되어야 한다. ‘서비스’에는 특히 산업적 성격의 활동, 상업적 성격의 활동, 기능공의 활동, 전문적 활동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1) Nigel G. Foster, op.cit, pp. 180-183.

122) 劉世元, 前掲書, p. 102; 『歐洲法院報告書』, 第118/75號, 1976, p. 1185.

123) 제67조에는 “과도기간과 공동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필요한 범위 내에 회원국은 회원국간에 회원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이동에 관한 모든 제한과 국적 혹은 거주지 또는 자본투자지에 기초하는 차별을 점점 폐지하여야 한다. 회원국간의 자본이동과 연결된 경제적 지출은 늦어도 제1단계 끝까지 모든 해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8조에는 “회원국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조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화폐위원회와의 협의 후 필요한 명령을 내린다. 제70조에는 “회원국은 공동체에서 자본이동과 관련 정상적인 지불로 인해 도입된 새로운 환전제한을 피하고 현존의 규정이 더 많은 제한을 갖지 않게 함에 힘을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EC 조약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하여 실현할 목표만을 규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이사회가 권한을 받고 집행위원회의 勳議에 의해 화폐위원회와의 협의 후 만장일치 혹은 자격이 있는 다수결로 일련의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마스트리히트조약¹²⁴⁾은 EEC 조약에의 ‘자본과 지불’ 장을 부분으로 수정하게 만들었다. EEC 조약에의 관련 장절 규정의 범위 내에서 회원국과 회원국 간 및 회원국과 제3국 사이의 자본 및 지불의 이동에 관한 제한은 금지된다. 또한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직접투자제도, 금융서비스의 제공 또는 유가증권의 자본시장 편입 등에 관련하여 자본이 제3국으로 또는 제3국으로부터 이동하는 것에 관한 각국 국내법 또는 연합법에 따라 1993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제3국에 적용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¹²⁵⁾

EEC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공동시장 규범의 주요내용은 상품의 자유화에 관한 규정, 서비스, 자본,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자유화에 관한 규정, 공동농업정책, 정부보조조치, 각 기구가 제정한 법규와 정책 등의 법률제도가 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동시장의 설립은 회원국이 경제분야에서 많은 측면에서 주권을 양도하여야 하기 때문에¹²⁶⁾ 공동시장의 설립과 관여능력이 한계가 발생할 수 있

실행한 자본시장과 대출제도에 대해 관리할 수 있지만 차별이 없는 기초에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자본의 이동은 회원국내 자본시장 운영의 혼란을 야기할 경우, 집행위원회가 화폐위원회와의 협의 후 해당 회원국에 수권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고 보호조치의 내용은 위원회가 확정된다. 劉世元, 전게서, p. 118 참조.

124) 마스트리히트조약은 EC가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SEA)의 제정에 따라 공동시장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지만 보다 완벽한 유럽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단계의 경제 및 통화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1991년 12월 10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중앙은행의 창설과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경제통합동맹, 노동조건 통일, 공동방위정책, 유럽시민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다. 동 조약에 의해 유럽공동체(EC)가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진전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유럽연합(EU)라는 명칭이 사용되게 된다.

125) 채형복 옮김, 전게서, p. 84.

126) 양도할 권력은 비관세장벽의 제정권, 국내간접세세율의 조정권, 자본이동의 관여권력 등 있다. 張曉靜,

다. 그리고 회원국간의 자본,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자유화는 각국의 정치, 경제 및 법률 등 체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공동시장의 운영 및 그 법률제도의 실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자본과 지불의 자유는 각 회원국이 자본과 지불에 대하여 다양한 제한(융자대출, 현물환과 저축구좌경영 등 통화거래, 증권거래 및 기타 거래의 제한)을 제거하고 금지하도록 요구한다.¹²⁷⁾ 따라서 지금까지 공동시장을 설립하고 그 법률제도를 취하는 조직은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동시장의 수준에 이른 대표적인 경제공동체는 1992년 말에 공동시장을 설립한 유럽공동체뿐이다.

(4) 경제·화폐동맹

경제동맹이란 2개 혹은 그 이상의 회원국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품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비회원국의 상품수입에 공동의 관세를 실시하며, 서비스, 자본,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자유화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공동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재정정책, 화폐정책, 산업정책, 지역발전정책 등)을 실시하고 경제주권의 부분을 공동으로 설립된 조직에 양도함으로써 형성하는 지역경제공동체이다.

지금까지 경제연합의 수준에 이른 대표적인 지역경제공동체는 유럽연합밖에 없다. 경제연합의 특징은 회원국이 경제주권의 부분을 해당 공동체의 조직에 양도하도록 하고 정책의 차이를 폐지하며 적어도 통화정책의 통일¹²⁸⁾을 실현하는 것이다. 경제동맹의 규범은 주로 공동시장의 규범, 약간 공동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실시, 통일통화정책 및 제도규칙, 경제화폐동맹의 조직기구가 제정한 규범적인 문서 등 있다. 경제화폐동맹의 이러한 규범은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의 규범보다 더 많이 복잡하고 범위도 더욱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경제화폐동맹의 조직형식을 취하는 지역경제공동체가 거의 없는 것이다.

지역경제공동체의 네 가지 유형은 다른 단계의 경제통합을 대표하고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화폐연맹 등의 통합수준이 순서로 높아 질 것을 알 수 있

前掲論文, p. 287.

127) 鮮艷, “論兩岸四地經濟一體化法律制度的構建”, 西南財經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p. 11.

128) 통화정책의 통일은 회원국간 통일된 중앙은행, 단일화폐, 공동의 외환보유고 등이 있다.

다. 지역경제공동체는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화폐연맹 등 그들 속의 어떠한 하나일 수 있으며 그들의 총칭일 수도 있지만 지역경제공동체 규범은 자유무역지역 규범, 관세동맹 규범, 공동시장 규범과 경제·화폐동맹 규범에 대한 총칭이어야 한다.

앞에서 지역경제공동체와 경제세계화의 관계를 언급하였고 지역경제공동체 규범과 다자주의 규범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양자는 서로 추진적인 요소를 주기도 하며 또한 병행되어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경제공동체의 설립은 WTO 법규범의 관련 협정에 위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공동체 규범과 WTO 규범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지역경제공동체와 WTO의 관계

세계경제는 지역경제공동체와 경제세계화가 병행하여 발전하는 시대에 있으며 게다가 세계경제가 오랫동안 이러한 이중시스템에서 규제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²⁹⁾ 현재도 경제세계화와 지역경제통합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주로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WTO 법규범에 제도적인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¹³⁰⁾ WTO 법규범이 다자주의 규범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지역경제공동체의 관계는 실제로 지역경제공동체 규범과 WTO 관련 협정의 관계이다.

WTO법률 틀 속에서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법률규정은 WTO의 중요한 법규범이며 주로 1994년도 GATT 제24조,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와 GATT의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이 있다. 여기서는 주로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WTO 법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그에 대한 어림없는 인식과 제도적인 결함에 대하여 개선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WTO의 지역경제공동체 관련 규정

129) 孟祥秀, “論區域經濟安排與多邊貿易體制之關係”, 『哈爾濱學院學報』第11期, 2005, p. 48.

130) 吳敏, “全球經濟一體化與區域經濟一體化的衝突與協調”, 『華東師範大學學報』第2期, 2008, p. 52.

WTO의 지역경제통합 관련 규정은 GATT 제24조,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와 권능부여조항에는 지역경제통합조직에 관한 법률규정이 있다. WTO 협정은 지역경제공동체 규범을 최혜국대우의 예외로서 존재하도록 허락하지만 지역경제공동체에 규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말하면 지역경제공동체 규범은 WTO협정을 전제로 하여 WTO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1) GATT 제24조

GATT 제24조 제4항에는 지역경제공동체의 계약당사국은 무역의 자유화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고 WTO 기타 회원국과 지역경제공동체간의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4조 제5항 (a)과 (b)에는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동맹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잠정 협정에 관하여는, 각 구성 영토에서 유지되고 또한 동 자유무역지역이나 동 관세동맹의 형성 또는 동 잠정 협정의 채택 시에, 동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동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계약 당사자의 무역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 규정은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동맹의 형성 또는 잠정 협정 이전에 동일한 구성 영토에서 존재하였던 상응하는 관세 또는 그 밖의 상거래 규정의 일반적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거나 더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제24조 제5항 (c)에는 (a)과 (b)에 언급된 잠정 협정은 합리적인 시간내에 동 관세동맹 또는 동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한 계획 및 스케줄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4조 제8항에는 동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 구성영토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또는 적어도 동 영토를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필요한 경우 제11-15조 및 제20조 하에서 허용되는 것을 제외함)은 철폐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4조 제7항 (a)에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맹이나 지역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잠정협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계약 당사

자는 신속히 계약 당사자단에 통보하고, 계약 당사자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보고 및 권고를 계약 당사자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동 동맹 또는 지역에 관한 정보를 계약 당사자단에 이용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는 관세동맹의 형성이전과 이후에 적용되는 관세와 기타 무역법규의 전반적인 영향의 평가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¹³¹⁾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3항에는 제24조 제5항(c)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10년을 초과한다. 10년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잠정 협정 당사자인 회원국은 보다 장기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1항은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 협정에 제24조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특히 동조의 제5-8항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3) GATS 제5조

GATS 제5조에는 회원국이 서비스무역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은 당사자간의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고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적용 수준과 비교하여 해당 협정의 당사자에 대하여 각 서비스 분야 또는 업종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장벽의 수준을 높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무역 자유화협정은 상당한 서비스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당해 협정의 발효 시 또는 합리적인 스케줄에 기초하여 당사자간에 기초 차별조치를 폐지하거나 신규 혹은 더욱 차별적인 조치를 금지함으로써 ‘내국민대우’의 의미의 대부분 차별조치를 실행하지 않거나 없애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¹³²⁾

131) 曾華群, “兩岸四地經合模式之展望”, 王貴國 編: 『區域安排法律問題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04, p. 107.

132) 傅岷成, 前揭論文, p. 128.

(4) 권능부여조항

1979년 11월 28일 동경 라운드에서 차별적이고 보다 특혜적인 대우, 상호주의 및 개발도상국의 보다 완전한 참여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이 결정을 권능부여조항 혹은 수권조항이라고 부른다.¹³³⁾ 이는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는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개발도상국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며 개발도상국들의 보다 확대된 국제무역체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GSP)부여, 개발도상국간 특혜관세 적용, 비관세조치와 개발도상국간의 지역 및 국제교역협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조치 부여, 양허에서 상호주의 면제 등을 주로 하고 있다.¹³⁴⁾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은 WTO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에게는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 조항으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특별대우 및 조치가 한 단계 더 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권능부여조항 제2항 c는 저개발도상국간에 관세를 서로 감소하거나 제거하고, 계약국이 규정한 기준과 조건에 의해 비관세 장벽을 서로 감소하거나 철폐하는 지역적이나 세계적 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은 GATT 제24조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에 관한 규정 혹은 제25조의 면제 의무 절차에 의해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WTO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남미공동시장, 안데스공동시장 (Andean Common Market), ASEAN 등은 모두 권능부여조항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권능부여조항은 개발도상국간에 설립된 지역경제공동체에만 적용되지만 한·중·일 3국 중에 중국과 한국이 모두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한·중·일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는 적용면에서 고려되어야 함이 옳다고 판단된다.

상술한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에 관한 WTO 법규를 살펴보면 WTO 다자간 무역체제는 지역경제공동체를 그 법적 틀에 넣고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규정한다. 이것은 지역경제공동체 규범은 WTO 법률 틀의 하나 중요

133) 조영정, 『국제통상론』, 법문사, 2003, p. 196.

134) 강인수, 『국제통상론』 (제3판), 박영사, 2003, p. 32 참조.

한 법률제도이며 지역경제공동체가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WTO 법규를 충족하는 경우, 지역경제공동체를 그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다.

2)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WTO 다자규정의 문제점

WTO 다자무역체제는 지역무역협정을 최혜국 대우원칙의 예외로 하고 일련의 특수한 규정을 제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을 합법화하고 있다. 또한 2006년 12월 18일 WTO 이사회는 「RTA 투명성메커니즘에 관한 결정」(Decision on the Transparency Mechanism for Regional Trade Agreements)을 통과하였다. RTA 투명 메커니즘의 수권에 의해서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가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에 의해 RTAs를 심의하고, 동시에 WTO 무역개발위원회(CTD)는 권능수여조항에 의해 RTAs를 심의한다. 이 「RTA 투명성메커니즘에 관한 결정」의 주요내용은 RTA의 체결국의 WTO에 조기통보¹³⁵⁾의 의무, RTA 체결국의 통지의무, WTO 회원의 심의의무의 구체화와 심의투명성의 절차, RTA의 내용 변경 또는 수정 이후 및 집행기 만료전의 통지와 보고 등이 있다.

「RTA 투명성메커니즘에 관한 결정」은 통지, 정기적인 보고, 검사과정의 투명성 등 절차인 투명한 문제를 해결하지만 ‘실질상 모든 무역(substantial all the trade)’, ‘기타 통상 규칙(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기타 제한적인 통상 규칙(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등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WTO 법률규정은 완벽하지 않고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WTO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의하고자 한다.

(1) 적용범위

135) 조기통보는, A. GATT 제24조, GATS 제5조 또는 권능수여조항에서 규정된 통고내용과 시한, 회원국이 WTO 협정에 있는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a) 신 RTA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체결국이 WTO에 통보하여야 하고, (b) 관련 정보가 공개될 때 새롭게 체결된 RTA의 회원국이 WTO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B. A에서 언급된 정보는 WTO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하고 사무국이 WTO 홈페이지에서 공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각 회원국에게 제출된 정보의 종합개요를 보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常黎, “關於「區域貿易協定透明度機制」的決議”, 『WTO 經濟導刊』第6期, 2008, p. 69 참조.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은 상용되는 지역경제공동체의 유형들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GATT 제24조 및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는 모두 지역경제통합의 초·중급단계인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에만 대하여 일련의 특수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규정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을 합법화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 조항의 적용범위는 너무 좁다. GATS는 지역경제통합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서비스무역통합에만 규정되게 된다. 그리고 TRIPS에는 지역경제통합의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¹³⁶⁾ 그렇지만 지역경제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EU는 경제·화폐동맹의 수준을 넘어 완전경제통합에 매진하고 있는 고급수준의 지역경제공동체이다. 그래서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WTO 법률규정은 지역경제공동체의 발전에 크게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 라운드 협상에 개선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불확정적인 법률개념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WTO 법률규정은 불확정적인 법률개념이 많고 이러한 법률개념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WTO 규정에 대한 개선 논의를 진행해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경제공동체 관련 규정의 개선논의에서 대표적인 논쟁거리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한다.

첫째는 GATT 제24조 제8항 규정¹³⁷⁾에 있는 ‘실질상 모든 무역’에 관한 용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다. WTO는 회원국이 소수의 우세를 가지고 있는 제품과 부문에 대하여 특혜를 서로 주고 다른 회원국에게는 같은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그리고 또한 지역경제통합을 통해 다자무역체제를 양자 혹은 지역적 무역조적으로 분할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세계다자무역체제의 운

136) 問云芳, “區域經濟一體化與多邊貿易體制關係的法律分析”, 西南政法大學 碩士學位論文, 2004, p. 29.

137) GATT 제24조 제8항에는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동맹은 회원국간의 ‘실질적인 모든 무역’에 관한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 규정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을 방해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GATT 제24조 제8항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¹³⁸⁾

WTO 법률규정은 ‘실질상 모든 무역’에 대하여 포함된 무역량의 구체적 퍼센트를 규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천의 부분에서 줄곧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에 대한 WTO 지역무역위원회의 심사에 대해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EFTA는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농산품을 제외하였다. EFTA처럼 한 개 경제부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당연히 ‘실질적인 모든 무역’에 부합하지 않는다. GATT는 자유무역지역이 어떠한 예외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90%의 무역도 모두 제한이 없는 경우에 있더라도 전체 농산품무역을 제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계약당사자가 모두 해당 의무를 면제하여야만 한다.¹³⁹⁾

둘째는 GATS 제5조 제1항에 있는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의 규정이다.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에 대해서는 GATS 제5조 제1항 (a)의 각주에 분야의 수, 영향을 받은 무역량 그리고 공급형태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협정이 특정 공급형태를 사전에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한다.¹⁴⁰⁾ 그렇지만 하나 또는 몇 개 분야는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에 없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WTO 법률규정에 이러한 불명확한 법률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관세 밖의 상거래 규정’, ‘전반적으로 더 높거나 더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확정하는 법률근거가 없음),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개념에 대해서는 다른 이해가 있기 때문에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지역경제공동체에 심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동 분야에 대한 WTO의 보완 및 명확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한 심사와 감독

138) 韓龍, “世界組織의區域經濟一體化制度芻議”, 『國際貿易問題』第3期, 2003, p. 10.

139) 王貴國, 『世界貿易組織法』, 法律出版社, 2003, pp. 49-50.

140) 박용용, 『WTO협정』, 법문사, 2006, pp. 438-439; 박덕영, 이재형, 『WTO통상조약집』, 박영사, 2006, p. 552.

첫째는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한 심사의 문제점이다.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7-11항에는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심의를 규정하고, GATS 제5조 제7항에 서비스무역의 지역경제공동체 협정의 심사를 규정한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위원회가 1996년 2월에 설립되고 지역경제공동체를 심의한다. 그렇지만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WTO 법률규정에는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의 다른 유형에 대한 통일한 심사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¹⁴¹⁾ 또한 지역무역협정위원회가 일부 지역무역협정을 심사했지만 회원국이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차이가 크기 때문에¹⁴²⁾ 2007년 기준으로 CRTA는 단 한 차례만 WTO와 합치되는 RTA가 통보되었다고 합의하였을 뿐이다. 또한 CRTA에서 다루었던 RTA의 대부분이 사실심사에 관한 채택부터 난항을 겪어왔다.¹⁴³⁾ WTO 규정의 위반에 대한 보고서는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한 심의는 지역경제공동체 및 그 회원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GATT 제24조과 기타 조항의 연결과 통일부분에서 문제가 존재한다. 지역경제공동체를 심사할 때 GATT 제24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뿐만 아니라 WTO의 기타 원칙과 규칙에 의해 운영하는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어떠한 의미에서 말하면 후자는 전자보다 더 중요하고 복잡하다.¹⁴⁴⁾

셋째는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한 감독의 문제점이다. 실무에는 WTO 다자간 무역체제가 통상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한 심사를 중시하지만 지역경제공동체의 운영과정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공동체가 WTO 지역무역협

141) 지역경제통합의 다른 유형에 대한 실질적으로 통일한 심사기준이 없다. 예를 들면 WTO의 작업반은 EFTA를 심사할 때 EFTA의 회원국과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최종심사 보고가 형성되지 않았다. 작업반의 많은 회원은 농산품을 제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규정에 분명히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EFTA의 회원국은 수량문제 혹은 자유무역의 퍼센트지가 고려의 유일한 요소가 되어야 하지 않고 수량과 질을 결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趙維田, 『世界貿易組織的法律制度』, 吉林人民出版社, 2000, p. 88 참조.

142) 曾令良, “論WTO體制下區域貿易安排的法律地位與發展趨勢”, 『國際經濟法論叢』第7卷, 2003, p. 9.

143) 예컨대 2002년 CRTA의 의장은 소속 회원국들이 사실심사보고서에 자신의 RTA의 정보제공을 꺼리거나 상당히 지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바가 있으며, 이것은 제공된 정보가 장래 분쟁해결사건에 제공자 측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된다고 한다. 원용걸,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WTO의 역할”, 『통상법률』, 2006.8, p.594; 손태우, “WTO 체제내에서의 지역무역협정(RTA)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9권 제2호, 2009, p. 408 참조.

144) 劉世元, 前掲書, pp. 29-30.

정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을 초래한다.

(4) 분쟁해결메커니즘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12항의 규정¹⁴⁵⁾에 의해서는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에 관한 GATT 제24조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만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될 수 있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은 지역경제공동체의 설립 혹은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회원국간 분쟁의 해결에 대해서는 원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지역경제공동체는 EU와 NAFTA처럼 모두 내부 분쟁해결메커니즘과 절차가 있으며 그 회원국간의 분쟁은 일반적으로 해당 조직의 내부분쟁해결메커니즘을 통해 해결된다. 그리고 WTO는 지역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은 모두 WTO의 회원국이라면 조직내부의 분쟁이 지역경제공동체의 분쟁해결메커니즘에 적용되는지 또는 WTO 분쟁해결메커니즘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 볼 때 지역경제공동체의 분쟁해결메커니즘과 WTO 분쟁해결메커니즘은 그 적용에 대한 우선적용의 문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WTO의 비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경제공동체의 회원국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WTO 분쟁해결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WTO 법률규정에 있어서 상술한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 개선방안이 제기 되고 있다. 첫째는 법률규정의 많은 쟁점과 불확정한 개념에 대해서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WTO의 규칙체계를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RTA 분쟁해결메커니즘과 WTO 분쟁해결메커니즘의 관계를 규정하여야 한다. GATT 제24조의 해석에 의한 양해 제12항에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RTA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RTA의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WTO분쟁해결기구에 내부 분쟁을

145)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12항은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에 관한 제24조의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

회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메커니즘의 판결은 RTA의 최종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의 분쟁해결절차는 RTA를 규제하는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WTO 분쟁해결기구 소송절차에 있어서 CRTA의 심의보고는 판결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 개발 라운드 협상을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¹⁴⁶⁾

또한 지역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은 모두 WTO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공동체의 분쟁이 모두 WTO 분쟁해결메커니즘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공동체는 자체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이 있고 회원국간의 분쟁이 거의 조직내부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경제공동체의 규범은 WTO 다자간 무역체제의 일부와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기 때문에 WTO는 지역경제공동체의 분쟁에 대하여 국제연합헌장 제52조 제2항의 규정¹⁴⁷⁾처럼 그 분쟁해결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지역경제공동체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공동체의 내부분쟁이 그 분쟁해결메커니즘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WTO 분쟁해결메커니즘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상술한 방법을 통해서 지역경제공동체의 법률제도를 WTO 다자간 무역체제에 마련되며 지역경제공동체 규범과 WTO 다자간 무역체제의 관계가 역시 조화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공동체가 WTO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판으로 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 하에 발전을 이룩하고 무역의 자유화를 촉진시키며 WTO 법률규정의 개선에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3) 지역경제공동체가 WTO 다자간 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

WTO 다자간 무역체제는 지역경제공동체가 다자주의체제 내에서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로 발전하도록 한다. 지역경제공동체의 증가에 따라 지역경제공동체

146) 상세한 내용은 劉彬, “論WTO對RTAs의‘適度規制’”, 『國際經濟法學刊』第14卷 第1期, 2007, p. 180 참조.

147)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기관을 구성하는 국제연합 회원국은 지역적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4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 728 참조.

에 관한 WTO 규정을 위배한 지역경제공동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WTO 다자간 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분명해진다.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WTO 규정에서 살펴본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한 영향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1) 지역경제공동체의 적극적인 역할

첫째, 지역경제공동체 규범의 일부 규칙이 WTO의 원칙과 법률제도에 불일치한 경우 이는 WTO 법률제도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공동체 규범의 발전은 WTO 법률제도의 강화를 가져오게 하고, 이로 인해 WTO 법률제도의 융통성을 증강하며 지역경제공동체 규범과 WTO 법률제도의 충돌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한다.

둘째, 지역경제공동체의 발전은 WTO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을 촉진할 수 있다. 다자간 무역체제는 모든 부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도하라운드 협상 보다는 특정 지역, 특정 분야에 공동이익이 있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간 협상이 상대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기 쉽다. 그리고 세계적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상대적 민감 영역에서 지역경제공동체는 우선 협상할 수 있고 합의에 도달하기도 세계수준의 다자간 무역협상보다 쉽다. 예를 들면 APEC에서는 WTO에 「정보기술협정」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였고 더욱 많은 회원국의 가입을 실현시켰다.¹⁴⁸⁾ 이것은 지역경제공동체의 발전이 WTO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을 촉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지역경제공동체의 발전은 WTO 법률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WTO 다자간 무역체제는 일정한 결과를 얻었지만 경쟁정책, 기술수준, 상품검사 및 사법판결 등 민감 영역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과 캐나다간 FTA(CUSFTA)의 분쟁해결절차는 NAFTA와 우루과이 라운드 관련 분쟁해결절차의 협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WTO 분쟁해결메커니즘 상소기구의 설립은 NAFTA의 경험을 참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⁴⁹⁾ 이밖에도 NAFTA의 관련 규정과 EC의 서비스무역에 관련된 규정은 GATS의 탈성에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148) 孟祥秀, 前掲論文, p. 50.

149) 趙玉煥, 『區域經濟集團』,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07, p. 25.

그리고 어떠한 지역경제공동체는 환경보호, 노동자 표준, 투자와 경쟁정책 등 문제에 협의를 달성하였다.¹⁵⁰⁾ 지역경제공동체가 모두 자체의 실제상황에 의해 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은 WTO 다자간 무역체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지역경제공동체의 관련 규칙은 WTO 다자간 무역체제에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WTO 다자간 규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한다.

넷째, 개별 지역경제공동체는 WTO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지역의 역량을 균형 있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평화로운 발전에 유리하며 WTO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모두 지역경제공동체를 설립함으로써 초강대국과 맞설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 소수 초강대국가가 오랫동안 국제경제를 통제하는 현상을 타파함으로써 기타국가, 특히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지역경제공동체의 설립은 그 회원국간 상호신뢰와 경제무역의 융합을 강화시켜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기여한다.

(2) 양자의 충돌

지역경제공동체에 관한 WTO 법규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고 융통성이 부족하며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공동체와 WTO 다자간 무역체제간에도 많은 법률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양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충돌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역경제공동체는 자체가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지만 일부 지역경제공동체의 내부 규칙에는 WTO 다자간 무역체제의 최혜국대우원칙과 법률제도에 위배되는 법률제도의 효과적인 실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EFTA는 농산품무역을 그 무역범위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GATT 제24조 제8항 (b)에 규정된 자유무역지역 각 구성영역간의 실질상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와 기타의 제한적인 통상규칙에 위배한다.¹⁵¹⁾

150) 李双元, 李贊, “從WTO和EU法律制度談全球經濟一體化與區域經濟一體化的關係”,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Vol.34 No.6, 2005, p. 75 참조.

그리고 일부 지역경제통합조직의 규정은 WTO 관련규칙에 분명히 위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과 캐나다간 FTA(CUSFTA) 제104조에는 본 협정에 달리 성명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 협정에서 규정한 권리의무가 GATT의 권리의무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다.¹⁵²⁾ 이러한 규정은 지역경제공동체의 법률규정이 WTO 다자간 무역체제보다 우선하게 하여 WTO 법률제도의 효과적인 실시를 방해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경제공동체의 규정은 WTO 투명성원칙에 위배하고 비공개로 불공정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나 지역경제공동체는 운영과정에 제정된 규칙이 GATT의 규정과 불일치하고 GATT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공동체 규정은 반덤핑원칙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비관세장벽의 추가 등 행위로 인해 체약국간의 분쟁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¹⁵³⁾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위배된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부분에서의 법률충돌은 WTO 법률제도의 효과적인 실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는 지역경제공동체 규범의 타당하지 않은 부분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WTO 다자간 무역체제가 불완전하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 개발 라운드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151) 陳憲民, “論區域經濟一體化對WTO制度產生的影響”, 『法域縱橫』第15期, 2004, p. 7.

152) 孟祥秀, 前揭論文, p. 51.

153) 劉世元, 前揭書, p. 525.

제3장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과 추진현황

제1절 한·중·일 경제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1. 한·중·일 경제협력의 현황

한·중·일간의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냉전의 종식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한·중·일 3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역내의 국가간 경제협력 및 지역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동북아 지역에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의 기술과 자본, 통상국가¹⁵⁴⁾로서 한국의 생산기술과 경험, 무역대국과 세계최대 외국인직접 투자 유입국으로서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시장은 3국간 경제구조의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을 강화하여, 3국간 무역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GDP)는 2006년 7조 8,980억불, 2007년 8조 5,596억불, 2008년 9조 6,984억불이며 각각 세계전체 GDP의 16.3%, 15.7%, 16.1%를 차지하고 있다. 3국의 교역량은 2006년 3조 6,202억불, 2007년 4조 4,090억불, 2008년 5조 2,212억불로 각각 세계전체 교역량의 14.8%, 15.6%, 16.0%를 점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외환보유액은 2006년 2조 5,201억불, 2008년 3조 1,778억불이며 각각 세계전체 외환보유액의 49.4%, 47.3%를 차지하고 있다. 3국의 인구는 2007년 14억 9,628만명, 2008년 15억 202만명이며 각각 세계전체 인구의 23.6%, 22.4%를 점하고 있다.

154) 통상국가란 한 나라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무역 가운데서 수출이 국민총생산에서 점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국가의 기준은 약 30%로 한다.(30% 기준은 임의적인 것이나, 세계경제 속에서 작은 국가의 생존전략에 관한 연구는 스웨덴을 이 기준에 부합하는 대표적 통상국가로 간주하고 있음). 강명세, “동북아 지역주의의 현황과 한국의 선택”, 『정책브리핑』 통권 제14호, 세종연구소, 2002, p. 5.

<표 3-1> 한·중·일 경제·무역·외환 합산통계

(단위: 억 달러)

구분	한·중·일 합산		세계 전체	비중(세계대비)	출처
GDP	06	7조 8,980	48조 2,449	16.3%	World Bank
	07	8조 5,596	54조 5,838	15.7%	
	08	9조 6,984	60조 1,155	16.1%	
외환 보유액	06	2조 5,201	5조 1,000	49.4%	IMF
	08	3조 1,778	6조 7,129	47.0%	
교역량	06	3조 6,202	24조 4,420	14.8%,	IMF
	07	4조 4,090	28조 1,868	15.6%,	
	08	5조 2,212	32조 7,136	16.0%	
인구	07	14억 9,628만명	66억 1,204만명	23.6%	World Bank
	08	15억 202만명	66억 9,206만명	22.4%	
국방비	07	1,245	1조 3,400	9.3%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
	08	1,554	1조 4,640	10.6%	

※ 외교통상부, 『한·중·일 협력개황』, 2008.11, p. 148;

_____, “제4차 한·중·일 고위급회의 개최”, 보도자료 첨부문서, 2010.1.28.

_____, 한·중·일 주요경제통계, 2006 참조.

이러한 3국간 경제긴밀화의 정도를 2007년도 기준의 한·중·일 주요 경제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우선 투자분야에서 한국의 제1의 투자대상국은 중국이고, 일본의 제2의 투자대상국과 제4의 투자대상국이 한국과 중국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아도 3국간 투자분야에서 밀착관계를 알 수 있다.¹⁵⁵⁾

한·중·일 3국간의 무역액을 살펴보아도 3국간 경제관계의 긴밀화는 더욱 잘 알 수 있다. 우선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이고, 일본은 한국의 제3의 교

155) 투자분야에서 중국의 대한투자와 대일투자는 다른 2국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 13위와 14위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투자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전략적 접근을 행하고 있는 중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역대상국이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4의 교역대상국이고, 일본은 중국의 제2의 교역대상국이다. 이밖에도 한국은 일본의 교역대상국이고, 중국은 일본의 제1의 교역대상국이다. 이러한 내용은 <표3-2>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3-2> 한·중·일 주요 경제통계(2007년 기준, 단위: 억 달러)

구분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투자액	대일투자	7.97 (11위)	대한투자	3.85 (14위)	대한투자	9.9 (2위)
	대중투자	71.8 (1위)	대일투자	0.15 (13위)	대중투자	62.2 (4위)
3국간 교역액	대일본		대한국		대한국	
	수입	63 (2위)	수입	1,038 (2위)	수입	273 (6위)
	수출	264 (3위)	수출	561 (4위)	수출	541 (3위)
	교역	826 (3위)	교역	1,599 (4위)	교역	813 (3위)
	적자	299 (1위)	적자	477 (2위)	흑자	269 (4위)
	대중국		대일본		대중국	
	수입	630 (1위)	수입	1,339 (1위)	수입	1,276 (1위)
	수출	820 (1위)	수출	1,021 (3위)	수출	1,091 (2위)
	교역	1450 (1위)	교역	2,360 (2위)	교역	2,366 (1위)
	흑자	189 (1위)	적자	319 (3위)	적자	185 (2위)
양자간 교역액	한·일간 826		한·중간 1,405		중·일간 2,366	
통화증가율 (2006년)	11.1%		16.7%		0.2%	

※ 외교통상부, 『한·중·일 협력개황』, 2008.11, p. 146.

종합하자면 한·중·일 3국은 아시아 지역 GDP의 약 85%, 전세계 인구의 23%로 4분의 1에 육박하고, 전세계 GDP의 5분의 1에 가까운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영, 프, 독 유럽 3강국의 GDP를 합한 것보다 더 큰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계 교역량의 17%정도가 한·중·일을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⁵⁶⁾ 교역규모, 외환보유액, 인구수 등으로 볼 때 한·중·일 3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 국제적 위상의 제고를 위하여 유럽과 북미와 더불어 세계3대 경제권의 하나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는 3국이 정부차원에서 협력의 제도화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하에서 한·중·일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중·일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한·중·일 3국이 지역적·다자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한·중·일 3국은 교역과 투자 면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얻었다. 최근 중국 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한·중·일 3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시장과 높은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3국간의 자본, 기술과 자원 그리고 넓은 시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다른 어떤 경제권역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때문에 이는 한·중·일 3국의 국제경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발전과 세계경제위상의 제고 부문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한·중·일 3국은 3국간 경제협력을 제도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3국간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무역과 투자에서 국가간 장벽을 완화하고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한·중·일 3국은 현재 경제통합의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EU, NAFTA 등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여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의 경쟁이 있어서 지역경제공동체의 회원국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은 3국간 역사문제, 해양·영토 분쟁 등 정치적 갈등의

156) 한·중·일 지역경제문화협회 회장인사말, “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목표로 탄생되었습니다.”, <<http://www.beseto.or.kr/?mid=aboutpresigent>>(2010.4.18.방문)

해소 또는 해결을 위하여 3국간 경제협력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한·중·일 3국의 경제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을 제도화하여야 하고 이를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의 지역경제공동체 형성 수준이 아직까지 가장 낮은 수준의 지역경제통합인 FTA 조차도 체결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3국간 경제수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단시간내에 실현되기 힘들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 및 단계적인 추진방안, 경제공동체에 대한 3국의 입장을 연구하기로 한다.

제2절 한·중·일 경제협력 제도화 구상으로서 경제공동체

1.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의 제기

오랫동안 한·중·일 경제협력의 비전으로 한·중·일 경제공동체가 사용되어 왔으며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둘러싸는 숭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한·중·일 경제공동체에 관한 합의된 정의나 형식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지역경제공동체이자 하나의 제도적 협정과 조직이자 경제통합의 한 유형이다.

이론적으로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합을 모두 아우를 수 있지만 아직까지 FTA도 체결되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어떠한 형태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본격적인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축방안에 대해 연구하기에 앞서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통합수준 및 범위, 즉 경제공동체의 목표, 목표의 실현수단 등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경제협력의 최종적인 목표는 3국간 공동시장, 즉 실질적인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3국 경제공동체의 설립이다. 한·중·일 경제공동체란 3국이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3국간에 상품의 관세와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자본과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함으로써 공동의 경제이익을 향유하고 경제통합의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제도적 조직을 의미한다.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다른 지역의 경제공동체와 달리 일반적인 통합여건이 성숙되어 사후적으로 결성되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3국간 경제협력의 기초 위에 3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단계의 협력을 찾아내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2. 한·중·일 경제공동체에 대한 3국의 입장

한·중·일 3국은 경제관계의 긴밀화에 따라 3국간 협력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것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는 2010년 5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후에 한·중·일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의 운영세척(TOR)에 의해 공동연구를 2012년까지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9월 일본, 제3차 회의는 11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¹⁵⁷⁾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운영세척(TOR)을 살펴보면 한·중·일 FTA에 대한 공동연구가 종료되고 정부간 협상으로 격상되게 되면, 그 후 체결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된다.

한·중·일 FTA는 3국 경제협력 제도화의 결과이자 3국 경제공동체의 하나 유형이자 형성의 중요한 단계가 된다. 한·중·일 3국은 3국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지만 3국 경제공동체 구축에 대한 입장이 차이가 있다. 한·중·일 3국 경제공동체에 대한 3국의 입장은 3국 경제공동체의 구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구축에 대한 3국의 입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한국의 입장

157)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며 회의 개최순서는 원칙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한다.

오래 전부터 학계에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 또는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단편적으로 논의해왔으나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 한·중·일 경제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하여 표면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동북아 공동체와 같은 역내 통합에 대해 중심국가와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갖고 있는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축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한·일 FTA 또는 한·중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 FTA를 체결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상화는 한·중·일 FTA는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 상거래 활동, 정부조달 등과 같은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한·일 FTA와 같은 양국간 FTA를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이들을 통합하며 3국 FTA를 체결한다는 것이다.¹⁵⁸⁾ 정인교는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서도 한·일 FTA를 우선 추진하고 나중에 중국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창재 소장(2006)¹⁵⁹⁾은 현재 중국이 한·중 FTA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한·일 FTA와 더불어 한국과 중국간 FTA가 추진된 후, 한·중·일 FTA가 형성되는 시나리오가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한·중·일 FTA를 우선 추진하는 관점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2월 ‘신 아시아 외교구상’¹⁶⁰⁾을 발표하여 지속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할 것을 표명하였다. 특히 동북아시아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통합력 부족으로 인해 미국 및 EU와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통합의 과점에서 한·중·일 FTA는 중요한 추진 과제라고 주장하였다.¹⁶¹⁾ 최낙균(2009)¹⁶²⁾은 한·중·일 FTA 산·학 연구를 산·관·학 연구로 격상시

158) 정상화,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개념 모색과 발전 전망: 정치경제적 시각”, 이제민 외 『동북아 지역공동체 인식 및 제도화의 과제』, 백산자료원, 2007, p. 41.

159) 이창재, “한·중·일 FTA의 필요성 및 대비책 제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06.3.7, p. 5.

160) 신아시아외교구상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기 공동대처,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아시아국가들과의 적극적 협력, 국가간 협력 협의체 결성, ASEAN 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아시아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서 무역투자 대폭 확대, 아시아지역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면서 맞춤형 경제협력관계 구축 등이 이다.

161) 김은경, 『한·중·일 FTA 체결의 정치경제적 의의(CEO REPORT)』, GRI경기개발연구원, 2010.1. pp. 1-4.

키고 경제적 실익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정치·사회·군사·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연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한·중·일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단계로서 먼저 한·중·일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3국 FTA 추진의 지지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관점이다. 2007년 4월 13일 부산에서 열린 제39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이종훈 덕성여대 이사장은 세계경제의 지역화 흐름과 21세기 동아시아의 중심축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한·중·일 3국이 먼저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게 과제지만 3국간에는 아직도 공동체 형성의 초보단계인 FTA를 협상하지 못한 경우, 3국간 경제발전단계에 어울리는 지역경제공동체의 초보단계인 느슨한 형태의 FTA부터 촉진하고, 이를 관세동맹과 공동시장, 경제공동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³⁾ 또한 이화영은 종합적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동북아 에너지공동체, 식량공동체, 철도-물류공동체를 촉진하여 에너지, 식량, 물류를 중심으로 공동체 건설 방안을 제의하였다.¹⁶⁴⁾

그리고 제성호 교수(2003)¹⁶⁵⁾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동북아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역내 국가간 자유무역지역 설치협정 체결,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 조치 및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 동북아 개발은행(NEADB)설치·운영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북아시아위원회(2006)¹⁶⁶⁾는 FTA와 환율, 에너지 등 역내 공통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 및 공조의 단계인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우선 형성하고, 통화통합으로 실질적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거시경제, 대외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수행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며,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박정동(2003)¹⁶⁷⁾은 한·중·일 에너지협력체, 환경협력체, 교통·물류 협

162) 최낙균,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09.2.24, p. 7.

163) “한일경제인 ‘한일 FTA 추진’ 한목소리”, 연합뉴스, 2007.4.13.

164) 이화영,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과 극동”, *OK times : overseas Koreans times* 통권 제127호, 2004.6, pp. 11-18.

165) 제성호,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과 법·제도적 실천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72호, 2003, pp. 263-274.

166) 동북아시아위원회,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의 정립과 중단기 중점과제』, 동북아시아위원회, 2006.4.28, p. 16.

력체 등 경제협력체를 형성하고 아울러 한·중·일 FTA를 타결하며 동북아 FTA로 확대함으로써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이창재(2006년)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에서 박정동과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넷째, 동북아 공동체를 추진하는 관점이다. 제성호 교수(2007)¹⁶⁸는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우선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추진, 동북아 철도협력체제 구축, 동북아 환경협력체 구축, 초보적인 경제통합으로서의 FTA와 무비자 출입시스템의 단계적인 도입,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동북아 개발은행의 설치·운영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정인 교수(2005)¹⁶⁹는 동북아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 경제통합 추진, 에너지·환경 협력 확대, 물류망 연계망의 구축,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 등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와 협력과 통합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태욱 교수(2005)¹⁷⁰는 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동시 구축하고 특히 FTA는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동북아 구상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정창화(2008)¹⁷¹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구성에 대하여 동북아 FTA를 우선 구축하고, 그 뒤에 동북아 관세동맹을 구축하며, 그 뒤 동북아 공동시장을 형성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정치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상영(2005)¹⁷²은 한·중·일 FTA 체결을 촉진하고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며 장기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화하는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주장하였다.

현재 한국은 실현가능성이 큰 한·일 FTA를 먼저 촉진하느냐 아니면 한·중·일 FTA를 시작하느냐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3국 FTA의 체결이나 3국

167) 박정동,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에 관한 고찰』, 인천발전연구원, 2003, pp. 37-38 참조.

168) 제성호,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한국의 국제법적 실천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99호, 2007, pp. 207-216 참조.

169) 문정인, “동북아 지역의 공동발전과 한중일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강연』, 2005, p. 8.

170) 최태욱, “동북아공동체 형성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미래전략연구원 이슈와 대안』, 2005, pp. 1-4.

171) 정창화, “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공동체 형성전략”,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2호, pp. 333-334.

172) 홍상영, 『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 KOTRA, 2005, p. 34.

경제공동체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단계이다. 실제로 장기적 차원에서 한·중·일 FTA 또는 3국 경제공동체의 구축은 현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한국정부도 3국 정상회의를 계속하고 중·일 양국과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2년까지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며, 빠른 실일 내에 협상될 영역부터 먼저 시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시키면 정부간 협상 또는 타결에 가까워지고 3국 경제공동체의 형성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2) 중국의 입장

중국은 동북아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병행하며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국학자들은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통해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중국에서 경제공동체는 일반적으로 공동시장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중국정부도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정부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일 FTA를 특히 먼저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촉진해 오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한·중·일 경제공동체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일 FTA 또는 한·중 FTA 체결에 관한 관점이다. 칭화대학교(清華大學) 국제문제연구 유강영(劉江永) 교수(2010)¹⁷³의 관점에 의하면 중·일 FTA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관건이 되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초기단계가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이며 고급단계는 경제통합이고, 그 상징이 FTA의 발효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래의 동아시아 지역은 다차원, 다분야, 다수단, 다지역적 상호추진의 지역네트워크협력메커니즘과 ‘선남후북’(先南后北)의 경제통합과정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10년 5월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될 것이며 3국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다만, 한·중·일 FTA가 체결하기 전에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형성하기 힘들고, 일단 중·일 FTA가 형성되면 한국

173) 劉江永, “東亞區域合作面臨新機遇及挑戰”, <<http://www.cass.cn/file/20100316261122.html>>(2010.3.24.방문)

은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일 협력은 미래 동아시아 공동체가 형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한·중·일 FTA 체결에 관한 관점이다. 진류흠(陳柳欽)(2008)¹⁷⁴⁾은 한·중·일 FTA가 따로 아세안+3 틀, WTO 틀 및 3개 아세안+1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3국이 아세안+3 틀 안에서 전체적인 경제동반자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제도적인 협력을 하여야 하고 3국 FTA를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3국이 3개 아세안+1을 통해 한·중·일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유중력(劉重力) 교수(2008)¹⁷⁵⁾는 한·중·일 FTA에 대하여 3국 안정적인 정치신뢰관계의 구축, 3국간의 정례화된 협상메커니즘의 설치, FTA 협상 시간표의 작성, 일본과 FTA 전략의 조화, 산업구조 조정의 가속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한편, 경려화(耿麗華) 교수(2005)는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에 대하여 4개 단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단계는 (아세안+1)×3 FTA이며 한-아세안 FTA, 중-아세안 FTA 및 일본-아세안 FTA를 통해 (아세안+1)×3 FTA를 형성하고,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한, 중, 일, 북, 러, 몽 등 국가도 양자협력을 통해 양자 FTA를 체결하는 단계이다. 둘 번째 단계는 중요한 단계로 한·중·일 FTA의 체결이고, 셋 번째 단계는 한·중·일+러시아 FTA의 체결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로는 동북아 FTA의 형성단계로 양자 협력, 3자 협력, 4자 협력, 다자협력을 통해 동북아 FTA를 구축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을 실현하는 기초모델로 주장하였다.¹⁷⁶⁾

셋째,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관점이다. 서과령(徐坡嶺) 교수(2004)¹⁷⁷⁾는 한·중·일 3국이 선행함으로써 핵심조직을 구성하고 러시아, 몽골과 북한을 포함시키며, 무역분야부터 양자협력에서 출발하여 다자협력의 움직임으로써 FTA의 체결을 기본목표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한·중·일 경제공동

174) 陳柳欽, “中日韓FTA建立的可能性與路徑選擇”, <http://guancha.gmw.cn/content/2008-03/19/content_750550_5.htm>(2010.5.15.방문)

175) 劉重力, 盛璋, “中日韓FTA戰略比較研究”, 『東北亞論談』第17卷 第1期, 2008, pp. 59-60.

176) 耿麗華, “東北亞區域經濟一體化的最佳路徑選擇”, 『遼寧大學學報』第33卷 第6期, 2005, pp. 9-10.

177) 徐坡嶺, 陳悅, “東北亞區域經濟合作的制約因素及模式選擇”, 『當代亞太』第4期, 2004, pp. 33-35.

체는 상호신뢰를 강화하며 가능한 분야에서 무역원활화를 돌파구로 하여 동북아 철강공동체의 구축처럼 동북아 경제협력을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육건인(陸建人) 교수(2005)¹⁷⁸⁾는 동북아의 정치, 경제, 역사적 배경은 EU와 비해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EU와 같은 통합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로 10-15년내 한·중·일 FTA를 체결하고 중기목표로 20-30년내에 3국의 경제통합을 실현하고 공동시장을 설립하며 공동의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통화통합처럼 높은 수준의 목표에 관해서는 여건이 매우 미숙하기 때문에 일단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또한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제도적 협정이자 제도화된 조직이자 명확한 목표와 목표의 실현수단, 상설기구, 구체적인 협정과 규칙 및 자금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박건일(朴健一)(2006)¹⁷⁹⁾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목표가 단기적으로(10년) 한·중·일 FTA를 체결하고, 중기적으로(20-30년) 한·중·일 3국의 경제통합을 실현하여 공동시장을 구축하고 공동의 경제정책을 실시와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하며, 장기적으로는 (50년 이상) 통화통합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부문별로 한·중·일 철강공동체, 에너지공동체를 설립하고 산업협력에 상품기준의 일치화, 특히 전자제품, IT 산업에 대한 동북아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3국 및 동아시아 각국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척문해(戚文海)(2007)¹⁸⁰⁾는 東北亞地區科技共同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의하였다. 동북아 각국의 현존하는 경제과학기술단지, 개발구, 과학기술단지를 주요載體(carrier)로 하여 첨단과학기술유대(紐帶)를 설립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융통성이 있는 과학기술 투자기금모집메커니즘을 설치한다. 또한 그는 역내에서 수준이 높고 복합적인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동북아 지역협력에 적응하는 R&D 지원체계(智力支撐體系)를 형성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술수급(供求)메

178) 陸建人, “論東北亞經濟共同體”, 『當代亞太』 第6期, 2005, pp. 46-47.

179) 朴健一, 『中韓關係與東北經濟共同體』,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pp. 143-144.

180) 戚文海, “東北亞地區科技共同體的框架”, 王勝今, 『東北亞地區合作與中國東北振興研究』, 2007, pp. 295-296.

커니즘과 완벽한 중재서비스기구 등 동북아시아 고능력 과학기술정보교류와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동북아시아에서 다차원적인 과학기술협력 자문서비스메커니즘과 동북아시아 과학기술협력의 다자법률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후력(候力)(2008)¹⁸¹⁾은 동북아시아에서 노무협작 시스템 건설(東北亞地區勞務合作機制建設)을 제안하였다. 그는 동북아시아에서 노무협력협의를 체결하고 이를 위한 정부간 협상메커니즘을 설치하며, 동북아시아 노동력자원의 공동개발과 육성메커니즘, 동북아시아 학위상호인정과 직업자격인증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각국 노무협력의 조직과 협조를 담당하는 동북아시아 노동(勞工)부장이사회와 동북아시아 노동력자원개발과 유성자금을 설치하고, 역내 각국 및 기업의 노동력수급에 대한 정보교류를 강화하며, 여러 가지 초국가 노동력자원이동을 규범화하는 제도체계의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관점이다. 어조승(於兆升)(2010)¹⁸²⁾은 지역경제 통합의 세계움직임에서 보면 각 대륙이 모두 자체의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고 무역이전효과와 외부규모경제를 최대화로 발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모체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먼저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기초에 3+n의 형식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을 포함하는 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설립모델이다.

중국 국가부주석 시진핑은 일본방문시(2009)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은 아시아통합과정에 부합하는 큰 움직임으로 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 각국의 공동목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은 체계적인 공정으로 현실에 입각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각국이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이 역사의 기회를 잡고 협력영역

181) 候力, “東北亞地區勞務合作機制建設構想”, 王勝今, 前揭書, 2007, pp. 301-303.

182) 於兆升, “東亞經濟共同體의 前景展望”, 共識網, 全球事務, 區域研究. <<http://www.21ccom.t/newsinfo.asp?id=5200&cid=10332500>>(2010.2.10.방문)

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협력모델을 창조하고 3국 동반자관계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며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 국무원총리 원자보오는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제도가 다르고 사회경제발전수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은 점차적인 발전과정이어야 하고 급격히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지역은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아세안+1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위하여 조건을 만들고 이 3개 회의를 잘 진행하면 나중에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각국은 상호존중, 선린우호의 원칙에 의해 求同存異하고 불일치를 줄이며, 국제금융위기, 기후의 변화, 에너지식량의 안전보장 등과 같은 각종 도전에 같이 대처하며 지역경제사회의 지속적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개방·포용, 점진원칙과 같은 공식을 갖게 되고, 협력을 심화하며, 동아시아 공동체를 설립하는 장기적인 목표로 끊임없이 매진한다고 보았다.

아태재경과 발전중심(亞太財經與發展中心)(2009)¹⁸³)에는 동아시아 공동체는 장기목표로 경제협력에서 시작하고 공동의 전략이익을 기초로 하여 경제분야에 치우치는 경제공동체로 보았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단계는 우선 메커니즘조정 기구를 설립하고,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또는 역내 기타 국가를 포함하는 FTA를 형성하며, 지역공동통화를 마련함으로써 완벽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지신(張智新) 교수(2009)¹⁸⁴)는 우선 한·중·일 3국을 포함하여 대외개방적인 동아시아 FTA를 형성하는데 15-20년이나 걸리고, 3국 에너지협력공동체를 형성하는데 5-10년이나 더 소요되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10-20년이나 더 소요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동아시아 다자안전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안전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초 위에 유럽연합식의 동아시아 정치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거의 50년이나 더 걸려 최종적으로 한·중·일과 아세안, 심지어 인도, 호주 등을 포함하는 범 동아시아

183) 亞太財經與發展中心, “東亞共同體” 概念由來及各方反應”, 2009.10.15.

184) 張智新, “東亞共同體: 可以三步走”, <<http://news.xinmin.cn/world/gjpl/2009/10/10/2702387.html>> (2010.4.20.방문)

통합을 실현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일본의 입장

일본의 동북아 통합에 대한 아이디어는 일찍이 모리시마 미치오(森嶋通夫)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중 한·중·일 FTA에 대한 연구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한 단계이다.

현재 일본은 동북아 협력에 대하여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동아시아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중·일 FTA가 동아시아 공동체의 관건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극력 추진하기 위하여 한·중·일 FTA의 체결을 조기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중·일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9월 25일 중국 大連에서 개최된 진흥동북기동북아협력(振興東北暨東北亞合作) 국제세미나에서 일본 총합개발연구기구 이사장 Takafusa Shioya는 “최근 한·중·일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3국이 점차 상호불가결의 협력동반자가 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3국이 ‘동북아 공동체’라는 지역 협력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았다. 현재, NIRA(일본총합연구개발기구)는 한국과 중국의 연구기구간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위대한 비전’을 연구하는 것에 착수했고, 이를 통해 이 체제를 설립하는 계획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 위대한 비전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동북아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⁸⁵⁾

慶應義塾大學의 渡邊賴純 교수(2009)¹⁸⁶⁾는 “斬る(438)日中韓FTAの可能性と課題”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장기적인 목표를 확고히 하고 3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

185) 人民網, <<http://www.people.com.cn/GB/shizheng/1026/2808425.html>>(2010.3.12.방문)

186) 渡邊賴純, “日中韓FTAの可能性と課題”, 『エコノミスト』(Weekly economist)87(67) (4074) pp. 52-55, 毎日新聞社 [マイニチ シンブンシャ], 2009.12.8

본 총리는 이 회의에서 동아시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경제협력 강화를 바라고 한·중·일 FTA의 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는 2006년 무역수지의 예를 들면 한·일 무역에서 한국은 무역적자가 존재하고 중·일 무역에서 일본은 무역적자가 존재하며 한·중 무역에서 중국은 무역적자가 존재하므로 만약 3국 FTA가 체결되면 무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비록 3국간 교역에 있어서 취약한 부문이 존재하지만, 3국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중국에서 농산품과 노동집약형 제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제조하며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고, 일본의 하이테크 부품을 수출을 받은 한국은 최종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다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밖에도 그는 3국 FTA를 체결로 인해 역내관세의 제거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대중국 투자가 증가할 수 있으며 역내 생산 증가에 따라 미국, 유럽과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증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渡邊頼純 교수(2009)는 한·중·일 FTA의 체결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渡邊頼純 교수는 3국 FTA를 체결한 후에 한·중·일 경제공동체,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아닌 동아시아 FTA,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3국 FTA의 최종적인 목표이라고 주장하였다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존재한다.

金奉吉氏 教授(2009)¹⁸⁷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FTA의 움직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ASEAN+1이 형성된 후에는 ASEAN+3, ASEAN+6과 같은 광역의 FTA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한·중·일 FTA가 동아시아 FTA의 형성의 관건이라고 보았다. 즉, ASEAN+1에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동아시아 FTA, 동아시아 공동체도 한층 가속화된다고 생각하였다.

2008년 8월 1일 북경에서 열린 한·중·일 공동연구 국제심포지엄에서 3국의 연구기관의 대표자는 “日本・中國・韓國の自由貿易協定に向けた可能なロードマップ―その課題と展望”에 대하여 한·중·일 3국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3국 FTA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일본 NIRA의 대표인 畑佐伸英은 “일본과 한국의 FTA 교섭이 결렬요인과 일본이 중국과의 FTA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정

187) 金奉吉氏, 第3回 2限目“北東アジア經濟圏の必然性”, 富山縣大學連携協議會公開講座, 2009.9.26, p. 7.

치·경제상황을 포함시킨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2국간 FTA에 대한 장애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중·한 FTA를 체결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¹⁸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내각은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009년 10월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일·중·한 3국 정상회의에서 장기적인 목표로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 및 지역협력의 계속’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10월 24일, 하토야마(鳩山) 수상은 ASEAN+한·중·일 정상회의상 3국 정상회의 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설명하였다. 하토야마 수상은 미일동맹, 역사문제와 대북정책 등 여러 장애물을 넘을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9년 설립된 하토야마 행정부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전면화하여 일본의 경제권 형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대미 배타적인 경제권 구상이기 때문 미·일 군사동맹과의 갈등·충돌을 초래할 수도 있다.¹⁸⁹⁾

사실 하토야마(鳩山) 수상 취임전의 일본은 3국FTA의 체결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 아시아 국가와 FTA의 체결에 대해서도 아주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토야마(鳩山) 새 정부가 취임하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재의하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추진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현재 일본정부는 미·일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아시아 국가의 관계, 특히 한·중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동아시아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일본이 아시아에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본정부는 한·중·일 FTA의 체결에 찬성하지만 이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는 ASEAN과 일본·중국·한국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인도의 16개국의 경제권을 의미한다.

한·중·일 3국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3국은 3국 경제공동체 구축에 대해 모두

188) “日本・中國・韓國の自由貿易協定に向けた可能なロードマップ―その課題と展望”, 『日中韓共同研究國際シンポジウム』(シンポジウムの概要), 2008.8.1, p. 2.

189) “北東アジア(環日本海) 經濟圏構想について”, 小松基地問題研究會. <<http://blog.goo.ne.jp/ae/shinnya3/e/fc75463a4755c4cffe9a12c809873cfc>>(2010.3.18.방문)

반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3국 경제 공동체 구축에 대하여 비교적 신중히 접근하고 있고, 중국은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구축에 대하여 비교적 적극적이고 실무적으로 입하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구축에 적극적이고 3국 FTA, 특히 3국 투자협정의 체결에 가장 적극적이다.

하지만 하토야마(鳩山) 수상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공식적으로 제의한 후, 3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한·중·일 3국의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여, 그 후 한·중·일 3국과 아세안으로 확대하며 최종적으로 인도, 뉴질랜드, 호주로 확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주로 경제분야의 협력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가 ASEAN과 일본·중국·한국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인도의 16개국의 경제권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미국도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큰 관심이 있고 경제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도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큰 관심이 있고 경제와 안전과 관련된 모든 협력메커니즘이 미국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은 아시아 통합의 움직임에 부합하는 것이며 한·중·일 3국의 발전에 유리하다는 것은 3국간의 공통된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아직도 그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일본이 제의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포함시키고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경제공동체뿐만 아니라 정치, 안전 등 공동체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정치·경제제도 부분에서 많이 다르고 경제발전수준의 격차도 크기 때문에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을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구축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전체와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3.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추진방안

한·중·일 3국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와 경제통합의 움직임의 증대에 따라 공동시장과 같은 수준의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궁극적으로 공동시장의 형태를 지향하지만 3국간 경제협력의 제도화가 미비하고 경제통합의 합의구조는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EU 또는 NAFTA와 같이 제도적으로 완성된 경제공동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동시장과 같은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되 단계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단계로 한·중·일 투자협정과 무역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 투자협정과 무역협정의 체결은 3국 경제협력 제도화의 시금석이다. 한·중·일 3국은 투자증진, 투자보장, 투자활성화, 투자환경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와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3국간 투자협정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중·일 투자협정은 역내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와 자유화에 대한 시장개방, 투자자 보호의 강화, 상호투자 유치의 확대, 법·규정의 투명성, 지적재산권보호, 분쟁해결, 투자 관련서비스의 증진 등과 같은 환경개선 부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중·일 3국중앙자간 투자보장협정을 3국간으로 확대하는 투자자유화 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3국간 투자자유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마지막 단계로 구체적인 3국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한·중·일 무역협정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처럼 3국간 상품무역확대를 목적으로 조기수확계획(Early Harvest Program)¹⁹⁰을 통해 관세,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특정 품목에 대하여 양허관세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3국이 협의될 상품에 조기수확계획을 실시하고 상품품목과 시간표를 작성함으로써 규정시간에 관세를 제거하며, 일반적 민감 상품에 관세양허를 통해 관세를 인하하고 고민감 상품에 대하여 예외로 실시함으로써 3국 무역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단계는 한·중·일 FTA의 체결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회원국간에는 관세와 비관세를 제거하고 상품무역의 자유화, 투자원활화와 자유화를 단계적으

190) 조기수확계획은 중국-아세안 FTA 틀 속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관세인하계획이다. 이 계획은 2002년 11월 체결된 「중국과 아세안 전면적인 경제협력 기본협정」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다. 그 때 중국은 아세안과 모든 상품의 관세인하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양측이 가능한 빨리 FTA의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공동관심사가 되고 보완성이 강한 상품을 선택하여 빠르게 큰 폭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을 개방한다. 尙國驥, “中國-東盟自貿區的試驗田:早期收穫計劃”, <fta.mofcom.gov.cn/dongmeng/annex/zaoqijih>(2010.5.28.방문)

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중·일 FTA는 지역경제통합의 한 유형으로 그 형성이 WTO 규범 틀에서 GATT 제24조 5-7항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경제공동체가 이지만 EU와 같은 수준의 초국가적 공동체가 아니다. 자유무역지역 협정과 같은 경제공동체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상과정에서부터 협정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정부간 협력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한·중·일 FTA는 경제공동체의 초기단계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조직기구와 법률운영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조직기구는 주로 정책결정기구인 자유무역위원회, 집행기구인 사무국 및 분쟁해결기구가 필요하며, 법률운영메커니즘은 주로 3국 FTA 협정 및 규범적인 문서, 분쟁해결메커니즘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중·일 FTA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시할 뿐이며 역외국가에 다른 관세 및 무역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경제공동체 중에서 그 경제통합의 정도가 가장 약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즉, 한·중·일 FTA는 경제공동체 형성의 첫 단계와 기본전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단계는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제도화 완성으로 공동시장의 형성 단계로, 본고에서 추구하고 있는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최종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결성은 3국간의 경제성장의 기본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3국 공동시장 형성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협력체를 설립하고 3국간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무역·투자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시경제, 대외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통일대시장, 즉 공동시장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3국간 공동시장에서는 상품무역 자유화,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동시장 설립 조약, 각료이사회, 공동시장위원회, 사무국, 분쟁해결기구 등 조직기구, 금융협력기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은 최종적인 목표가 공동시장이며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3국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3국 FTA의 체결을 추진하며, 다음 단계로 3국 공동시장으로 발전시켜 환율변동에 대한 안정장치, 금융위기 재발예방 및 대응 등 금융·통화협력체를 설치하며, 거

시경제, 대외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실행하고 최종적으로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축 전략은 단계적인 접근, 동시병행의 추진방안이다. 단계적인 접근 전략은 실현이 용이한 분야인 한·중·일 투자협정과 무역협정의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3국 FTA로 이행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동시병행 전략은 장기적으로 한·중·일 공동시장으로 추진하여 동시 금융협력체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다음과 같이 한·중·일 공동시장의 추진전략을 표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3-3>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추진전략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간	2010-2015년	2015-2030년	2030-2050년
추진 목표	한·중·일 투자협정의 체결, 무역협정의 체결	한·중·일 FTA의 체결	한·중·일 경제공 동체 형성
사업별 추진	FTA: 한·중 FTA의 체결, 한·일 FTA 협상재개 금융: 양자 통화스왑규모의 확대, 3국간 환율 안정 등의 논의	FTA: 한·중·일 FTA의 체결 금융: 환율안정장치도입, 단일 시장의 형성준비, 3국 개발협력기금조성	단일시장형성, 금융, 재정공조, 무역 및 생 산요소의 자유화, 개 발은행의 설립정책의 사결정기구의 출범

※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전게서 p. 20; 박건일(朴健一), 전게서, p. 143을 참조하여
작성함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최종적인 목표는 공동시장이다. 한·중·일 3국이 당장 하여야 할 것이 3국 투자협정과 무역협정의 체결이다. 단기적인 목표는 10-15년간 한·중·일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고, 20-30년 3국 경제통합을 심화하며 공동시장으로 이행하고, 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며 자본, 서비스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는 한·중·일 3국이 현존 협력의 기초에 3국의 실제상

황에 의해 우선 3국 투자협정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여야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FTA에서 점진적으로 경제공동체로의 과정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3국 경제공동체가 구상단계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건설은 3국 모두에게도 큰 공정(工程)으로 3국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3절 한·중·일 정부간 경제협력채널과 현황

1. 한·중·일 정부간 협력채널

한·중·일 3국 정부간의 공식적인 협력관계는 1999년 ASEAN+3 정상회의에서부터 시작된다. 1997년 12월 ASEAN은 창설 30주년 계기로 비공식 정상회의 시 한·중·일 3국 정상들을 최초로 동시 초청하였다. 한·중·일 3국 정상은 1999년 ASEAN+3 정상회의 참석을 기회로 처음으로 비공식적인 조찬모임의 형식으로 3국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일본 오부치 총리의 제의로 2000년 2차 회의를 계기로 정례화하게 되었다. 그 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ASEAN+3 정상회의에서 2001년까지는 조찬을 겸한 비공식회의로 개최되었으나 2002년부터는 공식회의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으로 점차 발전해 오고 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로 인해 회담을 하지 못한 2005년을 제외하고 1999년부터 2007년 까지 ASEAN+3을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8차례 열렸다.

<표 3-4> ASEAN+3 정상회의 시 역대 3국 정상회의의 주요성과

차례	일시와 장소	주요 성과
1차	1999. 11. 28 필리핀	한·중·일 정상 조찬회의 개최 ASEAN+3 틀에서 협력 시작
2차	2000. 11. 24	3국 조찬회의를 통해 ASEAN+3 틀에서의 3국 정상회의 제의

	싱가포르	
3차	2001. 11. 5 브루나이	3국 '외교장관 회의', '경제통상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급회의 신설 및 연례개최 합의
4차	2002. 11. 5 캄보디아	3국 정상회의 공식화
5차	2003. 10. 7 인도네시아	「한·중·일 협력에 관한 3국 정상 공동선언」 채택 공동선언 후속조치를 위한 '3자 위원회' 구성
6차	2004. 11. 29 라오스	「3국 정상선언」 이행추진을 위한 '행동전략' 채택 승인 3국 협력 '실적보고서' 채택 승인(제1차)
7차	2007. 1. 14 필리핀	3국 협력 「실적보고서」 채택 승인(제2차)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 개시 합의 한·중·일 정상회의 별도개최 합의
8차	2007. 11. 20 싱가포르	3국 협력 「실적보고서」 채택 승인(제3차) 「한·중·일 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작성, '사이버 사무국 설치' 등 13개 신규사업 채택

※ “한중일협력” <<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hdqzz/zrhhz/>>(2009.11.24. 방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후쿠오카 한·중·일 정상회담 의의와 경제협력 전망”, p. 2.

사실 세계화의 진전과 지역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와 ASEAN 10개국의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 속에서 한·중·일 3국도 이러한 추세를 인식하고 ASEAN+3과는 별도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한국은 2004년부터 ASEAN+3 정상회의 참석과는 별도로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특히 2008년 세계적 금융·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3국 정상회의의 연내개최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한일·일한협력위원회도 2005년 제41회 합동총회에서 동북아의 평화安定과 共同繁榮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정상회의를 다른 국제회의와는 독립한 형태로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그 후 합동총회때마다 제기하여왔다.¹⁹¹⁾

한·중·일 3국은 금융·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 후 동 회의는 정례화를 통해

191) 吳在熙, “韓中日후쿠오카頂上會議의 歷史的 意味”, 『亞太Focus』, 亞太政策研究院(APPRI), 2009, p. 71.

중국이 2009년, 한국이 2010년 각각 제2차, 제3차 정상회의를 열게 되었다. 한·중·일 3국은 1999년 열린 제1차 정상회의부터 여러 성과를 얻고 이에 비추어 2002년 「한·중·일 FTA 연구」, 2003년 「한·중·일 협력증진에 관한 공동선언」 및 이를 성공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3국 외교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3자 위원회’ 구성, 2004년 「3국 정상선언」 이행촉진을 위한 「행동전략」과 3국 협력 「실적보고서」, 2007년 제8차 3국 정상회의에서 「3국간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¹⁹²⁾이 채택되었다.

<표 3-5>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주요성과

차례	일시 및 장소	주요의제	주요 성과
제1차	2008.12. 13 일본 후쿠오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 협력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국제 금융 및 경제 문제 공동 대처 ·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정상회의 3국내 개최 정례화 및 09년 중국 개최 합의 · 3국협력 관련 4개 문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 성명」,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 채택 · 3국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 유관 기관장 협의체 발족 등 재난관리 협력 강화 - 09년 상반기 ‘사이버사무국’ 개설 - ‘한·중·일 우호만남’ 09년 한국 개최 - 한·중·일 청소년 주무부처 협의체 구축 - 한·중·일 문화서툼사업 지속 실시 - 물류장관회의 및 관세청장회의 09년 중국개최 - 3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09년 중국 개최

192) 이 ‘행동계획’에서는 여러 분야 협력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고 3국 협력에 관한 ‘진진보고서’는 매년 각 분야의 진전에 대해 심의하며 3국은 2~3년 마다 번갈아 ‘행동계획’을 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간 투자협상 적극 추진 -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 지속 실시 - 3국간 산업협력 합의체 구축 방안 모색 · 국제 금융 및 경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 금융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 CMI 다자화 추진, DDA 협상 조기 타결 위한 노력 등 합의 ·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 등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기후 변화·환경 등 관련 의견 교환
제2차	2009.10. 10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한·중·일 협력 10주년 평가 및 향후 협력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문제 포함 동북아 정세 - 국제경제 및 금융현황 - 기후변화 및 녹색 성장 - 신종플루 공동 대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공동성명」 채택 ·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한국 개최 합의 · 3국 협력 관련 2개의 문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 채택 · 3국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합의 - 사이버사무국 개설 및 상설사무국 설치 검토합의 - 한·중·일 Business Summit 개최 - 수자원 관리 장관급 합의체 구축 - 항공안전 분야 협력 추진 - 제4차 한·중·일 청소년 우호만남 중국 개최 - 대학간 교류를 포함한 포괄적 인적 교류확대 합의 ·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바오 총리 방북경과 청취 - 한국측 일괄타결 방안에 대한 3국간 공감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 조속 재개를 위한 공조 확인 · 국제적 경제위기 및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공조 재확인 - 2010. 11 한국 개최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협력
제3차	2010.5.29-30 한국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 협력 발전 방안 · 최근의 동북아 정세 · G20 정상회의 등 지역 및 국제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국 협력 비전 2020」 채택, 「표준 협력 공동성명」과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 채택 · 한·중·일 FTA 추진방안 · 3국 협력 사무국 2011년 한국에 설립되기 합의 · 지속가능개발 및 환경보호 협력 · 인적 문화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화합과 우의증진 ·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향한 공동노력

※ 외교통상부,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 보조자료 첨부문서 2, 2010.2.1.<<http://www.mofat.go.kr/press/pressinformation/index.jsp>>; 「3국 협력 비전 2020」 참조.

구체적으로 2008년 12월 13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였고 「한·중·일 3국 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한·중·일 3국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과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였다.

2009년 10월 10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한·중·일 협력에 관한 3국 정상 공동선언(03.10.07)」,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및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08.12.13)」을 재확인하고, 「3국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공동성명」과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2010년 5월 29-30일간 한국 제주도에서 열린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193)에서 3국 정상들은 「3국 협력 비전 2020」¹⁹⁴⁾을 채택하였고 내년부터 3국 상설 사

193)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5월 23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7차 한·일·중 통상장관회의와 같다. 더욱이 지난 2002년 9월 13일 회담 틀이 마련된 뒤 2009년 10월 10일 제2차 까지는 언론은 물론 정부에서 조차 명칭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한·중·일’로 표기해왔다. 이제부터는 3국에서 번갈아가며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회담 개최국을 맨 앞에, 차기 개최국을 두 번째에 넣어 부르기로 했으며, 이런 원칙에 따라 일본이 차기 개최국이기 때문에 ‘한·일·중 통상장관회담’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것이다.

무국을 한국에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역내 경제성장과 통합에 필수적인 3국간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늘려 나가기 위해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도록 노력하고 무역 원활화 노력을 통해 3국의 무역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중·일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3국간 공동시장 형성을 포함한 장기적인 경제통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중·일 3국 상설사무국은 사무총장 1명과 2명 사무차장, 기타 직원으로 구성되고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과 신규협력 사업 발굴, 협력 사업 평가 및 보고서 제출, 웹사이트 관리 및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대한 감독은 3국 정부가 공동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임명된다. 다만 초대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맡고 이후 일본, 중국 순으로 맡기로 하였다.¹⁹⁵⁾ 3국 상설사무국은 국제기구가 아닌 국가간 ‘대화체(dialogue)’를 위한 세계최초의 사무국이 된다. 3국 상설사무국의 설치에 동북아 역내가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3국의 협력을 제도화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한·중·일 FTA의 체결,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형성 혹은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아세안(ASEAN)과 버금가는 동북아의 제도화된 국가그룹이 생성되는 것이라며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이 당국자는 이어 “서울에 유치되는 최초의 다자관계 사무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¹⁹⁶⁾

이밖에도 한·중·일 정부간 협의체, 외교장관회의, 고위급회의 및 성과를 포로 소개하고자 한다.

194) 「3국 협력 비전 2020」은 3국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3국 협력 사무국이며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기타 각료급 및 고위급회의 등 3국간 협의체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고, 협력 사업의 발굴과 이행을 촉진할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동반자적 협력관계 제도화 및 강화, 공동번영을 향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지속가능개발 및 환경보호 협력, 인적·문화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화합과 주의 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공동 노력 등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 한국경제, 2010.5.31. A3.

196)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2010.2.2.

<표 3-6> 한·중·일 정부간 협의체 현황

* 표시는 추진중

수준 분야	정 상	장 관 급	고 위 급	국 장 급	실 무 급	분야별 협력체 수
전반/ 지역·국 제정세		외교장관 회의 3자위원회	외교부간 고 위급(차관보) 회의	중남미정책국장급 회의 · 아프리카 정책대화	· 부국장급회의	7
무역/ 투자		경제통상장 관회의 관세청장 회의 특허청장 회의		· 다자통상국장회의 · 한·중·일투자협정협상 · 비즈니스 환경개선 협의체 회의 · 한·중·일 국제국장 회의	· 동북아 표준협력 회의 · 한·중·일 지적재산 워킹그룹 · FTA 민간공동연구(종료) *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중	10
금융/거 시경제		재무장관 회의				1
농업/어 업/임업				수산 당국간 고위급 협의		1
에너지		에너지장관 회의(5개국)				1
환경	한 · 중 · 일	환경장관 회의		기후변화 국장급정책 협의 한·중·일 3개국 황 사 대응 국장급회의	대기오염물질장거리이공 동연구 프로젝트 한·중·일 화학물질 정책대화 환경산업원탁회의	6
관광	일	관광장관 회의			· 과장급회의	2
문화	상	문화장관 회의				1
교육	회			교육 국장급 회의		1
과학기술	의	과학기술 장관회의		과학기술 협력국장급 회의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3
ICT		정보통신 장관회의		· 정보통신국장급회의 · IT국장 OSS회의 · ICT전문가 회의		5

운송	물류장관 회의		· 문화콘텐츠산업포럼 동북아 항만 국장회의 , 물류 국장급회의	물류 과장급회의 동북아 항만 과장급회의	5
방재	지진협력청장회의 재난관리기관장회의				2
인사행정	인사장관 회의		인사국장회의	인사행정심포지엄	3
소비자				소비자정책 협의회	1
보건	보건장관 회의				1
감사	감사원장회의(부총리)				
치안			*치안관계 고위급 실무자 회의	* 인터폴3자회의	[*2]
수준별 협력체수	1	17	1	18[*1]	13[*1]
					50[*2] 50[*2]

* 추진중

※ 외교통상부, “한·중·일 정부간 협의체 현황”, 보도자료 첨부문서 첨부 1, 2010.2.1.
<<http://www.mofat.go.kr/press/pressinformation/index.jsp>>

<표 3-7>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결과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주요의제	주요성과
07.6.3(일), 한국제주도 (제주컨벤션 센터)	송민순 외교장관 아소타로외무대신 양제츠 중국외교 부장관 (의장국 : 한국)	· 3국 협력 발전 방안 · 동북아정세 · 기타 주요 지역 정세 및 국제 문제	· 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9개 분야 실질협력사업 확대 합의 ① 투자협정 교섭 촉진 ② FTA 민간공동연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 방향 협의 ③ 에너지 안보 대화 강화 ④ 김포-상하이/상하이-하네다 셔틀 조기 개설 노력 ⑤ 황사-해양쓰레기 등 환경 분야 협력 강화 ⑥ 기후변화 관련 정책 대화 지속 ⑦ ‘한·중·일 문화셔틀’ 추진 ⑧ 언론인교류 활

			<p>성화 ⑨ 외교안보 국책연구소간 교류재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문제 등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논의 · 차기 외교장관회의를 적절한 시기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08.6.14(토), 일본 도쿄 (이이쿠라 공관)	<p>고오무라 마사 히코 외무대신 양제츠 중국외교부 장관 유명환 외교장관 (의장국: 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간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 제1차 한·중·일 별도 정상회의 준비 · 주요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한·중·일 별도 정상회의 2008년 9월 경 일본 개최 합의 · 한·중·일 별도 외교장관회의 개최 정례화 합의(제3차 회의 09년 중국 개최) · 2007년 합의된 신규 협력사업 추진 현황 평가 · 재난 방지 및 관리 분야 협력 등 3국 협력 추진방향 논의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TICAD IV(아프리카 개발회의) 및 한·중·일 아프리카 정책대화 등 아프리카 관련 3국 협력 논의, 해양쓰레기 및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유엔개혁 등 논의
09.9.28(월)중 국상하이 (서교빈관)	<p>양제츠 외교부장 유명환 외교장관 오카다 카츠오 일본 외무대신 (의장국: 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 협력 발전 방안 · 제2차 한·중·일 별도 정상회의 준비 · 주요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 10.10 베이징 개최 합의 · 3국 협력 10주년 평가 및 신규 협력사업에 대한 3국 입장 조율 · 북핵문제 포함 동북아정세,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등 주요지역 및 국제정세 관련 의견 교환 · 2010년 G20 회의 한국 개최를 위한 협력 강화 계기 마련
10.5.15-16일 간	<p>유명환 외교장관, 양제츠 중국외교부 장관, 오카다 카츠야 일본 외무대신 (의장국: 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 · 제3차 정상회의 준비 ·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 금번 정상회의 시 채택할 공동문서, 신규협력사업 및 부대행사 개최방안 등에 대해 협의 ·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3국 협력 발전의 비전과 미래상에 대해 논의 ·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와 관련, 최근의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협력, G20, 국제경제위기 공동 대응, 기후변화 등에 대한 의견 교환

		· 제5차 일·중·한 외교장관 회의를 내년 일본에서 개최기로 합의
--	--	--------------------------------------

※ 외교통상부,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의 결과”, 2010.2.1. 보조자료 첨부문서, 첨부 3.

_____, “제4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의 공동언론발표문”, 보도자료, 2010.5.15.

<표 3-8> 한·중·일 고위급회의의 결과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주요의제	주요성과
07.5.19 중국 북경 (조어대)	심윤조 차관보 추이 텐카이 부장조리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심의관 (의장국 : 중국)	· 동북아 안보정세 · 3국 협력 추진방향 - 3국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의 3국 교대 개최 · 3국협력 진전 평가 - 경제·통상/에너지·환경/문화·인적교류 ·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 - 북핵문제, 동아시아협력 -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 지구환경, UN 개혁, PKO 등	· 제1차 별도 외교장관회의 준비 · 고위급 에너지 안보대화, 문화서툼 구상, 김포-하네다-상하이 서툼, 언론인 교류 등 실질협력 분야 진전에 관한 평가 ·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3국 협력 방안 세부 논의 - 기타 지역정세 및 3국 외교정책에 관한 의견 교환 · 중국측, 08년 북경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일의 적극 지원 요청
07.10.28(토), 서울(신라호텔)	심윤조 차관보 야부나카미토지 외무심의관 히야페이부장조리(의장국: 한국)	· 3국 정상회의의 준비 · 3국협력 발전방향 · 한반도 문제 및 동북아정세, 중동·아프리카 등 기타 지역 정세, 에너지 안보·기후변화 등 국제문제	· 3국 정상회의의 준비차원에서 국별 주요 성과사업(안) 제시 - 사이버 사무국 개설, Action Plan 작성, 물류지원체계 수립 등 · 남북 정상회담, 북핵문제, 동북아다자 안보대화, 북·일/북·중 관계 등 동북아 정세에 관한 의견교환 · 중국의 SCO 추진원칙, 이란핵문제 해결, 제3세계 지원 관련 정보교환 등 논의 ·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환경보호관련

<p>08.12.9(화) 동경 (외무성)</p>	<p>이용준 차관보 사사에켄이치로 외무심의관 양옌이 아주국 국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별도 정상회의 준비 · 3국간 협의체 운영방식 · 제2차 별도 정상회의 개최 문제 	<p>협력강화 공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회의 의제 합의 - 한·중·일 협력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 금융위기문제 등 - 공동문건(4개) 문안교섭 · 별도 협의체가 개최되더라도 기존 ASEAN+3 계기 협의체도 지속 개최 - 단, 협의체에 따른 의제 차별화 필요성 지적
<p>10.2.1(월)</p>	<p>이용준 차관보, 후정웨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사사에 켄이치로 (佐々江 賢一郎)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의장국: 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10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 이행현황점검 ·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현황 등 3국 협력추진방향 논의 · 한반도 포함 주요 지역 정세 및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포함한 제1, 2차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 사항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3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급 회의를 사전 개최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 핵문제, 아이티 재건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의견 교환 · 3국은 특히,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 시 3국 정상들의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한·중·일 협력 사무국을 한국내에 설치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 나가기로 함
<p>10.4.2(금)</p>	<p>이용준 차관보, 후정웨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3국 협력 발전방향 ·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 제4차 외교장관회의 개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정세를 포함한 주요지역 및 국제 정세 등과 관련의견 교환 · 3국 협력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킬

	사사에 켄이치로(佐江 賢一郎)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수 있는 다양한 성과, 협력사업 및 부대행사 등 논의
--	----------------------------------	----------------------------------

※ 외교통상부, “제4차 한·중·일 고위급회의 개최”, 보조자료 첨부4: 한·중·일 고위급회의 결과, 2010.2.1.

_____, “제5차 한·중·일 고위급회의 개최결과”, 2010.4.2<<http://www.mofat.go.kr/press/pressinformation/index.jsp>>

한·중·일 3국은 3국 정상회의에서 많은 성과를 취득하고 많은 공동성명 및 문서를 체결하고 이러한 공동성명과 문서는 많은 분야에 미치고 있다.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는 공동문서에서 3국간 포괄적인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이하에서 한·중·일 정부간 경제협력의 제도화 추진현황을 연구하고자 한다.

2. 한·중·일 정부간 경제협력의 제도화 추진현황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3국 FTA의 체결, 투자, 금융의 협력이 3국 경제협력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 정부간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연구하기 전에 앞서 3국간 양자 경제협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한·중 FTA, 한·일 FTA, 중·일 FTA 및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을 따로 연구하고자 한다.

1) 한·중간 경제협력의 제도화

(1) 한·중 정부간 경제협력의 제도화 내용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수교 이래, 양국간의 고위층 상호방문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양국간의 경제·통상관계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다. 2005년 양국의 교역규모는 1,000 억불을 넘었다. 또한 2008년 기준으로 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이자 제3의 무역대상국이고, 제1의 수출대상국이 되었다. 한국은 또 중국의 제4대 수출대상국이자 제3대 수입대상국으로 제5의 무역상대국이 되고 있다.

양국정부는 1992년 9월 30일 「무역협정」과 상호간 투자확대를 위한 「한·중 정부간 투자의 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을 확대·가속화하기 위하여 양국간 「한·중 정부간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 설립협정」을 체결하였다. 「한·중 무역협정」은 투자허가 및 전쟁시 손실보장 등에 대한 최혜국대우와 투자과실의 공정 환율에 의한 송금 보장, 투자관련 영업활동 및 수용 등에 대한 최혜국대우 및 내국인대우와 정부간 분쟁에 대한 해결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1994년 6월 6일 양국 정부는 호혜평등, 상호이익의 기초 위에서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공동관심의 산업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중 산업협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밖에도 한·중 양국은 북경에서 1996년 3월 15일 「양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1997년 11월 21일 「양국 정부간의 제3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을 서명하였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중시 금융분야 협력을 5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999년 8월 양국은 「한·중 무역구제분야 협력증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중 무역구제분야 협력증진에 관한 양해각서」는 한·중간의 무역확대로 인한 무역마찰 및 통상마찰 등 사후분쟁을 대화와 협의를 통한 사전 예방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 업계간 무역대화 채널구축지원, 수입급증 품목 조기경보체제 구축, 반덤핑 조사 사전 협의 강화 등을 골자로, 양국의 공동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¹⁹⁷⁾

2000년 10월 주룽지 중국총리는 방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양국 상호간 투자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의 설립을 합의하였고, 2002년 5월 이를 서울에 설치하였다. 한·중 양국은 양국간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2003년 11월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회의를 개최한 이래, 총 7차에 걸쳐 2007년 3월 27일 북경에서 제7차 협정 개정회의

197) “한국과의 주요이슈”, KOTRA. <<http://wepic.co.kr/home/nationTrend/printViewGenerall.jsp?GTSEQ>> (2010.2.25.방문)

에서 투자보장협정 개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양측 수석 대표간 가서명하여 「한·중 투자보장협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개정된 투자협정의 새로운 내용은 주로 중·한 양국간 상호투자의 확실한 보호, 투자의 확대, 투자대우, 자유송금 범위와 더불어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범위의 확대, 투명성 제고와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이행의무 부과금지, 양국의 투자활성화, 투자자유화 제고, 투자자보호 및 경제교류 증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¹⁹⁸⁾ 또한 자유송금 지연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투자자 분쟁 발생시 국제중재 제소 전 협의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호, 이행의무 부과금지 내용 중 기술이전과 지방정부에 대한 투자보장협정 적용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또한 기존 협정에서의 정의, 적용범위, 예외기간 단축 등에 있어 한국 투자자의 보호가 대폭 강화되었다.¹⁹⁹⁾ 또 이전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 관련 분쟁만 국제중재에 제소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 관련 분쟁은 모두 국제중재에 제소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한·중은 양국간의 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합의하고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팀을 구성하고, 한·중 투자보장협정의 개정을 합의하여, 이를 「한·중 공동성명」에 담았다.²⁰⁰⁾ 지금까지 이 「공동성명」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면서 '한·중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양국의 정치적 상호신뢰는 계속 깊어지고 있고 양국간 경제무역관계가 날로 긴밀해지고 있다.

2005년 양국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공동연구팀이 2003년 양국정상간 합의에 따라 완성한 「한·중 경제통상협력비전 공동연구보고서」²⁰¹⁾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동 보고서가 건의한 양자간 원활화를 위한 5개 조치는 향후 양국의 무역·투자 등 중장기 경제협력의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중 FTA 민간차원의 공동연구가 2005년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한·중 양측은 「한·중 투자보장협정」개정에 조속히 합의하며 이를 위한 「한·중 공동성명」

198) 통일뉴스, 2009.9.7. <<http://www.tongilnews.com>>

199)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3.28.

200) 2003년 「한·중 공동성명」.

201) 「한·중 경제통상협력비전 공동연구보고서」는 서언, 한·중 경제통상 협력 현황, 한·중 경제통상 협력의 발전전망, 한·중 중점 협력분야 및 정책방향, 결론 등 5장 내용으로 구성된다.

을 선언하였다.²⁰²⁾

한편, 2004년 2월 12일 한국의 금융감독위원회와 중국은행업무감독관리위원회는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서(MOU) 즉, 「한·중 은행 감독기구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중국과의 은행 상호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외점포에 대한 임점검사 협조, 감독정보 교환, 고위급 회의 개최 등 상호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체결되었다.²⁰³⁾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 이미 20억 달러 규모의 외환부족시 상호지원 목적의 원/위안 통화스왑조약(수혜국 요청 시 미달러화로 전환가능)을 체결하였고 2005년 5월 27일 4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계약도 체결하였다. 2006년 12월 제 14차 한·중 고위급 금융협력회의가 열렸다. 그 외에도 한국재정부와 중국 금융당국간 연례 금융 정책협의회가 개최되고 양국 보험감독기구간 업무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2008년 10월 24일에는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세쉬런(謝旭人) 중국 재무장관은 북경에서 한·중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국제금융위기에 공동대응을 위한 「한·중 재무장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고, 12월 12일에는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1,800억 위안/ 38조원 규모의 평상시용 원/위안 통화스왑협정²⁰⁴⁾을 신규로 체결하였다.²⁰⁵⁾ 이 통화스왑협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²⁰⁶⁾

한편, 2008년 5월 한·중 양국 정상은 「한·중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를 기초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2,000억불 무역액 달성 목표를 2010년 앞당기기 위하여 무역 및 투자, 품질 검사·검역, 무역구제조치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한·

202) 「한·중 공동성명」 2005.11.17.

20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국제협력과 보도자료, 2004.2.12 <<http://www.fsc.go.kr>와 www.fss.or.kr>.

204) 통화스왑협정이란 환율변동 또는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205) 통화스왑은 두 나라 중앙은행이 보유통화를 맞바꾸는 것으로 양국 통화를 맞교환하기도 하고, 자국 통화를 내준 뒤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달러·유로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번 통화스왑협정은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자국통화를 교환한다는 것이다.

206) 한국은행 보도자료, 「한국은행,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2008.12.12 <<http://www.bok.or.kr>>

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공동연구보고서」를 계속 보완, 수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경제무역 협의와 무역실무 협력체제를 진일보 강화하기로 하며 양자 FTA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 FTA 추진을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양측은 금융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성과를 환영하고, 향후에도 양국금융기관의 상호 금융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무역투자정보망의 운영 및 유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향후 5년간 전자정보, 통신기술,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앞으로 첨단기술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하였다.²⁰⁷⁾

2009년 10월 10일 상무부 부장 천덕명(陳德銘)과 한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은 북경에서 「한·중 경제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에 서명하였다. 이 보고서는 2005년 「한·중 경제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보고」를 조정하고 보충하며 서문, 한·중 경제협력 현황, 한·중 경제협력 발전 방향, 주요 협력 영역 및 정책건의와 결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한·중 FTA

가. 추진현황과 주요내용

2004년 9월 양국 통상장관들은 ASEAN+3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회의 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 개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부터 한·중 FTA에 대한 공동연구는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에 민간차원에서 시작되어 2006년 10월말 완료되었다. 동 연구에서는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영향, 한·중 FTA의 포함범위, 무역투자자유화의 산업별 영향, 민감 제품과 민감 영역의 처리방식 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²⁰⁸⁾ 양측의 연구결과는 모두 한·중 FTA의 체결이 양국에 대하여 호혜적이며 상생(win-win)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2006년 11월 17일 APEC 각료회의

207)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 2008.8.28. <<http://www.mofat.go.kr/state/areadiplomacy/asiapacific/index.jsp>>

208) 안세영, "Post 한·미 FTA 시대 한·중 FTA의 정치경제적 의의", 『한국의 대외 경제정책과 동아시아 공동체』, 2007, p. 188.

상의 한·중 통상장관회의에서 양국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하기로 하여 2008년 봄에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양국은 양국 통상장관회의에서 달성된 합의에 따라 2007년 1월 양국간 사전협의를 통해 3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²⁰⁹⁾ 제1차 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양국간 FTA에 대한 공동연구 운영세칙, 향후 작성할 산·관·학 연구보고서의 목차 및 체계 등을 확정하며, 아울러 양측의 FTA 추진경험을 토대로 FTA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정보교환도 이루어졌다.²¹⁰⁾

2007년 7월 한·중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연구에서 다루기로 한 상품, 서비스, 투자, 협력 등 4개 분야 중 상품분야에 대해 양국이 사전 교환한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였다. 양측은 한·중 FTA가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양국의 민감 분야(한국: 농림수산업, 중국: 제조업)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기술하기로 합의하고, 동 원칙에 따라 제조업 분야는 보고서 문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공동연구 방법론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작업을 갖고 필요시 실무진간 중간 검토회의를 거쳐 보고서 내용을 협의하기로 하였다.²¹¹⁾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가 2007년 10월 중국 웨이하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공동연구에서 다루기로 한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이슈(정부조달, 지적권 등) 등 4개 분야 중 상품(제조업,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해 양국이 사전 교환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총론과 서비스 분야 관련 전 문안에 합의하였고, 제조업과 투자 분야와 관련 대부분의 문안에 대해 합의하기로 하였다.²¹²⁾

한·중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는 2008년 2월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양측 대표단은 상품(제조업, 농림수산업) 및 기타 이슈에 대해 논의

209) 산·관·학 공동연구는 양국정부와 학계, 업계는 모두 참여하는 연구이다.

210)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3.26.

211) 외교통상부,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보도자료, 2007.7.5.

212) 외교통상부,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보도자료, 2007.10.27.

를 진행하여 제조업, 원산지, 통관, 지적권, 경쟁, 경제협력, SPS 8개 소분야의 문
안에 대해 합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총 7개 분야 18개 소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연구 보고서는 동 회의의 결로 3개 소 분야(농림수산업, 정부조달, 결론 및
권고)를 제외한 여타 15개 소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²¹³⁾

한·중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는 2008년 6월 북경에서
열렸다. 동 회의 시 양측 대표단은 최근 양국간 교역현황 평가 등을 토대로 산·
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중에서 농림수산업, 결론 및 권고 등 분야에 대해 논의
하였다. 동 회의기간중 한·중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는 공동연구에
대한 양측 업계 및 학계측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6월 12일과 13일에
양국간 비공식 오찬 협의²¹⁴⁾와 현지진출업계 및 유관기관에 대한 오찬간담회도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9년 10월 10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종훈 통상교섭본
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중 경제통상 협
력비전 보고서」에 서명하였고 한·중 FTA의 체결을 검토하기로 하였다.²¹⁵⁾

<표 3-9>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및 결과

차 례	일시와 장소	주요 성과
1차	2007.3.22-23 중국 북경	a. 공동연구 운영세칙, 향후 작성할 산관학 연구보고서의 목차 및 체계 등을 확정 하였고, b. 양측의 FTA 추진경험을 토대로 FTA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정보교환도 이루어진다.
2차	2007.7.3-4 한국 서울	a. 공동연구에서 다루기로 한 상품, 서비스, 투자, 협력 등 4개 분야 중 상품 분야 에 대해 양국이 사전 교환한 보고서초안을 검토하고, b. 한·중 FTA가 가져올 긍정적 측면과 함께 양국의 민간분야(한국: 농림수산업, 중국: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기술하기로 합의하며,

213) 외교통상부,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보도자료, 2008.2.21.

214) 양국 오찬 협의에서는 한·중FTA의 주요 산업별 효과에 대해, 현지 진출 업계와의 간담회에서는 한·
중FTA에 대한 현지 진출 업계의견,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한·중FTA 활용 가능성 및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외교통상부,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보도자료,
2008.6.14. 참조.

215) 인터넷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10/h2009101122370721500.htm>
>(2010.2.11.방문)

		c. 동 원칙에 따라 제조업 분야는 보고서 문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공동연구 방법론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작업을 갖고 필요시 실무진간 중간 검토회의를 거쳐 보고서 내용을 합의하기로 하였다.
3차	2007.10.24-25 중국 웨이하이	a. 공동연구에서 다루기로 한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이슈(정부조달, 지적권 등) 등 4개 분야 중 상품(제조업,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해 양국이 사전 교환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b. 양측은 총론과 서비스 분야 관련 전 문안에 합의하고, 제조업과 투자 분야 관련 대부분의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4차	2008.2.18-20 한국 제주	a. 상품(제조업, 농림수산업) 및 여타 이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제조업, 원산지, 통관, 지적권, 경쟁, 경제협력, SPS 8개 소 분야의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고, b. 공동연구 보고서는 총 7개 분야 18개 소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번 회의 결과 3개 소 분야(농림수산업, 정부조달, 결론 및 권고)를 제외한 여타 15개 소 분야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5차	2008.6.11-13 중국 북경	a. 양측 대표단은 최근 양국간 교역 현황 평가 등을 토대로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중 농림수산업, 결론 및 권고 등 분야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고, b. 한국은 농수산업 분야의 민감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상기 분야에 대한 보고서내용 등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c. 차기회의 개최시기 및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기로 양해하였다.

※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3.26.

외교통상부,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 3, 4, 5차 회의”, 보도자료.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는 5차례가 개최되었고, 정부는 향후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내 업계·학계 등 이해관계자들과도 계속 협의하는 등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면서 한·중 FTA 협상 추진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의 개최 시기 및 장소에 대한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한·중 FTA가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이에 대한 협상도 시작되지 않았다.

나. 한·중 FTA의 체결에 대한 양국의 태도

한·중 FTA에 대해서는 한국이 먼저 중국과 대화를 시작하였다. 2004년 11월 칠레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만나 한·중 FTA를 위한 민간공동 연구에 합의하면서부터 한·중 FTA는 양국 정상회의의 단골 의제가 되었다. 한·중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5차례로 열렸지만 양국 FTA에 대한 입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중국 측은 산·관·학 연구를 끝내고 최대한 빨리 본 협상을 시작하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최고지도자들도 공개적으로 한·중 FTA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곤 하였고,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대폭 양보할 뜻을 내비친 적도 있다.²¹⁶⁾ 구체적으로 중국은 양국 FTA의 체결이 양국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2008년 12월 13일 한·중 정상회의에서 한·중 FTA 협상을 조속히 착수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6일에는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중 FTA에 대한 질문에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양측이 서로 마주 보며 진행시켜 나가자(相向而行)”고 하였다.²¹⁷⁾ 그리고 시진핑 부주석은 “한·중 FTA는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라면서 “한·중 양국간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FTA에 대해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지만 의견차도 있다”며 “구동존이(求同存異:같은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은 남겨둔다) 정신을 발휘해 의견이 일치한 것부터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²¹⁸⁾

이에 비해 한국 측은 국내 농업의 피해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공산품의 범람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²¹⁹⁾ 중국 농산품 수입을 꺼리는 농민들의 우려와 불만을 감안해 소극적인 자세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로 한국은 5차례에 걸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FTA 협상의 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 농수산업의 민감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적

216) 조선일보 & Chosun.com, 2009.09.06.

217) “한중 FTA, 중국에게는 ‘정치전략적 FTA’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411110309&Section=05>(2009.12.4.방문)

218) 경향신문 & 경향닷컴 2009-12-13. <www.khan.co.kr>

219) 오승렬, “한중 FTA의 전략적 의미” <<http://webzine.ylc.or.kr/609>>(2010.2.11.방문)

절한 보호방안을 마련 하고,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관·학 공동연구 종료 후 국내 업계·학계 등 이해관계자들과도 계속 협의하는 등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한·중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외교통상부 기자 브리핑에서 한·중 FTA가 농수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해서 국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²²⁰⁾ 이는 결국 중국과의 FTA는 그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실제 정부간 협상에 돌입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하며 2010년 1분기 안에 연구 결과를 내놓기로 중국 쪽과 합의²²¹⁾하면서 한·중 FTA의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한·중 FTA를 통해 관세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²²²⁾ 기획재정부 윤중현 장관은 그간 교착상태였던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0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는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역내 교역·투자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²²³⁾ 그리고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한·중 FTA가 민감분야, 특히 농수산 분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2009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사공일 G20(주요 20개국) 기획조정위원장은 “한·중 FTA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였다.²²⁴⁾

한·중 FTA를 체결하지 못하거나 협상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양국의 다른 태도뿐만 아니라 장애요인도 있다. 이하에서 양국 FTA 체결의 장애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20) “한중 FTA, 농수산업 보호대책 뒤 추진”, YTN & Digital YTN, 2008.05.28.

221) 한겨레, 2009.12.18. <<http://www.hani.co.kr>>

222) The Naeil News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2010.1.28.방문).

223) 윤중현, “중동 등 신흥국과 경제협력 강화”, 2010.02.18. , 뉴스핌& Newspim.com

224) 조선일보 & Chosun.com. 2009.9.6.

다. 한·중 FTA 체결의 장애요인

공동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은 쌍방에 폐해보다는 이익이 더 많이 나타났다. 한·중 FTA의 체결 여부는 주로 양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5차례를 걸쳐지만 아직까지 양국 FTA 협상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양국 FTA 체결의 장애요인은 주로 중국의 농산물과 한국의 공산품이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양허조건을 놓고 양국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²²⁵⁾

중국은 농산물, 어업, 의류 등 분야에서, 한국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기계설비, 정밀기기 등 분야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한·중 양국은 FTA 체결의 민감한 분야에 대한 우려가 있다. 중국 측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철강, 석유화학공업,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설비, 정밀기기 등 중화학공업 제품과 선진 IT 제품이 중국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 측은 또한 대량의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철폐는 국내 농업부문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중 FTA 협상이 한국 농민과 농업단체의 시위를 유발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내의 각 정치세력은 한·중 FTA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²²⁶⁾ 구체적으로 한·중 FTA에 대해 한국정부는 최대한 늦추자는 전략이며 양국이 지리적으로 워낙 인접해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꺼리고, 중국산 저가 상품이 국내 시장에 밀려들 것을 더 걱정하고 있다.²²⁷⁾ 실제로 한·중 FTA를 체결한 후, 농산물을 포함한 전체 제품의 관세가 사라진다고 가정할 경우, 중국의 제조업 구조는 대부분 다국적인 기업형태여서 중국 제조업 생산품에 대단 한국 시장의 개방은 세계시장에 대한 완전개방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²²⁸⁾

225) 한겨레, 2009.12.18. <http://www.hani.co.kr>

226) “중국-싱가포르 FTA, 한중 FTA에 주는 시사점”, <<http://blog.naver.com/poem7777?Redirect=Log&logNo=60056490442>>(2010.3.1방문).

227) 조선일보 & Chosun.com, 2009.9.6.

228) “FTA국내대책위원회 한·중 FTA 교섭의 정체 원인은?”<blog.daum.net/korusfta/16895163>(2010.3.1.방문).

2009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3국 FTA가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면서, 한국은 한·중·일 FTA를 통한 경제 및 정치 실익은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간 FTA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완화시켜야만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중·일 FTA와 한·중 FTA의 득실을 비교하고 FTA를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하고 있다. 한·중 FTA 체결에 앞서 양국 모두 우려하는 분야가 있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FTA 체결은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세이다.

2) 한·일간 경제협력의 제도화

(1) 정부간 경제협력 제도화 현황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각 분야에서 긴밀한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한·일 양국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1965년 「한·일 경제협력 및 청구권 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이루어지게 되었다.²²⁹⁾ 하지만 양국관계의 뚜렷한 개선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국빈방문 때부터이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고, 오부치 게이조 일본수상과 회담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그 부속서인 「행동계획」을 통해 5개 분야 43개항에 달하는 최초의 포괄적인 양국협력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한·일 경제관계 개선의 가장 중요한 轉機는 바로 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발표와 그 보속문서인 「해동계획」의 마련에 있다. 당시 행동계획에서 제시한 5개 분야 중의 하나는 경제협력분야이다.

1999년 1월 ASEM 재무장관회의 시 한·일 재무장관이 만나 무역금융의 원활화 등을 위하여, 최대한 50억 달러까지 유동성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1999년 3월 한·일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한국의 경제곤란 극복 노력을

문)

229) “박정희시기 한일 경제협력”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jsessionid=2009.11.20.방문>>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협력은행에 의한 한국산업은행(KDB)에 대한 2-step Loan (Tied Loan) 1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밝혔고, 그 후 9월 2일에는 이에 대한용자계약을 조인하게 되었다.²³⁰⁾

1999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을 발표함으로써 1998년 10월 서명된 「새로운 한·일 이중관세방지협약」을 조기 발효시켰고, 양국간의 무역·투자·금융 등의 경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21세기의 한·일 경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 후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2001년 12월 양국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투자의 증진, 확대 및 자유화를 위하여 「한·일 투자협정」문안에 대해 기본합의를 하였다. 또한 「한·일 투자협정」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한·일 투자협정」은 전통적인 투자보장협정과 달리 투자자유화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허가 단계서부터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해외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통제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것이다.²³¹⁾ 그 내용은 투자 자유화와 관련된 규정,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 국가안보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제도적 협력의 틀은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일 등을 계기로 투자, 항공 등 경제 각 분야에 걸쳐 재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²³²⁾ 그 후 2004년 12월에는 「한·일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체결되었고, 2005년 4월에는 「한·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한일 양국간 통상협력으로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 2005년 5월 27일 30억 달러 규모의 원/엔 통화스왑도 체결하였다. 특히 2006년 2월 4일 일본 재무성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한·일 양국간 통화스왑 계약규모를 70억불(일본→한국)에서 150억불 규모(일본→한국: 100억불, 한국→일본: 50억불)로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2008년 12월 12일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 원/엔 통화스왑계약규모를 30억 달러 상당에서 200억 달러 상당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2009년 4월 30일까지 유

230)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외환위기 후의 일본의 대한지원(100억달러)”, 1999.3.20, <http://www.kr.emb-japan.go.jp/diplo/d_ecocrisis/r_eco_990320_01_4_03.htm>

231) 「한·일 투자협정」 제8조, 제9조.

232) “최근 한일 경제관계 현황”, 일본개요/ 종합뉴스, 2007.12.22 <<http://cafe.naver.com/innolife.333>>

효하였다.²³³⁾ 그리고 2009년 3월 30일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의 평상시용 원/엔 통화스왑계약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조치의 만료시기를 2009년 4월 30일에서 2009년 10월 30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 후 4월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와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의를 갖고 양국관계강화, 경제협력확대, 환경·에너지협력강화 등 주요의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정상간 서투외교를 활성화해 현안사항들을 수시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4월 21일 한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재계 총수 등이 참여하는 ‘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은 일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5개 항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²³⁴⁾

한·일 양국정상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의 발전방향, 경제분야에서 실질협력의 증진, 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2009년 4월 런던에서 양국 정상은 정상회의를 갖고 국제경제, 금융위기 대처, 한·일 관계 등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6월 28일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소 타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갖고, 양국 경제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²³⁵⁾ 그 후 9월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의를 갖고, 10월에는 한국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였다.

(2) 한·일 FTA

가. 추진현황과 내용

233) 한국은행 보도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과의 원/엔 통화스왑계약 규모 확대”, 2008.12.12<<http://www.bok.or.kr>>

234) joins 뉴스, 2008.4.21.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119082>

235) 외교통사부 동북아시아국 일본과, 2009.6.28. <<http://www.mofat.go.kr/state/areadiplomacy/asiapacific/index3.jsp?TabMenu=TabMenu3>>

한·일 통상장관은 1998년 10월 한·일 통상장관회의 시 양국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998년 12월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 무역진흥회(JETRO) 아시아 경제연구소(IDE)는 한·일 FTA의 경제적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21세기 한·일 경제관계 연구회」를 설립하였고 민간차원의 공동연구를 실행하고 2000년 5월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FTA 심포지엄에서 공동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2002년 3월 22일 양국정상은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설치를 합의하였고, 같은 해 7월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7차를 걸쳐 양국 FTA 공동연구회 최종 보고서 문안이 동경에서 합의되었으며 2003년 10월 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8차 회의에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그 후 2003년 10월 20일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 정상은 양국정부간 FTA 공식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²³⁶⁾ 한·일 FTA 협상은 2003년 12월 제1차 협상을 시작하였지만 농산물 개방 등 사유로 인해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된 후 아직까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렇지만 양국 경제 교류는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는 중단되어 있는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2006년 12월에 재개되어 협력채널은 유지되고 있다.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에서 후쿠다 야소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의를 가지고 이 회의에서 후쿠다 총리는 양국간 투자 활성화와 재교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만드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FTA 교섭재개 문제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²³⁷⁾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을 공식 방문하고 후쿠다 야스오 일본 내각 총리대신과 정상회의를 가졌다. 양국정상은 정상외교 활성화, 교류의 확대·강화, 경제분야 협력의 강화, 북한문제에 대한 협력,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강화 등 결의를 확인하였다. 경제분야 협력의 강화에서 양국정상은 한·일간 상호투자를 확대하여야 하고 양국 FTA/경제연계협정이 양국의 경제관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236) KIFA net. <http://www.kita.net/new_fta/user/FTA_status/Promotion/Kor_View.jsp?num=23>(2010.2.27. 방문)

237)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일본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2008.2.27.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동 협정의 체결교섭의 재개를 위한 검토 및 환경을 위한 실무협의를 6월 중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 후 양국 FTA 협상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제1차 실무협회는 2008년 6월 25일 동경에서 개최되었고, 2009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지만 한·일 FTA 협상은 아직까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한·일 FTA 협상의 장애요인

양국 FTA 협상은 6차 협상이 끝난 상태이지만 차기 협상일정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 FTA 협상중단의 가장 표면적인 장애요인은 경제적 측면이지만 실제로 야스쿠니 참배문제, 과거사, 독도문제, 교과서왜곡 등 정치적, 역사적 사유도 있다. 한·일 FTA 협상 교착상태의 사유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양국은 협상 의제별로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였지만 정부조달, 검사검역, 인력이동 등의 많은 분야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특히 상품양허안 교환 준비작업 과정에서 일본 측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둘러싼 입장의 변화로 교환 시기 및 영허안의 수준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면서, 양허안 관련 협의는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²³⁸⁾

둘째, 일본 측은 한국의 제조업 전 분야의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를 주장하면서 도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개방을 강조하고 제조업과 농업을 분리하여 시장개방 협상을 전개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 측은 일본에 대해 농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의 전면철폐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관세 양허안에 대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과거사, 독도문제, 해양경계확정, 교과서왜곡 등의 정치적, 역사적 문제는 양국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양국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현재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익적 돌출, 독도문제와 해양경계의 설정 등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는 일본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었고, 이러한 부분이 양국 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며 결국 한일 FTA의 체결에 대해서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

238) 이흥배, “한·일FTA 추진현황과 경제협력 가능성 고찰”, 『국회도서관보』 제42권 제8호, 2005, p. 29.

는 것이다. 한·일 FTA의 체결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양국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형성, 심지어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일 FTA의 체결은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간 정치적인 신뢰도 강화할 수 있고 환경, 기후변화, 원자력 등 다른 분야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정부는 호혜평등의 기초에 협상하고 FTA의 체결로 인해 한국의 일부 제조업과 일본의 농업분야 등 취약한 분야의 피해에 대해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도기 설정과 적절한 지원정책 등 조치를 취하고 취약한 분야의 상품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조속히 타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은 각자의 가장 취약한 상품에 대해 예외 또는 양허의 정책을 취하면서, 관세철폐 이행기간 설정 등과 같은 과도기 상품 품목과 시간표를 작성하고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또한 양국 FTA는 이미 6차례 협상을 거쳐 합의된 분야의 상품시장부터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진행해도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월 11일 일본 아소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한·일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FTA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부터는 가능한 것에서부터 실질적인 협력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한·일 양국 FTA 협상을 재개시키기 위해서는 양국정부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양국은 독도영유권문제, 해양경계획정 문제, 과거사 또는 교과서문제 등 정치적 문제나 역사문제를 제외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협력에 주력하여야 한다. 양국의 정치적인 문제는 국가간 관계와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향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중·일간 경제협력의 제도화

중·일 양국은 1972년 9월 29일 북경에서 「중·일 공동성명」을 서명하면서부터 평등호혜원칙에 의해 정부간 무역관계협상이 시작되었고, 1974년 1월에는 드디어 전문과 총10조로 구성되어 있는 「중·일 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6월 22

일부부터 발효하였다. 제1조에는 계약국이 수출상품의 모든 관세, 국내세금과 기타 비용 및 정수방법, 세관규칙, 절차 등에 서로 최혜국대우를 주고 다만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국제무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혜가 이웃국가에 적용되지 않다고 규정한다. 제2조와 제3조에는 일시 수출입의 상품과 중계상품에 대하여 세금면제에 서로 최혜국대우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는 계약국 쌍방간의 모든 지불은 계약국 각자의 관련 외국환관리법령, 규칙에 의해 인민폐, 엔화 또는 양국이 승인된 화폐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5조에는 계약국 쌍방간의 무역은 양자의 대외무역기구, 법인 또는 자연인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국제시장가격의 기초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제8조에는 기술교류, 상호개최 무역전시회, 중재 등 문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9조에는 계약 쌍방은 계약 쌍방정부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임무는 당해 협정의 집행상황과 양국간의 관련 무역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필요할 때 계약 쌍방정부에 적당한 건의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당해 협정의 이행과 발효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²³⁹⁾

「중·일 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1978년 중·일 양국 장기무역협의위원회는 양국정부 공동성명과 무역협정의 정신에 의해 호혜평등, 수출입균형에 기초한 양국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경제무역관계의 조성을 위하여 각국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에 우호협상을 통해 일본에 대한 중국의 원유와 석탄 수출, 중국에 대한 일본의 기술, 산업설비, 건설장비 수출의 장기적 무역에 관한 「중·일 장기무역협 의」²⁴⁰⁾를 체결하였다.²⁴¹⁾ 본 협의는 1978년부터 따로 1981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재체결되었다. 결국 「중·일 장기무역협 의」는 중·일 양국간의 석유, 석탄, 기계설비 등 같은 업종간 체결된 중장기적인 호혜협력협 의이자 중·일 경제무역협력의 중요한 협력형식인 것이다.²⁴²⁾

239) 蔡成喜, “中日官方貿易關係建立始末”, 『百年潮』 第5期, 2004, pp. 59-60.

240) 「중일 장기무역협 의」은 「중일 무역협정」과 달리, 정부간의 무역협정이 아니고 일반적 민간무역계약도 아닌 하나의 무역계약이며 정부와 민간 공동협력의 기초에 각국정부의 지지를 얻은 후에 체결되는 것이다.

241) “중국과 일본 장기적 무역협정”, <<http://lawyer.shippingchina.com/regulation/index/detail/id/407.html>> (2010.5.17.방문)

242) 石其實, “「中日長期貿易協議」的發展歷程”, 『現代日本經濟』 第5期(總第149期), 2006, pp. 30-31 참조.

1988년 8월 27일 중·일 양국정부는 투자관련 업무활동과 투자재산에 양호한 대우와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투자환경을 창출하고, 이로써 양국간의 경제와 기술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일정부간 격려와 상호투자보호에 관한 협정」, 즉 「중·일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중·일 투자보장협정」은 정문(15조), 의정서(9항)와 의사록(4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투자의 증진과 보호, 수용, 손해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적용, 송금,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투자분쟁의 해결 등이 있다.

동아시아의 최대경제체로 중국과 일본의 경제무역관계는 1972년 수교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긴밀화되어 지고 있다. 그렇지만 중·일 FTA는 현재까지 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양국간 경제협력도 제도화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2005년 1월 12일과 2월 3일 중국 주일본대사 王毅는 早稻田大學(와세다대학)과 ‘關西財界論壇’에 연설할 때 중·일 FTA의 설립과 가능성 연구의 전개를 제의하였다.²⁴³⁾ 2005년 5월 중국 국무원 부총리 吳儀는 일본방문 시 중·일 경제무역협력의 확대에 대한 건의에서 ‘중·일 FTA 시작과정’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8일 王毅는 日本社會經濟生産性本部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중·일 FTA 민간연구의 전개를 호소하고 양국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⁴⁴⁾

일본 관방장관 細田博之(호소다 히로유키)는 중·일 FTA에 대한 적극적인 중국의 태도에 대하여 중국과 FTA를 협상하는 것이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⁴⁵⁾ 2005년 4월 24일 일본 내각총리 재무대신 겸 외상 川口順子(카와구치 요리코)는 博螯亞洲論壇에서 일본이 많은 국가와 FTA를 협상하고 있으며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²⁴⁶⁾ 일본수상 安倍晉三(아베 신조) 중국방문(2006년 10월) 이후, 11월 1일 미국의 언론기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내 시선 범위 내에 있으며 중·일 전면적인 경제협력동반

243) 新華社, “吳儀副總理在日本東海中貿易中心成立50周年紀念會上的演講”, 『人民日報』, 2005.5.19.

244) 劉昌黎, “日本FTA/EPA的新發展與中日FTA難以啓動的對策”, 『世界經濟研究』 第10期, 2007, p. 73.

245) “官房長官の中日FTAに對する議論”, 『毎日新聞』(マイニチ シンブンシャ), 2005.5.19.

246) 外務省, “川口順子在博螯亞洲論壇的演說”, 2005.4.25; 劉昌黎, 前揭論文, p. 73 참조.

자관계의 구축을 전략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명하였다.²⁴⁷⁾

그렇지만 2002년 『일본 FTA 전략』에서부터 2005년 『향후 경제협력의 추진에 관한 협정의 기본방침』과 2006년 4월 『경제세계화전략』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본정부는 지역경제협력과 관련된 전략 의사일정에 중·일 FTA를 중장기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정부는 그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중·일 FTA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의하였지만 일본 측은 이에 대해 회피하거나 또는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FTA는 실질적인 진전을 얻지 못하고 있고 아직 학술연구의 단계에 처해있으며 민간차원의 공동연구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이다. 중·일 양국의 FTA를 체결하는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FTA의 전략이 다르다. 일본이 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일본은 비교적 광범한 경제협력협정인 EPA를 중시하고 투자규칙, 금융자본, 시장제도, 지적재산권, 분쟁해결메커니즘, 기준과 인증 등과 같이 비교적 우위가 높은 분야에서 협상을 시작하나 농산물 등 취약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협상을 피하거나 유보하는 경향이다.²⁴⁸⁾ 중국은 FTA를 체결할 때 주로 FTA에 관한 WTO 규칙에 의해 자국의 실정을 결합함으로써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착안점으로 하여 상품무역의 자유화에서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²⁴⁹⁾

둘째, 농산물의 시장접근문제이다. 일본에 대하여 농산물 시장개방은 EPA 또는 FTA 협상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분야이다. 실제로 한·일 FTA 협상은 일본의 농산물 개방문제로 인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중국은 농산물수출에 우위에 있고 제조업 부문이 일본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에서 오는 손해를 농산물 부문을 통해 만회하기 위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²⁵⁰⁾

셋째, 일본이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문제이다. 일본정부는 외형적으로 볼 때

247) 莫菲特, “安倍晋三: 中日關係密不可分”, 『華尔街日報』, 2006.11.2; 王凱, 倪建軍, “中日自由貿易區: 動議, 收益與障礙”, 『現代國際關係』 第4期, 2007, p. 45.

248) 王凱, “中日FTA的政治經濟學分析”, 『亞太縱橫』, 2007, p. 10 참조.

249) 徐梅, 趙江林, “中日兩國FTA戰略的比較分析”, 『日本學刊』 第6期, 2006, p. 63 참조.

250) 장동식 외, “동아시아 FTA 형성경로 탐색에 관한 일고-한중일 3국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연구』 제20권 제3호, 2008, p. 84 참조.

중·일 관계를 중시하지만 중국을 정치적으로 차원에서 우호적인 국가로 여기지 않는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일본은 중국과 경제무역관계를 발전시키고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경제의 고속 발전이 마냥 반가운 것은 아니다. 즉, 중국의 고속발전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은 아세안 제국, 한국, 호주, 인도 등과의 EP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다.²⁵¹⁾ 이것은 일본정부의 중·일 FTA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4) 한·중·일 경제협력의 제도화 추진현황

(1) 한·중·일 경제협력 제도화 현황

한·중·일 3국 정부간 협력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차례 열린 ASEAN+3 협력체제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ASEAN+3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는 한·중·일 3국간의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견실한 기초가 되었다. 지금까지 한·중·일 3국 FTA의 추진 논의 및 각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과 같은 3국간 주요 경제협력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되고 합의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들이다. 2007년 기준으로 동북아 3국간의 협력으로는 3국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경제장관회의, 외교장관회의, 고위급회의(SOM), 국장급회의 등 장관급 회의, 각 협력분야의 실무자급 협의체 등 총44개의 정부간 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다.²⁵²⁾

2008년 12월 13일 한·중·일 3국 정상들은 3국 현안 및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최초의 별도 제1차 정상회의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등이 채택되었으며 경제분야에서는 3국 FTA에 대한 공동연구, 3국

251) 張永志, “中日建立FTA/EPA面臨的障礙”, 『經濟論壇』, 2007, p. 9 참조.

252) 최원기, “신정부의 한·중·일 3국 경제협력 과제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8, p. 3참조.

투자협정 체결추진,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액션 아젠다’, 3국 에너지 협력추진, 지역 금융안정 및 금융협력의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국 협력의 사이버사무국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이를 공식 사무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²⁵³⁾

2009년 10월 10일 중국에서 열린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한·중·일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 「한·중·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또한 경제적 상호보완성 및 3국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즈니스, 무역, 재정, 투자, 물류, 지적재산권, 관세, 정보, 과학기술, 에너지 보전, 환경보호 및 순환경제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며, 공정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무역 및 투자 체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중·일 협력 사이버 사무국’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회의일정 조정 등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교역·투자확대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 제1차 회의를 공동 개최하였다.²⁵⁴⁾ 또한 한·중·일 3국 단체는 3국의 경제통상협력 및 발전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2010년 제3차 3국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에서 제2차 한·중·일 비즈니스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2월 1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 고위급회의에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후정웨이(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사사에 켄이치로(佐々江 賢一郎)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관한 상설사무국을 한국 서울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²⁵⁵⁾

2010 5월 29-30일간 한국 제주도에서 열린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각서」, 「3국 협력 비전 2020」, 「표준협력

25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후쿠오카 한·중·일 정상회담 의의와 경제협력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2008, p. 1.

254) 외교통상부,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 2009.10.12.

255)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10.2.1.<<http://www.mofat.go.kr/press/pressinformation/index.jsp>>

공동성명」,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 등을 채택하였다. 특히 3국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 사무국을 2011년부터 한국에 설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 중국 국제무역촉진 위원회는 제2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을 갖고 한·중·일 FTA 체결 및 금융부문 협력 강화, 무역 투자 저해요인 개선, 환경 에너지 부문 표준화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세 나라 경제인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범시킨 CMI 다자화 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²⁵⁶⁾

그밖에도 한·중·일 3국은 건전한 투자환경의 조성, 투자의 촉진, 활성화, 원활화와 보호 등을 위한 3국 투자협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이 제안한 한·중·일 투자협정 modality에 관한 비공식 공동연구는 2003년 10월에 개시되었고 2005년 5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한·중·일 투자협정을 위한 정부간 회의’가 열렸다. 2007년 3월 제1차 한·중·일 투자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되었고, 그 후 9차례 개최되었다. 그리고 2009년 10월 10일에는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3국 투자협정을 먼저 2010년도에 성사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10년 4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10차 협상에서는 한·중·일 3국간 투자여건 개선, 투자확대 및 투자기업의 보호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²⁵⁷⁾

2010년 5월 23일 제7차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3국 통상장관은 2010년 내에 가능한 조속히 3국간 투자협정 협상의 타결을 위해 수개월내에 실질적인 합의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²⁵⁸⁾

그 동안 한·중·일 3국간의 경제적 제도적 협력은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많은

256) 한국경제, 2010.5.31, A2.

257) 외교통상부, “제10차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 개최”, 지역통상국 동아시아통상과 보도자료, 2010.4.9.

258) 외교통상부, “제7차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개최 결과”, 지역통상국 동아시아통상과 보도자료, 2010.5.23, 「제7차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공동언론 발표문」.

성과를 얻고 있다. 한·중·일 3국간 제도적 경제협력은 주로 3국 FTA에 대한 추진이다. 한·중·일 FTA에 대한 산·학 민간차원의 공동연구를 종료되었고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가 2010년 5월 6-7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국가간 FTA의 체결은 각국 경제협력의 주요 방법이 되고 많은 국가들은 FTA를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특히 동북아 3국이 주도하거나 포함된 FTA의 체결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중·일 FTA를 연구하기 전에 우선 한·중·일 3국의 FTA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표 3-10>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

국가	발효된 FTA	서명, 타결된 FTA	협상중인 FTA	협상준비, 검토중인 FTA
한국	한·칠레 FTA(2004.4) 한·싱가포르 FTA (2006.3.2) 한·EFTA(2006.9.1) 한·ASEAN(2010.1.1) 한·인도 CEPA (2010.1.1)	한-EU FTA (2009.9.7-9가서명, 2010.4 공식서명예정) 한-미 FTA (2007.6.30 공식서명, 2009.4.22비준동의안 국 회 상임위)통과	한-GCC FTA 한-뉴질랜드FTA 한-멕시코 FTA 한-캐나다 FTA 한-콜롬비아FTA 한-페루 FTA 한-호주 FTA	한-MERCOSURTA 한-SACU FTA 한-러시아 BEPA 한-이스라엘 FTA 한-일 FTA 한-중 FTA 한-터키 FTA 한·중·일 FTA
중국	Mainland/HongKongCE PA(2003.6.29) Mainland/Macao CEPA(2003.10.17) 중-ASEAN(분쟁해 결메커니즘2005.1.1 상품분야2005.7.20; 서비스분야2007.7.1; 투자분야 2010.2.15) 중-파키스탄 FTA (2006.11.24) 중-칠레 FTA (2006.10.1)	GCC(2004.7 타결)	중-호주FTA (2010.3.1 제14차협상) 중-아이슬란드 FTA(2008.9.18 제1차 협상) 중-노르웨이 FTA (2009.12.18 제6차 협 상) 중-코스타리카FTA (2010.2.12 협상 완료)	중-한 FTA 중-인도 FTA

	중-뉴질랜드 FTA (2008.10.1) 중-싱가포르 FTA (2009.1.1) 중-페루 FTA(2010.3.1)			
일본	일-베트남 EPA(2009.8) 일-ASEAN EPA (2009.12.1) 일-페루 EPA(2009.11) 일-스위스 FTA(2009.7) 일-필리핀 EPA (2008.11) 일-브루나이 EPA (2008.7) 일-태국 EPA(2007.10) 일-칠레 EPA (2007.9) 일-인도네시아EPA (2007.8) 일-말레이시아EPA (2006.7) 일-멕시코 EPA(2005.3) 일-싱가포르 EPA (2002.11)	--	일-호주 EPA(제10차 협상2009.11) 일-인도 EPA(제12차 협상2009.10.1) 일-GCC FTA(제2차 협상 2007.1)	일본-EU FTA 일본-뉴질랜드 FTA 일-대만 FTA 일-몽골 일-미국 FTA 일-캐나다 FTA 일-한국 FTA 일중한 FTA

※ 한국무역협회(KITA) FTA 포털 FTA 추진현황<http://www.kita.net/new_fta/user/FTA_status/Promotion/Kor_List.jsp>;
中國自由貿易區服務網(2010.3.9) <http://www.kita.net/newgov.cn/fta_yanjiu.shtml>;
外務省(2010.3.9)<<http://www.mofa.go.jp/policy/economy/fta/index.html>>.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에서 3국이 FTA를 체결하는 전략목표가 다르게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FTA 전략을 추구하는 목표로서 전략이익²⁵⁹⁾ 및 정

259) 일본 FTA의 전략이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하나는 일본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있는 중요한 지위를 유지하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 동서방간의 유대로 역할을 강화하고 아시아지역에 유일한 선진국가의 우세를 발휘하며 국제적으로 영향을 확대하는 것이다. 楊義瑞, “日本對中日韓自由貿易區的立場淺析”, 『世界經濟與政治』 第5期, 2004, pp. 71-74.

치·안전이익의 추구가 경제이익의 추구보다 우선하여 나타난다. 일본이 아세안 제국 및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의 시장을 선점하고 동아시아 통상정책의 주도권을 강화하며, 아세안과 FTA를 우선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표가 일정부분 존재한다.²⁶⁰⁾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FTA를 체결하는 국가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며 경제적, 정치·안전적 요소보다 전략자원과 에너지의 공급경로를 고려하고 국내사회경제발전의 장기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은 FTA를 체결할 때 미국, EFTA, EU 등과 같은 선진국과의 협상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3국의 FTA에 대한 이러한 선택 차이는 그들의 다른 목적을 반영한다. 한국은 선진국가와 FTA를 체결하면 주로 선진기술과 무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술수준을 높이고 한국기업의 능률을 향상시켜 경제적인 이익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비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일본은 FTA보다 EPA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경제관계의 강화에 의해 정치적인 안정성, 통치능력 등 정치·외교적 효과를 중시하며 역내 주도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비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중국은 주변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에너지와 자원안전을 중요한 목표로 취급한다. 하지만 일본은 농업과 어업에 비교적 낮은 시장진입을 취하고 제조업에 높은 시장진입을 허가하는 경향이 있다.²⁶¹⁾ 여기에 비해 한국은 농업에 민감하고 투자,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FTA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중·일 3국이 FTA를 체결하는 목적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통합이 국가간 경제협력의 중요한 추세가 되는 상황 하에서 현재 3국 FTA의 추진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다. 이하에서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과 내용

260) 張彥, “中日韓自由貿易區戰略的比較研究”, 『經濟研究導刊』 第13期, 2009, p. 76.

261) Kim, Dong-Hoon & Kim, Bong-chul,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of China, Korea and Japan”, 『외법논집』 제28집, 2007, p. 468.

1999년 제3차 ASEAN+3 정상회의를 통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국 측이 제의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계기로 한·중·일 FTA 구상은 중국 주룽지 총리가 200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6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한·중·일 3국은 3국간 무역의 원활화와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3국 FTA를 계속 추진해온다.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 계기로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 측이 제안한 3국간 FTA 타당성 조사가 합의되었다. 3국 정상들은 2003년 10월 7일 발리에서 ASEAN+3 정상회의 계기 열린 5차 3국 정상회의에서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였고 3국 FTA에 대하여 한국(KIEP), 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일본(NIRA)으로 구성된 연구기관간 민간차원에서의 공동연구를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일 3국간 연구기관은 2003년부터 3국 FTA에 대해 매년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작성한 연구결과를 3자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2006년부터는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등 업계 대표들도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3국 정부관계자가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2009년에 10월 10일 북경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3국 FTA 민간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중·일 FTA 민간차원에서의 공동연구는 주로 3국간 FTA의 거시경제적 영향, 산업별영향, 3국간 원산지 규정 및 민감 분야 분석, 3국간 FTA의 전망, 추진방향(문제점과 기대효과), 세계경제위기가 3국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무역원활화 효과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²⁶²⁾

2010년 5월 6-7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중·일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가 열렸다. 동 회의에서 한·중·일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들은 2009년 10월 10일 중국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 시 이루어진 정상간 합의를 재확인하면서,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2009 태국 후아헌)

262) 외교통상부, 「(ASEAN+3 정상회의를 통한)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결과」, 동북아시아국 동북아시아 지역협력과 보도자료, 2007.11.22 참조.

공동선언에 따라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운영세칙(TOR, Terms of Reference)을 채택하였다.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이 운영세칙에 따라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한·중·일 FTA의 실현가능성과 FTA 체결시 포함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게 된다.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2012년에 종료하게 된다. 그리고 제1차 회의결과는 5월말에 개최된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를 거쳐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되며, 제2차 회의는 일본(9월), 제3차 회의는 중국(11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²⁶³⁾

한·중·일 FTA를 위한 공동연구 운영세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3국 FTA의 전략적 의의와 경제적 이익을 확인하고, 기존에 3국이 개별적으로 추구해온 FTA에 대한 포괄범위를 고려하면서,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는 3국간의 포괄적인 FTA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통해 3국간 경제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 공동연구는 향후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한 체결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협상의 실질적인 참조가 되도록 관련 이슈에 대한 3국간의 공통이해를 모색하기 위하는 것이다.

둘째, 공동연구위원회는 산·관·학의 참가자로 구성되고, 공동연구위원회 수석대표는 각국 고위급 공무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업계와 학계의 참가자는 매회의 회의 주제를 감안하여 각국 정부가 선정한다.

셋째는 작업범위이다. 한·중·일 FTA 공동연구위원회는 최근 3국간 무역 및 경제 관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상품·투자·서비스의 현존 장벽철폐 또는 완화와 이에 따른 각 분야별 영향, 공통규범을 통한 경제관계 증진 방안, 그리고 분야별 협력을 포함한 협력 강화방안, 관세, 비관세조치, 무역규제,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SPS), 상호인정(MRA)을 포함한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TBT), 자연인의 이동, 자격인정,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투명성 및 분쟁해결절차 등을 연구하게 된다. 그리고 향후 3국 FTA가 추진될 경우, 각국이 직면할 수 있는 도전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점검한다.

263) 외교통상부,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FTA정책국 FTA정책기획과 보도자료, 2010.5.6.

넷째, 보고절차이다.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위원회는 연구의 진전 상황을 3국의 연례 통상장관회의를 거쳐 3국 정상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그리고 연구종료 후 최종보고서를 3국 통상장관회의의 검토를 거쳐 3국 정상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²⁶⁴⁾

과거 FTA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과 주로 추진되며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를 제거하거나 철폐, 상품무역 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FTA는 지역적인 위치에 구애받지 않은 추세이며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 다양한 경제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목표로 한다.²⁶⁵⁾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FTA라는 용어도 비록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한·중·일 FTA는 기존의 상품무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제거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의 원활화 및 활성화, 지적재산권의 보호, 정부조달, 기준과 인증의 인가, 분쟁해결, 협력개발, 경쟁정책, 통관의 규범화 및 원활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3) 한·중·일 FTA 체결의 장애요인

한·중·일 FTA는 3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국간 경제협력은 그 동안 많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왔으며, 3국만의 단독 정상회의가 이미 세 차례 열린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제2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3국간 FTA 조속한 체결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에서 3국간 FTA 체결을 목적으로 산·관·학 공동연구를 위한 준비 모임이 열리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한·중·일 3국 정상들이 3국 FTA의 추진 및 조속한 체결에 합의를 하였지만 3국간 FTA가 아직까지도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중·일 3국간의 복잡한 과거사문제, 영토·영해 문제로 인한 정치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

264) 주263) 보도자료 첨부 「한·중·일 FTA를 위한 공동연구 운영세칙」 참조.

265) 정상화, 전개논문, p. 27.

고, 3국간 경제수준의 격차 등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한·중·일 FTA 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로 한국과 일본의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문제로 하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비록 과거사, 영토·영해 등의 문제에 있어 정치적인 갈등은 존재하지만 3국 FTA의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경제적인 장애요인이 3국 FTA의 체결에 대한 진정한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경제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이 취약 산업부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민감한 산업은 주로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이며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주로 농업, 수산업이다. 한국과 일본정부는 농민들의 농업시장개방에 대한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한·중·일 FTA의 체결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농산물 시장이 중국에게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 때문에 한·중·일 FTA의 타결이 어려운 것이다.

제4절 한·중·일 정부간 경제협력의 제도화 장애요인 및 과제

1. 한·중·일 3국 정부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동질성이 존재하고 경제구조의 보완성이 높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은 이러한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제약요소로 인해 EU, NAFTA, ASEAN, APEC보다 상대적으로 뒤에 차지하고 있고 FTA도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구축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3국간 협력의 제약요소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러한 제약요소의 제거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존하는 정부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제적 장애이다. 3국은 경제선진국가인 일본, 신흥공업화국가인 한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인 중국으로 구성되고 있고, 이로 인한 3국간의 경제발전수준, 산업구조, 경제이익 등 부분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3국간 협력의 강화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FTA 체결에서 한·일 2국의 농수산물 개방에 대한 우려가 최대의 장애요인이다. 즉, 농업분야의 비전, 불충분한 보상대책이 FTA 체결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공업영역, 특히 자본과 기술집약형 산업에 대한 개방문제가 있고 금융부문의 취약성으로 인한 우려 등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체결된 FTA 사례를 살펴보면 경제발전수준의 차이가 큰 국가들간 FTA를 체결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EFTA와 NAFTA의 경우이다. 특히 NAFTA의 회원국은 발달국가인 미국, 캐나다와 개발도상국인 멕시코로 구성되고 그들 간에 경제격차가 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NAFTA는 매우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제약요인은 한·중·일 3국 FTA의 체결을 방해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없다.

향후 3국은 공동이익의 실현을 기초로 상호이익과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상호보완성을 이용하면서 합리적인 이익의 접점을 찾고, 상품관세를 단계별 철폐와 취약한 분야에 국가보상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점차 경제적인 장애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

둘째, 정치적인 장애이다. 정치적인 상호신뢰는 국가간 경제협력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문제는 중·일간의 조어도 분쟁과 동중국해에서의 해양 영토분쟁 및 해저자원분쟁이 있다. 또한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문제와 배타적인 경제수역 경계획정 분쟁이 있다. 그리고 한·중 배타적인 경제수역문제, 대륙붕 경계획정문제 등 영토·영해 주권문제, 역사왜곡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등의 문제가 있다. 그 밖에도 3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한국과 북한의 민족통일문제, 중국 대륙과 대만과의 통일문제가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분쟁문제는 3국 관계발전과 정치적인 상호신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항상 주권귀속문제, 국교정상화문제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해결되기 어렵다.²⁶⁶⁾ 그리고 한·일은 미국과 따로 안전보장협정에 서명한 가운데 게다가

266) 何志工, 安小平, 『東北亞區域合作通向東亞共同體之路』, 時事出版社, 2008, p. 231.

일본은 한반도와 중국 대만을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방위협력 범위에 넣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중·일 관계발전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북아 정치, 안전영역에의 상호신뢰를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한·중·일 3국간의 정치적인 제약요인은 EU통합과정의 프랑스·독일간의 갈등에 비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전쟁의 갈등 등을 EU의 가입을 통해 해결하였다. 양국은 서로 이해하고 상호타협(give and take) 원칙을 유지하였다. 독일은 가장 부유한 국가로서 전제조건 없이 EEC에 경제적인 지원을 행하였고 프랑스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EEC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즉, EEC의 형성은 독일이 프랑스의 주도권을 재정적으로 지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²⁶⁷⁾

한·중·일 3국은 상호이해, 선린우호, 상호신뢰의 기초에 똑바로 역사를 직시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상호존중과 호혜평등, 공동이익, 개방성 그리고 투명성을 3국 협력의 근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3국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점차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3국간 FTA 또는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할 것이다.

셋째, 제도적인 협력시스템의 결여이다. 제도적인 협력조직은 없으면 각자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고, 국제사무에 대한 상호의존과 상호지지, 지역적 경제블록의 차별무역정책에 대한 대처와 자체의 시장점유율의 유지, 그리고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어려울 수 있다.²⁶⁸⁾ 한·중·일 3국간의 협력도 기능적인 협력 단계에 머물러 있고 FTA 또는 경제공동체에 대한 연구도 아직도 연구·토론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중·일 3국간에는 지금까지 제도적인 협력이나 어떠한 서면협약이 없었다. EU와 NAFTA의 추진단계처럼 협력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무역마찰의 가능성도 계속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국 정상회의를 통하여 제도적 기초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 FTA의 체결 및 경제공동체로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267) John Fairhurst, *Law of the European Union*, 6th ed. (Pearson Education, 2007), p. 249.

268) 楊旻, 滕召學, “東北亞區域經濟合作應進一步加強”, 『清華大學學報』 第1期 第20卷, 2005. p. 59.

넷째, 미국의 요소이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세계 제1대의 경제대국, 무역대국과 자본대국이자 한·중·일 3국 상품의 수출시장이다. 이러한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대해 거대한 경제이익과 안전전략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중·일 3국 FTA의 체결과 경제공동체의 설립 등에 주목하고, 3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안전적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 핵문제, 한반도 통일문제와 대만문제 등 3국 가장 중요한 정치·안전문제 모두는 미국과 관련된다.²⁶⁹⁾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일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구조 하에서 미국에 앞서 중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만약에 미국이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구축 혹은 3국 FTA의 체결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 이것은 일본과 한국의 태도에 큰 영향을 주고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구축 혹은 3국 FTA의 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구축에 앞서 3국 FTA의 체결이 미국과 관계와 이익에 주는 영향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3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 경제협력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했다. 그리고 2010년 5월 한국에서 열린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상시적인 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을 내년부터 한국 서울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상설사무국의 설치는 한·중·일 3국이 아세안과 같은 제도화된 동북아 역내 기구로 발전하기 위한 첫 단계이며 3국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 심지어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3국 경제협력의 심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하에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2. 한·중·일 3국 정부간 경제협력의 추진과제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는 하나의 단일시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은 다른 수준의 경제공동체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FTA 정책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심화되어 가

269) 陸建人, “論東北亞經濟共同體”, 『當代亞太』 第6期, 2005, p. 51 참조.

고 있으며 FTA의 체결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역내 무역의존도가 아주 높은 동북아는 지금까지 FTA가 없는 유일한 공백지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동북아 국가들은 동북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통합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유럽과 북미,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함께 동북아도 ‘열린 지역주의’의 자세로 이 지역에서 경제공동체를 건설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남·북한, 일본, 러시아와 몽골을 모두 포함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조직 또는 경제공동체를 수립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우선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경제협력을 제도화하고, 경제협력기구와 관련 제도를 만들며, 3국간 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의 원활화, 그리고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3국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중장기 실천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 한·중·일 FTA 또는 3국 경제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3국간 상설협력기구, 즉 상설사무국을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은 내년부터 서울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최대한 빠르게 정례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3국 상설사무국의 설치에 동북아 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3국의 협력을 제도화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한·중·일 FTA의 체결,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형성 혹은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국 상설사무국을 조속히 설치·운영해야 한다.

둘째,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3국간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실현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3국간 경제협력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한·중·일 경제협력의 제도화는 우선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과 3국 FTA의 체결이다.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3국간에 투자의 확대, 투자자보장, 투자의 원활화와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한·중·일 투자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한·중·일 투자협정은 10차 협상을 걸쳐 올해 체결하기

로 합의되었으므로 한·중·일 FTA보다 우선 한·중·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3국의 실제상황에 따라 단시간에 우선 한·중·일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3국 FTA를 체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셋째,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융·통화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금융협력에 3국간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앞으로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화스왑규모의 확대, 동북아 개발은행의 건설 등의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방안을 제의하기로 한다.



제4장 한·중·일 경제공동체 모델 구축방안

제1절 한·중·일 경제협력 제도화의 단계별 발전경로

1. 한·중·일 상품무역협정의 추진

1) 한·중·일 상품무역협정의 제기

한·중·일 3국은 양자간 무역협정을 모두 체결하였으므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처럼 3국간 상품무역협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 회원국간 체결된 특혜무역 협정이다. 1976년의 「방콕협정」이 2006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개정되어 발효되었다.²⁷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회원국은 모두 개발도상국이며 경제수준격차가 존재하지만 한·중·일 3국 경제격차처럼 크지 않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경제수준격차가 크고 3국간 민감 부문도 존재하기 때문에 3국 상품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중-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처럼 조기수확계획을 취할 수 있다.

한·중·일 FTA 상품무역협정은 WTO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규정에 따라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무역자유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은 경제발전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취약산업부문이 있으며 이러한 취약산업부문이 3국 FTA를 체결하는 걸림돌과 주요장애이다. 3국 FTA 상품협정 체결시 민감한 부문이 존재한다. 일본의 민감한 부문은 대부분이 농산물 또는 농업 관련 산업의 제품이다. 쌀, 보리, 밀 등 곡물과 곡물 제품, 생활 용품, 쇠고기, 견과류, 곤약 고구마 등 야채, 설탕과 설탕제품, 과일과 과일 제품, 일부 물고기는 일본이 체결하는 EPA에 일반적으로 민감한 품목이다. 한국에 민감한 부문의 구조는 일

270)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03268>>(2010.4.19).

본과 비슷하다. 한국의 민감 품목은 주로 고기, 야채, 과일, 곡류, 생선, 냉동생선 등 농수산물이다. 중국의 민감한 품목은 석유화학 제품과 철강, 기계 등 대부분의 제조품목이 중국의 취약부문이다.²⁷¹⁾ 한·중·일 FTA에 관한 공동연구의 보고서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의 분석에 의해 한·중·일 FTA 체결시 민감 품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예상될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표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4-1> 한·중·일 FTA의 상품무역협정 체결시의 민감품목²⁷²⁾

민감 분야	한·중·일 FTA의 상품무역협정
농업	·가장 민감품목: 쌀, ·고민감품목: 고추, 쇠고기, 인삼, 마늘, 낙농품, 감귤, 사과, 포도 및 배 등 ·민감품목: 천연꿀, 복숭아, 양파, 단감, 돼지고기, 닭고기, 엽연초, 콩, 참깨, 감자, 땅콩 등
제조업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및 석유화학 등

※ KIEP, “한·중·일 FTA의 필요성 및 대비책 제시”, 보도자료, 2006.3.7.
이창재,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KIEP, 2005, pp.101-102.

2) 한·중·일 상품무역협정의 체결방안

한·중·일 3국은 경제적으로 강한 보완성이 있지만 민감한 부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 관세인하에 대하여 합의하기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중·아세안 FTA의 상품무역협정을 참고함으로써 합의될 부문의 상품에 대해 조기수확계획을 실시하고 민감한 부문은 단계별로 개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하에서 우선 상품을 분류하고 표로 표시하며 그 다음에 한·중·일 FTA의 체결을

271) 中國國務院發展研究中心 (DRC), 日本總合研究開發機構 (NIRA)와 韓國對外經濟政策研究院 (KIEP), 2006年日中韓共同研究「日中韓自由貿易協定に關する共同報告書及び政策提言」, 2006.12.11, pp. 9-10참조.

272) KIEP 보도자료, “한·중·일 FTA의 필요성 및 대비책 제시”, 2006.3.7; 이창재,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p. 101-102.

위하여 방안을 제의하고자 한다.

<표 4-2> 한·중·일 FTA 상품의 분류



한·중·일 FTA 상품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해서 실시 가능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합의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무역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한·중·일 3국이 합의될 분야에서부터 조기수확계획을 실시하고 조기수확계획의 관세인하양식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조기수확계획에 속하는 상품의 현존 관세율은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0'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기수확계획의 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세인하 양식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분류하며 시간표를 작성하고 규정한 시한내에 시간표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기수확계획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세인하 양식을 규정하고 세부화하며 구체적인 시간표를 작성하고 관세를 삭감하거나 철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기수확계획이외의 상품을 일반적인 상품과 민감상품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인 상품과 민감 상품에 대하여 따로 세분화하며 다른 관세인하양식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상품은 민감 상품을 제외하는 모든 상품이므로 대다수가 일반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품은 세율의 수준에 따라 분류되고 다른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관세인하양식을 규정하고 상세한 시간표도 작성하며 규정하는 시한내에 세율을 '0'로 내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중·일 FTA의 대다수 상품은 '0'관세를 실시하고 비관세장벽을 점차적

으로 철폐하며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감한 상품은 각국이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호를 실시하는 상품이므로 그 세율은 최종적으로 '0'이 될 수 없지만 세목의 수량과 수입금액의 제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감한 상품은 민감한 정도에 따라 일반적인 민감 상품과 고민감 상품으로 나누어진다. 일반 민감 상품이 일정기간 내 관세를 상대적 낮은 수준으로 내릴 수 있고 고민감 상품이 최종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세율을 보유할 수 있다. 일반 민감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인하양식을 규정하고 중장기 관세인하계획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작성하며 시간표에 따라 단계별로 관세를 인하하고 최종적으로 상대적 낮은 수준의 관세를 실시한다. 고민감상품은 EFTA의 경험을 참고하고 예외로 하거나 관세양허안을 체결함으로써 상응하는 관세인하양식도 규정하여야 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보유할 수 있다.

셋째, 한·일 양국의 민감한 부문은 거의 농수산물이며 한·중·일 FTA 상품 무역협정 체결시 EFTA처럼 당연히 농업분야를 모두 제외하는 것이 아니다. 한·중·일 3국은 경제발전수준의 격차가 크고 상호보완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두가 민감한 부문을 가지고 있다. 3국이 상호이해와 상호이익, win-win 원칙 등을 기초하여 WTO의 규정에 따라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조기수확계획의 상품을 자유화시키고 농업 분야의 무역장벽의 부분적인 감소 (절반)와 기타 산업 분야의 무역자유화²⁷³⁾를 통해 3국 FTA의 대다수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다.

2. 한·중·일 투자협정의 추진

현재 한·중 및 한·일 FTA의 조기 체결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바, 그 대안으로서는 한·중·일 투자협정을 우선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한·중·일 3국 투자협정은 지금까지 10차례 협상을 거쳤지만 체결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한·중·일 3국은 경제발전수준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투자의 자유화와 시장개방에서 중국이 한·일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73) 安藤光代, “東アジアにおける自由貿易協定(FTA)の經濟効果”, 『RIETI Research Digest』 No. 50, 2009, p. 29.

이하에서 한·중 투자보장협정, 한·일 투자보장협정, 한-아세안 투자협정, 중-아세안 투자협정의 틀과 내용을 연구·분석함으로써 현존의 3국 투자협정협상을 기초로 한·중·일 투자협정의 내용과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4-3> 개정된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한·일 투자보장협정의 주요내용

협정문주 요조항	개정된 한·중 투자보장협정 (2007)	한·일 투자보장협정 (2002)
용어의 정의	· 투자, 투자자, 자연인, 법인 수의 · 그 외 ICSID Convention, ICSID (본부), ICSID 협약, UNCITRAL 등 규정(1조)	투자, 투자자, UNCITRAL, ICSID 협약 본부 등 규정(1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 2조에서 명문화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	· 10조 1항에서 명문화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
투자의 대우	· NT의 적용범위 명확화 · NT에 대한 예외를 최소화하여 규정 하되, 중국 측이 향후 점진적으로 감 축 및 사후 더욱 제한적으로 개정할 수 없도 록 단서 조항 포함(3조)	· NT와 MFN의 적용범위 명문화 · NT, MFN을 투자의 대우 조항에서 분리, 독립 조문화 · NT와 MFN에 대한 예외조치(4조)
수용	· 간접 수용의 요건 - 적법절차(due process), 수용원칙, 보상 대우 (4조)	· 수용의 종류 · 적법수용의 요건(10조 3항) - 공동목적, 비차별적인 방법, 신속 · 적절·유효한 보상, 적법절차
보상	· 수용에 대한 보상조치(4조) · 손해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조치(5조)	· 수용에 대한 보상조치(10조 4항) · 기금상황에 대한 보상(11조) · 송금보상 (12조)
송금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도록 보장, 예외 사 유를 명확화(6조)	· 송금보장 - 송금보장원칙 일반 - 송금보장 - 송금보장원칙의 예외 (12조)
분쟁해결	· 계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절차(8조) · 투자자와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간의 분 쟁해결(9조)	·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14조) ·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15조)
투명성	투명성의 범위와 투명성 조항의 예외 (1조)	· 투명성 조항의 필요성 (7조 1항) · 투명성의 범위 (7조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성 조항의 예외 (7조 3항) 지적재산권의 정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한·일 투자협정상 지적재산권조항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 (6조)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10조)	
이행의무부과금지	·2조에서 규정	·9조에서 규정
지방정부에 협정 적용	·10조 4항에서 규정	·22조 1항에서 규정

※ 한·중 투자보장협상 개정 협상 결과(※ '92년 협정과 비교)와 「한·일 투자보장협정」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표 4-4> 한·아세안 투자협정과 중·아세안 투자협정의 구성과 주요내용

협정문조항	중-아세안 투자협정(2009)	한-아세안 투자협정(2009)
용어의 정의	투자, 자유사용가능통화, AEM, GATS, 지적재산권,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수여한 상업특허경영권, 당사국의 법인, 당사국의 투자자, 조치, 수익, MOFCOM(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등	아세안 회원국, 적용대상투자, 분쟁당사자, 분쟁당사국, 기본협정, 자유사용가능통화, GATS, 이행위원회, 투자, 당사국의 투자자, 당사국의 법인, 수익 등
목적	중국과 아세안간 투자이동의 촉진, 자유롭고 원활하며 투명하고 경쟁적인 투자체제의 창설	한국과 아세안간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지닌 자유롭고 원활하며 투명하고 경쟁적인 투자제도를 창설하고, 당사국들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보호를 제공한다.
적용범위	3조에서 규정	2조에서 규정
투자의 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민대우(4조) 최혜국대우(5조) 투자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와 안전(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민대우(3조) 최혜국대우(4조) 투자의 일반적 대우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5조)

		· 신규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16조)
비합치 조치	NT, MFN에 대한 적용 예외조항(6조)	
수용	공공목적, 적용 가능한 국내법(법률질차포함), 비차별적 방식 실시,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불할 것(8조)	공동목적을 위한 것, 적법철차에 다를 것, 비차별을 기초로 할 것, 그리고 신속하고 충분하며 유효한 보상을 이지불할 것(12조 1항)
보상	· 제8조 1, 2, 3, 5항의 규정에 지불할 보상 · 손실에 대한 보상(9조)	· 신속하고 충분하며 유효한 보상을 지불할 것의 목적상 보상(12조 2, 3, 4, 5항) · 손실에 대한 보상(13조)
송금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자유롭고 지체없이 송금 허용 (10조)	·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자유롭고 지체없이 송금 허용(10조) ·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11조)
분쟁해결	· 계약당사국간 분쟁해결 - 「중-아세안 FTA 분쟁해결 제도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해결(13조) · 당사국과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간 분쟁해결 - ICSID 협약 또는 ICSID의 추가절차규칙에 의해 (국제중재)에 제소가능,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 규칙에 의해 중재에 제소	· 당사국간 분쟁 해결(19조) -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의해 해결 · 당사국과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 ICSID 협약 또는 ICSID의 추가절차규칙에 의해 국제중재에 제소가능,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의해 중재에 제소(18조)
투명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법·규정·정책 및 행정지침, 새로운 법 또는 기존의 법·규정·정책 또는 행정지침의 모든 변경을 신속히 공표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등 (19조)	국제협정, 당사국의 법·규정·행정심판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결정, 새로운 법 또는 기존의 법·규정 또는 행정지침의 모든 변경을 신속히 공표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8조)
예외조항	· 일반적 예외(16조) · 안보상 예외(17조)	· 일반적 예외(20조) · 안전상 예외(21조)
유보	6조에서 규정	9조에서 규정

※ 「중·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

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1) 한·중·일 투자협정의 modality의 주요내용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특히 「한·중·일 3국 투자협정 modality에 관한 비공식 공동연구」 개시를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4년 3월-9월 4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연구를 실시하며 9월 「한·중·일 3국 투자협정 modality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이 비공식 공동연구를 종료시켰다. 한·중·일 투자협정에 대해서는 2005년 5월-2006년 12월 6차례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고 2007년부터 10차 공식협상을 거쳤다. 「한·중·일 투자협정 공동연구 보고서」는 투자환경개선 요망 5개 영역에 대하여 법/규정의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호, 분쟁해결 mechanism(각종 claim 센터 설치 등), 투자 관련 서비스 증진, 국가/지자체간 정책 및 집행의 일관성 등 필요한 조치를 열거하고 있다.²⁷⁴⁾

<표 4-5> 한·중·일 3 투자협정 modality의 주요내용

구성부분	한·중·일 투자협정 modality의 주요내용
투자환경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과 법규의 투명성 · 지적재산권 보호 · 분쟁해결메커니즘 · 투자 관련 서비스 증진 · 국가/지자체간 정책 및 집행의 일관성
투자규칙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 · 업적요구제한, · 분쟁해결, · 내국민대우, · 최혜국대우, · 허가전 내국민대우 및 지적재산권보호.
결론	3국 투자의 법률 틀에 대한 제의

274) 외교통상부 동아시아통상과, 「제8차 한·중·일 비즈니스 환경개선 협의체 회의 개요」, 보도자료, 2008.7.30.

※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의 가능한 modality에 관한 보고서」를 참조하여 제작성함.
 <<http://gjs.mof.com.gov.cn/column/print.shtml?/af/ak/200412/20041200323627>>

2)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의 추진방안

한·중·일 3국간에 한·중 투자협정, 한·일 투자협정, 중·일 투자협정은 모두 개별적으로 이미 체결되었다. 한·중·일 3국간에 투자시 3국은 정보제공, 심사·비준제도, 투자환경 등 측면을 많이 개선하였지만 투자의 제한조치, 기술수출의 제한, 정부정책의 투명성, 과실송금상의 제한완화 등의 문제가 많이 있다.

투자 원활화와 자유화의 촉진, 투자자보호의 강화, 상호 투자유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3국간 투자협정 협상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제의하고자 한다. 우선 3국 정부는 3국간의 상호신뢰와 경제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상호투자의 3국의 경제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긍정함으로써 3국 투자협정의 체결 교섭을 가속화할 수 있다. 둘째, 3국간 투자 장애가 아직 존재하고 있지만 투자자유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과 관련된 정보제공, 투자 심사·비준 절차의 간소화, 법률규정 투명성의 강화 등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쟁해결절차와 송금자유보장 등의 제도를 더욱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

3) 3국 투자협정 틀의 구축

한·중·일 3국은 높은 투자활성화를 목표로 3국간 투자협정 협상이 10차례를 거쳤다. 2008년 12월 13일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중·일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통해 투자협정 체결교섭 가속화에 합의한 바 있다. 2009년 10월 10일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FTA 추진은 민간에서 정치적인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3국 투자협정을 먼저 내년 초에 체결시키는 게 경제협력 향상과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할 것이다”라고 말하

였다. 한·중·일 투자협정은 3국간 경제협력 제도화의 첫 걸음이며 3국 FTA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3국 FTA의 협상 및 체결에 적극적으로 촉진시키고 있다.

제4차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에서 한국 측은 한·일 양국의 투자시장개방수준에 근접한 중국 투자시장에 자유화 요소를 반영하는 데 주력하였고,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보호와 정부경제정책 변경에 대한 한국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중국 측에 투명성 강화 및 기득권 보호문제를 제기하였다. 아울러 한·중·일 3국간 투자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개선과 관련해 3국간 균형 있는 담긴 행동계획(Action Agenda)을 도출하기 위하여 내·외국기업 차별철폐 등 중국 측 제도개선내용을 동 Agenda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⁷⁵⁾ 일본 측은 중국에 대하여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일본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측은 한·일 양국과 경제발전수준에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양국과 같은 투자시장개방수준을 실행하기 힘들고 3국간 경제발전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중국의 투자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의 가능한 modality에 관한 보고서」에 따라 한·중 투자보장협정, 한·일 투자보장협정, 한-아세안 투자협정, 중-아세안 투자협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표<4-6>과 같은 한·중·일 투자협정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4-6> 한·중·일 투자협정 틀의 구축

구성조항	한·중·일 투자협정 틀의 주요 내용
목적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및 투자 활성화 및 추진, 단계적 투자 자유화, 규제완화 및 투명성의 제고
용어의 정의	투자, 투자자, UNCITRAL 중재규칙, 법인, 수익, 영역 등
투자의 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T를 투자의 대우 조항에서 분리, 독립 조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T의 적용범위, NT 원칙, NT의 예외조치 등 · MFN를 투자의 대우 조항에서 분리, 독립 조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FN 원칙, MFN의 적용범위, MFN의 예외조치 등 · 일반적 대우

275) 외교통상부-정부·지역외교·아시아태평양과, '제4차 한·중·일 투자협정회의개최', 보도자료, 2008.3.11.

	<p>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 및 안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동결(SS) 원칙, 점진적 원화(RB) 원칙의 적용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동결(SS) 원칙과 점진적 원화(RB) 원칙의 개념 - 예외조치의 채택과 유지 - 현행동결과 점진적 원화 원칙 - 예외조치의 채택·유보시 상대방에 통보 및 협의의무 · 현행동결(SS) 원칙, 점진적 원화(RB) 원칙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동결(SS) 원칙, 점진적 원화(RB) 원칙의 적용범위 - 점진적 원화(RB)의 단계
예외조항	
송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금조장원칙 일반 · 한·중·일 투자협정상 송금보상 · 송금보장원칙의 예외 ...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의 종류 · 간접수용의 정의 · 적법한 수용의 요건(공동목적, 비차별적인 방법, 신속·적절·유효한 보상, 적법절차)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목적에 위하여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법절차에 의해 신속·적절·유효한 보상 · 손실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력충돌, 적대행위·혁명·반란·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긴급 상황으로 인한 손실 보상 등
투자분쟁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분쟁해결 · 투자국과 투자유치국간의 분쟁해결
검토 및 미래 자유화	<p>협정 이행의 검토, 유보와 합치하게 양어한 잔여 제한의 감축 또는 제거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유화의 심화...</p>
투명성	<p>자국의 법률, 규칙, 행정절차 및 사법결정 또는 현존 법률, 규칙, 행정절차 및 사법결정의 변경 또는 새로운 규정을 신속히 공표하거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게 해야 할 의무 규정하여 투자 관련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p>
지적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정, 특히 WTO의 TRIPS, WIPO 규정사의 권리, 의무를 침해하지 안 된다.

3국간 경제발전수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3국이 같은 투자시장개방수준을 실

행하기 힘들다. 특히 중국은 한·일 양국의 투자시장개방수준에 근접한 투자시장이 현재 불가능하다. 한·일은 중국에 법제도 정비 및 그 운용, 투명성 확보, 사업인가제도의 개선, 외자유제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요망하지만 실제적으로 중국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위의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중국은 투자에 관한 국내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한·일 양국기업의 장벽과 규제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완화하여 투명성과 투자자유화의 수준을 가능하게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히 한·일 양국이 중국의 이익을 적당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이 상호이익과 실무적인 원칙에 의해 투자 추진과 확대, 투자 활성화와 단계적인 투자 자유화, 투자규제의 점차적인 완화, 그리고 투명성의 지속적인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3국간 투자의 장벽과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최종적으로 투자의 장벽과 규제를 완전하게 철폐함으로써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은 투자여건 개선, 투자확대 및 투자기업 보호·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돈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한·중·일 FTA의 모델

한·중·일 FTA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EFTA와 NAFTA 등과 같은 FTA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EFTA는 모두 선진국으로 구성되지만,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농업보조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EFTA 조약이나 EFTA가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 우선 비농산물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개별 회원국과 별도의 양자간 농업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는 독특한 농산물 양허방식을 취한다고 할 것이며, EFTA는 원산지 판정²⁷⁶⁾도 포함한다. EFTA의 농산물 양허방식과 원산지 규정은 한·중·일 FTA의 체결에 대해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276) 원산지의 판정은 상품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기준이고 특혜원산지 규정이라고 한다. 최수정, "EFTA, 시장확대를 위한 융통성 발휘: 주요국의 수산부문 FTA 전략과 시사점", 『해양수산』 통권 236호, 2004, p. 33 참조.

NAFTA는 먼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FTA로 개도국 이익을 적당하게 고려하며 상호이익원칙의 기초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감소하고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이다. 둘째, NAFTA는 단순한 무역자유화를 위한 전통적인 자유무역지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그리고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폭 넓은 통합이익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좀 더 조직화된 자유무역지역이다.²⁷⁷⁾ 셋째, NAFTA는 여타 경제공동체와는 달리 무역(관세)뿐만 아니라 동시에 투자자유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NAFTA의 분쟁해결제도는 다른 분쟁해결메커니즘과 다르다. 투자, 금융, 반덤핑과 상계관세, 노동 그리고 환경 등 특별한 문제에 대한 별도의 분쟁해결제도가 있다. 넷째, NAFTA는 업계의 관례, 서비스무역, 투자규칙과 분쟁해결 등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근거한 법률체도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²⁷⁸⁾ NAFTA의 성공적인 법률제도는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구축뿐만 아니라 세계범위 내의 지역경제협력에 대해 법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고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

2003-2009년 한·중·일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기구는 역내의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한 역내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3국 경제융합을 추진하며, 3국의 공동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가 열렸으며 2012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가 종료되면 3국 FTA 정부간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한·중·일 FTA 체결의 법적 기초

FTA의 체결국이 모두 WTO 회원국일 경우, WTO 협정의 관련규정에 의해 FTA를 체결하여야 한다. 한·중·일 3국은 모두 WTO의 회원국이므로 한·중

277) Dearden, R.G. "Trade disputes and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 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Western Hemisphere Trade Intergration: a Candian Latin American Dialogue*, (Basingstoke: Macmillan, 1997); 한국개발연구원,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개발공동체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1, p. 50.

278) 沈四寶, 王秉乾, "北美自由貿易區的經驗及對中國啓示", 『法學雜誌』第6期, 2005, pp. 104-105.

· 일 FTA를 체결할 때는 GATT 제24조 및 그 해석에 관한 양해, GATS 제5조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FTA 참여에 관한 권능부여조항 및 GATS 제5조의 특별규정을 지켜야 한다. GATT 제24조 규정에 의해 FTA는 WTO 특정 작업그룹에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그룹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한·중·일 FTA의 설립 목표와 내용

한·중·일 FTA 체결하려면 NAFTA처럼 분명한 목표와 내용이 있어야 한다. 한·중·일 FTA의 설립목표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제거를 통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며, 투자의 원활화와 점진적인 자유화를 촉진하고, 3국간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경쟁규칙을 형성, 지적재산권의 보호,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고 한편 FTA의 이행과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일 FTA의 구체적 내용은 서문, 총칙, 각칙, 분쟁해결 그리고 조직기구의 설립 및 기타 조항 등으로 구성된다. 그 적용범위는 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그리고 투자분야 등이 있다.

3) 한·중·일 FTA의 조직기관

NAFTA, EFTA를 살펴보면 FTA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지역경제공동체는 협상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설립·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공동체의 한 유형으로서 한·중·일 FTA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 목표의 실현, 분쟁해결 등의 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공동체는 정책결정기구, 집행기구, 행정기구와 분쟁해결기구가 있다. 3국간 FTA의 조직기구 및 기능범위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자유무역위원회이다. 자유무역위원회는 한·중·일 FTA의 정책결정기구로서 각국의 통상장관급 상설대표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매년 1회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다. 기능은 주로 3국 FTA 발전의 중대한 문

제를 논의하고 중요 정책과 발전 전략을 결정한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규칙과 절차를 제정하며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작업그룹 및 기타 부속기구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무국이다. 사무국은 사무국 총장을 설치하여 행정과 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3국간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FTA의 이행을 감독하고 자유무역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작업그룹 및 기타 부속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작업그룹과 전문위원회 및 기타 부속기구는 사무국의 업무를 보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분쟁해결기구이다. FTA의 합리적, 효과적 분쟁해결메커니즘은 FTA의 효과적 이행여부를 결정짓는 법률적 보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통합 수준이 높은 경제공동체를 제외하고, 많은 FTA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지역경제공동체의 성공은 주로 완벽한 분쟁해결메커니즘에 달려 있다. 분쟁해결메커니즘을 설립하고 법률을 통해 역내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지역경제공동체를 설립하는 과정에 불가결한 부분이다. 또한 역내 국가간 갈등을 줄이고 역내 안정을 촉진하며 각국의 경제이익을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는 전문적인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공동체의 구체적인 내부기구는 명칭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권력기구 또는 정책결정기구, 집행기구와 행정기구가 있다. 권력기구는 조직의 설립조약에 의해 설립되고 최고권력기구이자 정책결정기구이며 그 기능은 주로 정책의 제정, 예산의 심사, 관련 규칙의 제정과 수정 등이다. 집행기구는 지역경제공동체가 권력기구 하에서 설립되고 일반적으로 이사회, 위원회 또는 집행이사회라고 불린다. 그 기능은 권력기구 결정의 집행, 건의, 계획 및 작업방안의 제의와 실시 등이다. 행정기구는 일반적으로 사무국이라고 일컫고 조직의 일상 행정사무기구이다. 그 기능은 주로 각 상설기구간의 조화, 각종 일상적인 업무의 처리, 회원국과의 관계, 결의의 집행, 조직의 대외활동을 대표하는 기구, 조직조약의 보관, 문서의 제작과 발포 등이다. 실제로 국제경제조직 운영메커니즘의 핵심이다.²⁷⁹⁾

279) 田家谷, 『國際經濟組織法』, 中國法制出版社, 2000.5, pp. 32-34 참조.

4. 한·중·일 금융통화협력방안의 모색과 제도화

지역경제통합의 성공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가 무역·투자의 협력을 시작하고 조만간 어느 정도의 금융협력으로 확대되어 왔다. 당연히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도 예외가 아니다. 지역경제통합의 발전과 심화에 따라 국가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분야도 진행되고 있다. 금융은 현대경제의 핵심이며 금융협력은 지역경제협력에 지역개발자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도 있다. Dieter & Higgott가 처음으로 제기한 금융지역주의(monetary regionalism)²⁸⁰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선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 지역주의는 지역유동성기금(regional liquidity fund), 지역통화제도(regional monetary system), 경제통화동맹(economic & monetary union), 정치적 동맹(political union)의 단계로 나누어진다.²⁸¹ 본 논문에서는 국가 정부간 금융통화협력의 제도화를 금융지역주의라 부른다. 한·중·일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금융통화협력의 제도화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협정²⁸²이다. 한·중·일 3국 기존의 금융협력을 살펴보면 Dieter & Higgott의 금융지역주의의 초기 단계인 지역유동성기금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양자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지만 3국간 금융통화협력을 제도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1997년 금융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불안정이 상승됨에 따라 지역 금융통화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중·일 3국이 동북아, 심지어 아시아의 금융안정과 각자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3국간 금융통화협력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역내 경제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해서는 3국간 또는 동북아 지역내 선진화된 금융제도와 금융기구가 필요하고 역내개발재

280) 금융적 지역주의는 일국의 독자적 통화발행의 권한을 제한하고 역내 공동통화의 창출하는 형태이며 국가간의 무역연계와는 별도로 역내에서의 통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는 목표로 진행되는 지역주의로 궁극적으로는 회원국의 경제적 주권이나 독립성 같은 핵심요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되어 있다. H. Dieter & R. Higgott, "Exploring alternative theories of economic regionalism: From trade to finance in Asian co-oper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0(3), 2003, pp. 430-454; 장동식 외,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의 제도화에 관한 일고찰", p. 301 재인용.

281) 장동식 외, 상계논문 참조.

282) CMI 다자화 협정은 양자통화스왑메커니즘을 기초로 형성되고 아세안+3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 통화스왑메커니즘이며 단일협정 속에서의 공동정책결정메커니즘을 통해 신속하고 일치한 행동을 취하여 통화스왑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원을 위한 한·중·일 개발은행 또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는 “급격한 외국 자본 유출입에 따른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다자간 통화스왑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²⁸³⁾ 따라서 한·중·일 3국은 CMI 다자화의 기초에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와 외화유동성 보완, 금융위기 극복·예방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3국 금융통화협력의 기초 위에서 3국간 개발은행과 외환보유고의 설립, 동북아 협력기금의 설립 등에 대한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중·일 3국은 양자 통화스왑을 3국간 통화스왑으로 전환하고, 외환보유고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3국간 금융협력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3국 외환보유고의 설립은 3국 경제금융통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CMI 다자화 협정의 체약국이며 3국내에서 양자통화스왑협정(한중, 한일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금융협력의 기초에 금융위기의 예방·대응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외환보유고 공동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외환보유고 공동관리위원회는 각국의 외환보유고의 규모 및 분담금 배분, 출자구조, 차입한도, 의사결정메커니즘, 경제감시 메커니즘 등을 합의하고 리스크의 가능성 있는 통화와 금융위기에 대하여 외환용통의 안전보장체계 또는 안전네트워크, 역내 위기관리체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위기구호 메커니즘을 설립하여야 한다. 외환보유고 공동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역내 금융위기의 예측 및 재발방지, 대처능력의 제고에 유리하고, 3국간 자금순환이 어려울 경우 3국이 외환보유고를 통해 상호 각자 국가의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순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금융위기 시 국제통화기금(IMF)은 역내 국가에 구제자금을 제공할 수 있지만 부가된 구조개혁요건과 내핍정책(austerity policy)이 역내 국가의 위기를 모면하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외환보유고 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국제통화기금(IMF)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 내 경제와 금융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동북아 역내국가의 금융자원을 조정할 수 있다.

둘째, 3국간 환율협력을 강화하고 환율안정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위

283) 한국경제, 2010.5.31, A4.

기로 인해 엔-달러, 원화-인민폐(위안) 환율변동이 아주 크기 때문에 동북아 역내 통화의 환율이 불안정하다. 그러므로 한·중·일 3국이 광범위한 국가간 금융 통화협력을 통해 금융시장의 위험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환율조정메커니즘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한·중·일 3국간 환율이 크게 변동할 때 3국간 통화의 환율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국 중앙은행간의 환전을 통해 환율변동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장치 또는 변동환율제를 도입하고 외환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로서는 한·중·일 3국이 현존의 3국 금융협력의 기초에 금융협력메커니즘과 통화스왑네트워크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3국간 직접적인 환율스왑메커니즘도 필요하다.

한국의 일부학자는 한·중·일 3국을 포함하여 동북아 국가통화의 통합이 미래 아시아금융협력의 가장 중요한 의제의 하나이며 3국 금융협력이 환율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무역교역, 실물교역, 금융교역이 빈번한 지역에는 환율안정이 실물교역을 유지하는 필요한 조건이다. 한·중·일 3국간의 환율은 미달러 환율과 비해 변동 폭이 아주 크다. 3국이 미달러의 단일환율변동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유럽화를 통일하기 전에 환율조치를 취하고 공동의 통화변동을 변동제도를 도입하며 동북아 독자적인 통화변화의 변동환율체계를 설립하는 것을 제의하였다.²⁸⁴⁾ 따라서 역내 국가간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환율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경제감시기구 및 금융감독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이 3국간 금융통화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추진 전략을 고려하여야 하고 3국간 거시적 경제운영, 금융관리 및 산업의 구조개혁 등에서 정책담당자간의 정보교환이나 정책협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 통화금융의 확대와 금융통화시장안정의 유지를 위해서는 역내 경제감시기구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이 3국간 최근 경제 및 금융 동향을 점검하고 역내 금융감독 및 감시, 거시건진성, 금융안정 등의 금융감독기구를 구축하여야 하며 금융위기데이터와 정보의 공유메커니즘, 공동응대의 예측·경보메커니즘도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역내 경제의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

284) 盧錚, “韓學者倡議中日韓金融合作可從匯率入手”, 『中國証券報』, 2007.5.31.<<http://forex.money.hexun.com/2254399.shtml>>

발전의 요구에 따라 역내 개발재원을 위한 공동조달 메커니즘, 3국간 발전기금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동북아 개발은행(NEADB)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중국 텐진서 열리는 ‘제17차 동북아 경제포럼’과 ‘동북아 금융협력센터’에서 한국 대표는 IMF 등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경제위기타개책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협력을 한·중·일 동북아 3국간 금융협력체제 확립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2009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동북아 경제포럼에서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동북아 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과 최근의 논의 상황, 앞으로의 발전계획 등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였다.²⁸⁵⁾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3국 금융통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동북아 역내의 국가중앙은행으로 구성하는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개발은행은 기타 다자발전은행의 성공적인 모델(예를 들어 아시아 개발은행 관리와 자금운용의 성공적인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동북아 역내 국가 중앙은행은 동북아 개발은행 자금 주식자본의 유일한 인수자와 소유자이다. 동북아 개발은행이 한·중·일 3국의 국가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3국의 출자금액이 유럽중앙은행과 같이 3국 각국의 GDP의 비율과 3국의 총인구수에 따라 계산되거나 지난 3월 24일 발효된 CMI 다자협정과 같이 한·중·일 3국간 GDP, 외환보유액 등 경제지표 외에도 역내금융협력에 있어서의 공동노력의 필요성 등 정치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동북아 개발은행의 원입자본금(original capitals)이 형성된 후 이를 기초로 자본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개발은행의 자금은 한·중·일 3국이 대상이어야 하고 프로젝트차관(project loan), 공동융자(joint financing) 그리고 주주권 투자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동북아 지역개발의 기초, 장기성, 특수성 등 요소를 고려하면 동북아 개발은행은 더욱 많이 주주권 투자를 취하여야 하고 ‘BOT’²⁸⁶⁾의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여야 한다.²⁸⁷⁾

285) 뉴시스, 2008.10.27; 뉴시스, 2009.8.25, <<http://news.naver.com/main/read>>

286) BOT는 Build-Own·Operate-Transfer의 약자이며 도로·항만·교량 등의 인프라를 건조한 시공사가 일정기간 이를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발주처에 넘겨주는 수주방식이다. 건설(Build)하여 소유권을 취득한(Own) 후 국가에 귀속시키는 즉 기부채납하는 방식(Transfer)을 말한다.

한·중·일 개발은행은 각국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설립되는 것이며 금융위기의 해소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아시아전체지역으로 확대하여 아시아통화기금 (AMF)²⁸⁸⁾이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우선 한·중·일 개발은행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전문가들은 “한·중·일 개발은행의 설치·운영이 우선 3국 이익과 일치한 정책결정기구와 시장규율에 부합하는 경영관리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⁸⁹⁾ EU의 기타 기구인 투자은행, 중앙은행 및 중앙은행체제를 살펴보면 EU의 주요기구가 아니지만 EU의 발전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투자은행이 장기대출은행이자 유럽지역개발은행이자 빈곤 지역의 개발프로젝트, 공동시장내부 기업의 현대화, 신기술개발 등 프로젝트에 출자원조와 대출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중·일 개발은행은 공동시장의 투자은행과 장기대출은행으로 외환위기의 대응, 자금대출 등 공동시장의 발전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한·중·일 경제공동체 모델—공동시장 모델

1. 한·중·일 경제공동체 모델의 구상

1) EU의 한·중·일 경제공동체 모델구축에 대한 시사점

한·중·일 경제공동체모델을 구축하기 전에 우선 EU의 3국 경제공동체 모델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U는 지역경제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다. 제2장 제2절에서 EU의 분석을 통해 한·중·일 공동시장 구축

287) 龐德良, 張建政, “中日韓金融合作与東北亞區域經濟發展”, 『東北亞論壇』 第4期, 2002, pp. 22-26.

288) 아시아통화기금은 1997년 9월 열린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처음으로 AMF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외환위기와 같은 긴급유동성의 필요 시 지원을 위해 동아시아에 일정금액의 자금을 비축하자는 것이었다. 그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했고 일본이 적어도 절반을 부담한다는 제안이었다. 김완수·김기수, “금융위기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과제와 전망: 정치경제적 조명”, 『한·일 지도자 Forum』, 세종연구소, 2000, pp. 347-348 참조.

289) 趙傳君, 『東北經濟振興與東北亞經貿合作』,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p. 196.

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 초기목표의 확립이다. EU는 초기목표가 관세동맹이며 사후적으로 경제공동체였다. 한·중·일 공동시장은 EU와 달리 현재의 여건을 기반으로 그 형성이 동태적인 경제통합과정이고 FTA가 초기목표이며 장기적인 목표가 공동시장수준과 같은 경제공동체이다.

둘째, 경제공동체 모델의 선택이다. EU 모델은 지역통합의 초국가적 모델(supranational model)이라고 할 수 있지만 EU 모델을 선택할 때 정부간 모델(intergovernmental model)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한 학자도 있다.²⁹⁰⁾ 여기서 한·중·일간 제약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는 정부간 모델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국가주권 유지의 필요성이다. 유럽통합의 주요법률과 기구가 국제협정의 주요산물이며 서명과 비준을 포함하여 설립조약의 절차에 있어서 회원국 정부가 통합과정에 의해 국내의 시스템을 조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⁹¹⁾ 한·중·일 공동시장이 형성되면 EU처럼 초국가적 조직이 아니라 국가정부간의 조직이어야 할 것이다.

넷째, EU가 회원국간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구와 규칙을 형성하며 계속 시행·모색되고 있다. EU는 국가의 주권을 전제로 하고 다른 국제기구들과 달리 단순한 국제협력의 차원을 넘어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²⁹²⁾ EU는 사무국이라는 용어가 없지만 집행위원회가 사무국과 같다. EU의 성공적인 경험은 주로 완벽한 법률제도와 상설기구에 달려 있다. EU는 설립조약에 의해 설립되고 EC 조약이 EU의 법적기초와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EU의 조직기구는 EU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각 기구가 상이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각자의 기능을 이행하고 상호 유기적인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각 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EU 조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EU의 이러한 경험을 보면 한·중·일 3국 공동시장도 설립조약에 의해 그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

290) Lyou, Byung-Woon, "Building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Summer, 2004, p. 271 참조.

291) See id.

292) 이석용, 『국제법』, 세창출판사, 1999, p. 95.

여 법률제도와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상설기구는 공동시장을 운영하는 주체이며 공동시장 문제해결의 선결조건이다. 설립조약은 공동시장의 법적 기초와 주요 구성부분이며 공동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보증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EU의 경험을 참고함으로써 3국의 실정에 결합하고 향후 창설이 예견되는 한·중·일 공동시장 모델의 구축전략을 제의하고자 한다.

2) 한·중·일 공동시장 모델의 구축전략

한·중·일 공동시장이 형성되면 EU와 달리 초국가적 조직이 아니라 국가정부간의 협력조직이다. 또한 EU는 EU이사회,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 입법기구가 있고 상응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자체의 법체계인 EU법을 형성하고 완벽한 법제도와 조직기구가 있다. 한·중·일 공동시장은 국가간 협력조직으로 입법기구가 없고 자체의 법체계도 없으며 주요 법적기초가 설립조약이고 설립조약에 의해 설립되는 것이다. 지역경제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기본체제는 일반적으로 설립조약, 조직기구, 활동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한·중·일 공동시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 기본 구성은 주로 설립조약, 조직기구, 활동절차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중·일 공동시장 모델은 주로 공동시장의 설립조약, 조직기구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구축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공동시장은 설립조약에 의해 설립되므로 설립조약은 3국 공동시장 형성의 법적기초가 된다. 따라서 「한·중·일 공동시장 설립조약」(가칭)을 체결하여야 한다. 「한·중·일 공동시장의 설립조약」은 주로 설립취지, 장기발전목표, 기본원칙, 경제공동체의 활동분야와 법률지위, 활동절차에 대하여 지역경제공동체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형성하기로 한다.

둘째, 한·중·일 공동시장의 조직기관은 공동시장을 운영하는 주체이며 공동시장을 형성하여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기관을 구축하여야 한다. EU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3국의 실정에 맞는 한·중·일 공동시장의 조직기관은 주로 이사회, 집행위원회, 사무국 및 분쟁해결기구가 있어야 한다. 한·중·일 공동시장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범위, 주로 설립조약과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기구인 집행위원회 구성 및 기능범위, 공동시장의 행정기구인

사무국 구성 및 기능범위, 분쟁해결기구에 대하여 구축하기로 한다.

2. 한·중·일 공동시장 모델 구축

1) 「한·중·일 공동시장 설립조약」(가칭)

모든 지역경제공동체는 설립조약에 의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설립조약은 지역 경제공동체가 존재·발전하는 법적기초이다. EU 공동체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공동체법이라 함은 공동체설립조약들²⁹³⁾과 그 하위규범으로 구성된 모든 공동체입법을 총칭한다.²⁹⁴⁾ EU는 유일한 입법기구가 존재하지 않지만 EU이사회,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 입법기구가 있고 그들이 각자의 직권범위에 다른 정도로 입법하기 때문에 자체의 법체계, 즉 EU법이 형성된다. 한·중·일 공동시장은 3국의 정치경제제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3국의 현재 실정을 고려하면 입법기구까지 설립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 공동시장은 EU와 같이 초국가조직이 아니라, 각 체약국이 평등하게 협력하는 정부간 경제조직이며 자체 입법 체계를 가질 수는 없다. 이하에서는 「한·중·일 공동시장 설립조약」의 설립취지와 목표, 기본원칙, 활동절차 등을 언급하기로 한다.

(1) 설립취지와 목표

먼저, 한·중·일 공동시장 설립취지이다. 모든 지역경제공동체는 설립조약에서 명확한 설립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중·일 공동시장 설립조약」에도 3국 경제공동체의 설립취지가 있다. 한·중·일 공동시장 설립의 취지는 3국이 평등적인 협력, 상호존중, 국내문제불간섭, win-win원칙 그리고 분쟁의 평화해결 등의 기초에 3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상호신뢰를 증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3국간의 장애요인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고, 무역과 투자 장애를 감소하며, 3국간

293) 공동체설립조약은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주권적 권한이 회원국으로부터 공동체기관에게 이행되었기 때문에 주권국가간의 조약이상의 것이며, EU의 헌법적 기초이다. EU 공동체설립조약은 '로마조약'(EC 설립조약), 'Euratom 설립조약'(1957), 'ECSC 설립조약'(1951) 등이 포함된다. 최승환, 전게서, p. 956참조.

294) 최승환, 전게서, p. 956.

경제발전의 격차를 줄이고 협상을 통해 평화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국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하고 상호협력을 구조화하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및 안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한·중·일 공동시장 목표이다. 한·중·일 공동시장은 관세 및 기타 수출입 장벽을 철폐하고, 역외제국에 대한 공동 관세를 실시하며, 3국의 경제정책을 점진적으로 조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회원국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회원국간 상호관계를 긴밀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이 각국의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력의 제고, 공동이익의 극대화 그리고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3국의 장기비전과 목표가 동북아 공동체이다. 또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가 한·중·일 공동시장이며 단기 목표가 3국 FTA이다. 현재의 실정에서 살펴보면 한·중·일 3국이 3국간의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을 점점 줄이고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와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점차적으로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시장 내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하고 회원국내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국 FTA를 빠른 속도로 체결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절차를 설치하고 메커니즘을 설립한다. 그리고 회원국간 이익을 확대하고 상호협력과 원조를 강화하며, 협력과 발전기금을 설립하는 것이다.

(2) 기본원칙

한·중·일 공동시장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상호이해와 상호신뢰의 원칙이다. 한·중·일 3국은 정치적인 분쟁이 있기 때문에 상호이해와 상호신뢰를 강화하여야만 3국의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이해와 상호신뢰가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기초이며 3국이 상호이해와 상호신뢰의 기초에 3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3국 공동시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호보완과 호혜평등 원칙이다. 한·중·일 3국이 경제발전수준이 다르며 상호보완성이 강하고 win-win원칙에 따라 각국의 우세를 발휘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상호이익과 상호보

완의 협력구조를 형성하고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求同存異, 실제적인 점진원칙이다. 한·중·일 3국 협력은 경제발전, 사회제도와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화 발전을 존중하여야 하고 각국의 특징과 발전 불균형의 실제에서 착안하고 서로 존중하며 다른 국가의 수요와 능력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3국간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의 범위를 넓히며 각국의 이익균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활동분야와 법적지위

한·중·일 공동시장은 지역경제통합조직뿐만 아니라 지역적 국가간의 국제조직이다. 국제조직의 법률관계에 있는 법률지위는 해당 조직의 기본문서 또는 관련조약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국제조직을 설립하는 회원국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국제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국제조직이 다른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을 수 있다.²⁹⁵⁾ 또한 국제조직의 법적인격은 그 법적 기능을 집행하고 그 조직취지를 달성할 때 필요한 범위에서만 승인될 것이다.²⁹⁶⁾ 다시 말하면 이 범위 내에서만 국제조직은 법적 인격이 있다. 한·중·일 공동시장의 설립조약에서 살펴보면 한·중·일 공동시장이 형성되면 법적 인격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활동절차와 조직기관 결의의 이행

국제조직의 의사규칙은 조직의 각종 기구가 그 기능을 행사하여 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따라야 할 절차적 규칙이며 제도이다. 주로 회의제도, 정책결정절차와 표결제도 등을 포함한다.²⁹⁷⁾ 「한·중·일 공동시장 설립조약」에서 규정된 취지와 원칙은 기능기구의 구체적인 활동만을 통하여야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공동시장의 활동은 내부관리뿐만 아니라 대외관계도 관련된다. 그 활동절

295) 梁西, 전게서(2001), p. 109.

296) 상게서, p. 9.

297) 饒戈平, 『國際組織法』, 北京大學出版社, 1996, p. 175.

차는 회의제도와 표결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회의의 개최, 심의, 토론과 작업배정, 결정의 내림 등은 국제조직이 활동하고 회원국이 각국 대표를 통해 입장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한·중·일 3국의 회의제도는 주로 정기적인 3국 정상회의와 자유무역위원회회의(통상장관회의)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일 공동시장은 회원국이 3개 국가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 때 협상일치의 제도를 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중·일 공동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지만 3국이 이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제조직법에 의해 유보 성명과 기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회원국이 국제조직에 참여하는 활동은 국제조직결의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²⁹⁸⁾ 한·중·일 공동시장 조직기관의 결의의 이행과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3국 공동시장 이사회 결의가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3국이 각국의 헌법에 의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당 결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중·일 공동시장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이 종국적이며 3국에 모두 구속력이 있고 모든 분쟁 당사국이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을 지켜야 한다. 앞으로 한·중·일 공동시장이 형성되면 3국의 상호협상을 통해 그 조직기구가 계속 개선되고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중·일 공동시장 주요 조직기관의 설치

지역경제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가 설립조약에 의해 설립되고 내부 상설기구가 있다. 한·중·일 공동시장은 「한·중·일 공동시장 설립조약」에 의해 설립되고 「한·중·일 공동시장 설립조약」의 실시 및 이행의 감독, 공동시장의 운영 및 일상 업무의 처리, 최종정책의 결정, 분쟁의 해결, 관련정책의 제정 등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경제공동체의 목표가 더욱 높으면 제도적인 조직기구가 더욱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의 실정을 결합하기 위한 한·중·일 공동시장의 주요 조직기구는 최고권력기구 또는 정책결정기구인 한·중·일 공동시장 이사회, 「한·중·일 공동시장 설립조약」과 이사회의 결정을

298) 張獻, 『APEC의國際經濟組織模式研究』, 法律出版社, 2001, p. 147; 楊澤偉, “東北亞能源共同體法律框架初探”, 『比較法研究』第4期, 2006, p. 125.

실시하는 집행위원회, 행정기구인 사무국, 분쟁해결기구 등이 있다.

(1) 이사회

한·중·일 공동시장 이사회는 경제통상장관급 대표로 구성되고 경제공동체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권력기구 또는 정책결정기구이다. 또한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특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 주요 기능은 공동시장의 정책방향을 결정하여 예산을 심사하고, 관련 규칙을 제정하며, 공동정책의 실시에 대하여 조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결은 민주적이며 많은 지역경제공동체가 취하는 의사결정방식이다. 전원일치는 회원국 주권을 전제로 하지만 정책결정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한·중·일 공동시장은 3국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협상일치의 기초에 전원일치의 의사결정방식을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3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경제공동체의 상설기구라고 할 것이다. 그 주요 기능은 「한·중·일 공동시장 설립조약」과 이사회의 결의를 실시하고, 「한·중·일 공동시장 설립조약」과 정책문제에 대하여 이사회에 계획, 보고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3국간 경제협력의 문제에 대해 협상하며 이사회에 공동시장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공동시장 통합목표의 실현을 추진한다. 집행위원회는 산하 전문위원회, 작업그룹과 부속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위원회가 원산지, 관세, 예산, 경제, 무역, 투자, 금융, 농림업, 어업, 에너지, 관광, 환경, 정보통신, 재난관리, 자문위원회 등 위원회로 구성되고 장관급회의를 부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문제를 논의한다. 작업그룹은 한·중·일 3국의 저명한 인사 또는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3국 경제협력 및 장기적으로 3국 공동시장의 장기비전을 논의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의 전략적인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²⁹⁹⁾

299) 최원기, “신정부의 한·중·일 3국 경제협력 과제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8,

(3) 사무국

사무국은 상설행정기구로서 사무국총장(Secretary General)을 설치하고 이사회에서 한·중·일 3국의 만장일치로 선출한다. 그 주요 기능은 3국 경제공동체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공동시장 각 상설기관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한다. 또한 이사회와 장관급회의의 안건을 준비하고 이사회와 법률적인 자문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사회, 집행위원회 및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 작업그룹 및 기타 부속기구의 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4) 분쟁해결기구

지역경제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단독적인 분쟁해결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27명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보통재판소(제1심 재판소;The Court of First Instance) 및 특별재판소(예를 들어 민사재판소; The Civil Service Tribunal)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 ECJ는 EU의 가장 중요한 사법기구이다. 전문적인 사법기구인 ECJ가 EU의 주요 기관들과 비교하면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ECJ는 3인, 5인 또는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총 6개의 부(Chamber)가 존재하는데, 각부는 특정한 유형의 사건을 심리하며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정족수가 7인인 전원합의체(entire court)에서 심리한다.³⁰⁰⁾ 분쟁해결기구는 역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의 목적을 순조롭게 실현시키는 중요한 기구이다. ECJ는 공동체 내에 제도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경제공동체의 운영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중·일 공동시장은 공동시장내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시장 목적을 순조롭게 실현하기 위하여 분쟁해결기구도 필요하다. 한·중·일 공동시장 의 분쟁해결

p. 13 참조.

300) 최승환, 전게서, p. 948.

기구는 「한·중·일 공동시장 설립조약」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고 6명 또는 9명 법관으로 구성될 것이며 주로 설립조약에 대해 해석하고 해석·적용과 관련된 분쟁과 기타 분쟁을 해결한다. 또한 설립조약 이행자로서 설립조약의 해석을 통해 설립조약의 실시와 이행을 보장하고 공동시장의 안정과 분쟁의 예측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일 공동시장은 NAFTA처럼 일반적인 무역분쟁 해결메커니즘, 투자분쟁해결메커니즘, 반덤핑/상계관세분쟁해결메커니즘 등 많은 분쟁해결메커니즘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동북아 한·중·일 3국은 경제적인 지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세계경제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이 국가간 경제협력의 중요한 형식이 되는 추세 하에 세계의 경제중심축으로서 한·중·일 3국이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동북아에서도 지역경제공동체가 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중·일 공동시장의 형성이 시대적 조류이고 동시에 3개 국가와 국민의 요청이기도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현재 경제발전의 추세에서 살펴보면 앞으로 3국간 지역경제통합은 미래 경제발전의 중대한 주제가 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FTA를 통해 국가별 경제에서 국가간, 특히 인접국가간에 연대를 하는 지역주의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지역주의의 빠른 확산에 따라 최근 동북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이 FTA를 맺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이 세계경제발전의 추세가 됨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요한 과제와 급선무가 된다.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동북아 지역 내 경제발전과 공동번영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 내의 평화와 안전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구축은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의 흐름입과 동시에 역사적 추세이기도 하고 앞으로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시발은 3국 FTA 체결로부터 착수하였다. 물론 동북아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경제협력기반이 충실하지 못하므로 우선은 동북아 지역 내의 한·중·일 3국간 공동시장이 형성되고 추후에 북한, 몽골, 러시아 등 주변국가를 동북아 공동시장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중·일 공동시장은 자유무역지역 결성과 금융협력기구 설립 등을 통한 초보적인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EU 및 NAFTA와 달리 기본적으로 경제발전과 건설을 위한 공동체이며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지향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논의를 토대로, 한·중·일 3국이 우선 경제협력을 제도화하

고 FTA의 체결에서 출발하여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거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공동체, 나아가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여야 한다.

한·중·일 공동체 시장을 출범시키기 위하여 우선 한·중·일 간에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음 단계인 FTA를 체결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이기 때문이다. 한·중·일 무역협정은 관세의 인하와 철폐,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 국가간 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무역협정이다. 중국-아세안 FTA의 상품무역협정처럼 '조기수확계획'을 통해 논란이 될 분야를 제쳐놓고 상호개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개방의 폭을 넓혀나가면서 3국 무역협정의 체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근 한·중·일 3국이 투자협정 협상의 타결을 위해 연내에 실질적인 합의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3국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 3국이 지역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문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한 점진적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일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이 체결된 후에 한·중·일 공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초로서 3국간 FTA의 체결과정이 남아있다. 현재의 발전단계에서 살펴보면 3국이 모두 강한 협력의사가 있으며 3국간 협력의 우호분위기도 형성되어 있고 3국 모두 FTA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열린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협력 비전 2020」의 핵심 내용은 경제적 교역 확대와 이를 위한 각종 무역장벽의 철폐이다. 교역 촉진을 위한 기술적 장벽 철폐, 자유로운 자본이동 촉진에 대해 2012년까지 3국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장기적으로 공동시장 창출을 포함해 지역경제통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³⁰¹⁾

한·중·일 FTA 체결을 추진하는 동시에 3국간 금융협력도 제도화하여야 한다. 금융위기로 인해 3국은 외부 충격으로 심각한 환율 급변동에 시달린 바 있다. 급격한 외국 자본 유출입에 따른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는 양자간 통화스왑을 3국간 통화스왑으로 전환하고 이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위기 재발방지·예방,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 외화유동성 보완 등을 위한 금융협력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외환보유액을 확충함으로써

301) 조선일보, 2010.5.31, A35.

외환보유고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경제 감시기구 및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3국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 및 외환위기의 대응을 위해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경제공동체의 형태는 3국간 경제협력의 완성 형태로서 3국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중·일 공동시장은 EU와 달리 초국가적 조직이 아니라 국가정부간의 협력조직이다. 또한 한·중·일 공동시장의 형성과정은 EU와 다르다. EU도 경제통합 단계인 관세동맹을 시발로 EEC와 EC를 거쳐 오늘날 정치적인 통합 직전단계로까지 발전해왔다. 한·중·일 3국은 3국간 FTA를 시발로 관세동맹을 거쳐 거시경제, 대외무역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중·일 간에 경제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일 3국이 가야 할 귀결점이 한·중·일 공동시장이지만 조건이 성숙되면 한·중·일 공동시장을 점차 동북아 지역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나아가서 동북아 경제공동체, 나아가서 동아시아 공동체로 발전될 수도 있다.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중·일 공동시장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였다.

동북아 공동시장은 역내 국가간 무역·투자의 원활화와 자유화, 서비스분야의 점진적인 개방,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실현하고 금융협력기구, 즉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며 역내 단일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공동시장의 형성과정에서 각국의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력이 제고되고 경제통합 이익이 구성원간의 공동번영으로 구현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번영의 공유를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의 추동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북아 공동시장의 형성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인 긴장상태를 호혜평화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경제관계의 긴밀화는 정치적인 상호신뢰와 안보적인 공동체 의식을 증강할 수 있고 국가간 정치적인 갈등의 해소에 유리하며 정치안보, 환경, 에너지, 관광, 정보통신, 재난관리 등 많은 분야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공동시장은 EU처럼 더 많은 분야의 협력을 이끌 수 있고 경제부문이외의 부문까지

도 포함하는 동북아 공동체로 확대·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 공동체의 한축으로서 동북아 공동시장은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동북아의 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며 정치문화, 안보, 환경 등 많은 영역의 협력과 국가간 사회문화의 교류를 강화할 수도 있고 민족주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동북아 공동체의 전제조건이 정치·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다. 그러나 한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고도 가능한 분야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규제 및 장벽을 철폐하여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며 상호신뢰를 증진시키는 공동시장의 설립이다. 경제적으로 동북아 공동시장은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추진하고 금융분야의 개방을 통해 금융협력기구를 설립하고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하여 경제통합수준을 제고하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동북아 공동체는 역내 국가간 평등한 협력기구이다. 이는 또한 독특한 지역적 국제조직이며 설립조약, 부속 문서 및 관련 정책법규를 갖게 된다. 동북아 공동체의 구축은 본질적으로 역내 국가들이 평화롭게 살고 공동의 관심사와 운명을 공유하는 것이며 설립목표가 평화롭게 사는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발전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강영훈, 김현수, 『국제법개설』, 연경문화사, 1988.
- 강인수, 『국제통상론』 제3판, 박영사, 2003.
- 김영작, 김기석, 『21세기 동북아공동체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6.
- 김관호, 『한일투자협정의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1999.
- 김광역, 전영평,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통일연구원, 2004.
- 김문달, 김태천, 『국제법』, 법문사, 1994.
- 김은경, 『한·중·일 FTA 체결의 정치경제적 의의』 (CEO REPORT), GRI경기개발연구원, 2010.
- 김재한, 『동북아공동체』, 집문당, 2005.
- 김정균, 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2006.
- 김찬규, 이영준, 『국제법개설』, 법문사, 1994.
-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동북아와 한반도의 경제통합』, 이매진, 2008.
- 동북아시아위원회,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의 정립과 중단기 중점과제』, 동북아시아위원회, 2006.4.28.
-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이매진, 2008.
- 류관영 외, 『한·중·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산업연구원, 2004.
- 미래인력연구센터 편, 『21세기 동아시아협력』, 넥서스, 1999.
- 박덕영, 이재형, 『WTO통상조약집』, 박영사, 2006.
- 박용용, 『WTO협정』, 법문사, 2006.
- 서헌제,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8.

-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2.
- 안형도, 박제훈, 『동북아 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안충영 외 역음,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2003.
- 오수열, 이계만, 『동북아정치경제협력론』, 조선대학교 출판부, 1999.
- 왕윤종,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유병화 외, 『국제법 I』, 법문사, 1999.
- 윤종설, 정창화, 김정해,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2005.
- 윤종설 외, 『동북아공동체의 사법기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2006.
- 이경근, 『동북아 경제협력: 동북아개발은행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이상윤, 『국제경제법』, 중앙경제사, 1996.
- 이석용, 『국제법』, 세창출판사, 1999.
- 이영훈,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장백, 1994.
- 이승철 외,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 이제민 외, 『동북아 지역공동체 인식 및 제도화의 과제』, 백산자료원, 2007.
- 이창재 외, 『동북아 경제협력전략연구』,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 이현조, 『현대국제법강의』, 전남대학교출판부, 2002.
- 이호선, 『유럽연합(EU)의 법과 제도』, 세창출판사, 2006.
- 서민교, 전정기, 장동식,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삼영사, 2006.
- 제주평화연구원 편, 『동북아시아의평화와 변영: 유럽경험의 탐색』, 제주평화연구원출판부, 2008.
- 전재경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통일연구원, 2005.
- 정용화 외,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지식마당, 2006.
- 정인교 외,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 정인교, 『한·중·일 FTA의 추진단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조영정, 『국제통상론』, 법문사, 2003.
- 진창수, 『동북아 영토분쟁과 일본의 외교정책』, 세종연구소, 2008.
- 채형복, 『유럽헌법조약』, 높이깊이, 2006.
- _____, 『유럽헌법론』, 높이깊이, 2006.
-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3판, 법영사, 2006.
- 최영중,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아연출판부, 2003.
- 최재훈, 하재환, 김부찬 외, 『국제법신강』, 신영사, 2004.
- 한국개발연구원,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개발공동체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1.

2) 논문

- 강명세, “동북아 지역주의의 현황과 한국의 선택”, 『정책브리핑』 통권 제14호, 세종연구소, 2002.
- 강성학, “신국제질서와 동북아 지역협력체의 수립장향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제91호, 1994.
- 고준성, “WTO와 지역주의”, 『통상법률』 제5호, 1995.
- 김부찬, 김여선, “동북아시아 지역 경제협력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 『법과정책』 제6호,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 2000.8.
- 김시중,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FTA 전망”,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3호, 2007.
- 김창모, “유럽자유무역연합의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논문집』 제48집, 2004.
- 김양희, “동북아경제공동체의 추진방향에 대한 일고찰”, 『국제경제학회』, 2004.
- 김완수, 김기수, “금융위기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과제와 전망: 정치경제적 조명”, 『한·일 지도자 Forum』, 세종연구소, 2000.
- 김준현, “경제적 세계화와 경제정의”,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 201 8(4), 2005.

- 김혜정, “APEC의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고충홍, “세계화의 전개와 FTA”, 『제주특별자치의정』 통권 제2호, 2007.
- 남수중, “한중 금융협력의 현황과 향후과제”, 『중국학연구』 제31집, 200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후쿠오카 한·중·일 정상회담 의의와 경제협력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2008.
- 문돈,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한국: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 한국”, 『한국정치연구』 제16집 제2호, 2007.1.
- 박정동,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에 관한 고찰”, 인천발전연구원, 2003.
- 방준석, “한·중·일 경제공동체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서헌재,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국제경제법의 새로운 개념”, 『통상법률』 통권 제7호, 1996.
- _____,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의 분쟁해결절차”, 『중재학회지』 제3권 제1호, 1993.
- 손상익, “EFTA의 최근 동향”, 『KIET 실물경제』, 산업연구원, 1998.
- 손태우, “WTO 체제내에서의 지역무역협정(RTA)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9권 제2호, 2009.
- 송영관,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지역무역협정 양립 여부의 규범적 고찰”, 『한국경제학보』 제12권 제1호, 2005.
- 신장철, “동북아경제공동체 논의와 그 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논집』 제38권, 2007.
- 신황호, “동북아 지역의 국제투자협력 강화 방안”, 『무역학회지』 제28권 제1호, 2003.
- 안세영, “Post 한·미 FTA 시대 한·중 FTA의 정치경제적 의의”, 『한국의 대외경제정책과 동아시아 공동체』, 2007.
- 안효승, “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 방안”, 『정책연구시리즈』, 외교안보연구원, 2004.
- 어명근, 이현주, 강혜정,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FTA 농산물 양허안 분석”, 『농촌경제』 제28권 제2호, 2005.

-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북미자유무역협정안 해설”, 『캐나다연구』 제4권, 연세대학교동서문제 연구원캐나다연구센터, 1992.
- 윤영관, “세계화”, 김경원, 임현진 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 1997.
- 오재희, “한중일후쿠오카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 『아태Focus』, 아태정책연구원 (APPRI), 2009.
- 원용걸,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WTO의 역할”, 『통상법률』, 2006.8.
- 이경태, “노무현 정부의 경제공동체 건설 이니셔티브: 기회, 도전과 전망”, 『동북아시아의평화와 변영: 유럽경험의 탐색』, 제주평화연구원 출판부, 2008.
- 이도강, “역내법화내국법적합작관계”, 인민법원신문에서 게재된 B₄ 「해외법역」 제2기(총제2778기), 2005.
- 이홍배, “한·일FTA 추진현황과 경제협력 가능성 고찰”, 『국회도서관보』, 제42권 제8호, 2005.
- 이홍중, “동북아공동체의 구축현황과 전망: 정치, 경제, 및 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5집 1호, 2002.
- 장동식, 전정기, 송염염, “동아시아 FTA 형성경로 탐색에 관한 일고-한중일 3국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0권 제3호, 2008.
- , ———, ———,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의 제도화에 관한 일고찰”,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2008.
- 장철호, “EU 경제통합과정이 한·중·일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제성호,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한국의 국제법적 실천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99호, 2007.8.
- 전가림, “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 『동아연구』 제16권 제1호, 2004.
- 정상화,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개념 모색과 발전 전망: 정치경제적 시각”, 이제민 외 저 『동북아 지역공동체 인식 및 제도화의 과제』, 백산자료원, 2007.
- 정창화, “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공동체 형성전략”,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2호, 2008.

- 조양현, “후쿠오카(福岡)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평가 및 전망”, 『주요국제문제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9.
- 최수정, “EFTA, 시장확대를 위한 융통성 발휘: 주요국의 수산부문 FTA 전략과 시사점”, 『해양수산』 통권236호, 2004.
- 최원기, “신정부의 한·중·일 3국 경제협력 과제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8.
- 최태욱, “동북아공동체 형성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미래전략연구원 이슈와 대안』, 2005.

2. 외국문헌

<영미>

- A. LeRoy Bennett and James K. Oliv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inciples and issues*, 7th ed. (Prentice Hall, 2002.)
-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Antony Giddens, *The Consequence of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Aseem Prakash and Jeffrey A. Hart eds., *Globalization and Governance*, (Routledge, 1999.)
- Asif H. Qureshi, *International Economic Law*, (Sweet & Maxwell, 1999.)
- Beth A. Simmons & Richard H. Steinberg,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C. F. AMERASINGHE, *Principles of the Institutional Law of International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Damian Chalmers, Christos Hadjiemmanuil, Giorgio Monti, Adam Tomkins, *European Union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David J. Bederman, *International Law Frameworks*, (Foundation Press, 2001.)
- Emst B. Haas, *Beyond the Nation-state: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 Organiz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 Georges Abi-Saab,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ESCO, 1981.)
- Henry G. Schermers & Niels M. Blokker, *International Institutional Law: unity within Diversit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3.)
- Jeju Development Institute · East Asia Foundation, *Building a Northeast Asian Community Volume(I,II): Toward Peace and Prosperity*, (Yonsei University Press, 2006.)
- Jenks, *The Proper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evens & Sons, 1962.)
- John Collier and Vaughan Lowe,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Institutions and procedur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John Fairhurst, *Law of the European Union*, 6th ed. (Pearson Education, 2007.)
- Joseph E. Stiglitz,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W. W. Norton & Company, 2002.)
-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Light of History of Experi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Kim Pilarski trans., *International Law*, (Progress Publishers Moscow, 1990.)
-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4th ed.(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Martin Dixon, *International law*, 6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Martin Dixon and Robert McCorquodale, *Cases &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Blackstone Press Limited, 1991.)
- Merriam-Webster, *Merriam 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0th ed. (Merriam Webster Incorporated, 1998.)
- Michael Wesley, *The Regional Organizations of the Asia Pacific: Exploring Institutional Change*, (Palgrave Macmillan, 2003.)

- N. A. Maryan Green, *International Law: Law of Peace*, 2nd ed. (Macdonald and Evans, 1982.)
- Nigel G. Foster, *Blackstone's Statutes on EU Treaties & Legislation*, 19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Peter L. Berger and Samuel P. Huntington, *Many Globalizations: Cultural Diversity in the Contemporary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Peter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Routledge, 2000.)
- Phillippe Sands and Pierre Klein, *Bowett's Law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5th ed. (Sweet & Maxwell, 2001.)
- Paul Craig and Gráinne de Búrca, *EU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Ralph H. Folsom, *European Union Law in a Nutshell*, 3rd ed. (West Group, 1999.)
- Ralph H. Folsom, *Principles of European Union Law*, (Thomson/West, 2005.)
- Short J. R. & Y. H. Kim, *Globalization and the city*, (Longman, 1999.)
- Takis Tridimas, *The General Principles of E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Thomas Buergenthal and Sean D. Murphy, *Public International Law in A Nutshell*, 4th ed. (Thomson West, 2006.)
- Woo Keun-Min, *Building Common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Yonsei University Press, 2002.)
- Cordula Janowski, "Globalization,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EU: Pleadings for a Broader Perspective", *ZEI Discussion Papers C162*, Center for European Integration Studies, 2006.
- Dearden, R.G., "Trade disputes and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 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Western Hemisphere Trade Intergra-*

- tion: a Candian Latin American Dialogue*, Basingstoke: Macmillan, 1997.
- Harvey, D., “Capitalism: The factory of fragmentation”, In Roberts, T. J. & Hite, A.(Eds.), *From modernization to globalization*, Oxford: Blackwell Publishers, 2000.
- Helleiner, D., “Raudelian reflections on economic globalization: the historian aspioneer”, In Gill, S. & Mittleman, J(Eds),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in International Stud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H. Dieter and R. Higgott, “Exploring alternative theories of economic regionalism: From trade to finance in Asian co-oper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0(3), 2003.
- Jong-Won Lee, Ki-Sik Hwang, “Towards New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ssons from the Franco-German Coalition”, 『유럽 연구』 제25권 3호, 2007.
- Josephine Steiner, “Lorna Woods and Christian Twigg-Flesner”, *EU Law*, 9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Jost Dellbruck, “Globalization of Law, Politics and Markets: Implication for Domestic Law”, A European Perspective.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Vol. 1, No. 1, 1993.
- Juliana W. Chen, “Achieving Supreme Excellence: How China Is Using Agreement With ASEAN Over Obstacles to Its Leadership In Asia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Winter 2007.
- Kap-Young Jeong and Kwan-Kyoo Choe, “North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A Korean View”, *Global Economic Review*, Vol.30, No.1, 2001.
- Kim, Dong-Hoon, Kim, Bong-chul,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of China, Korea and Japan”, 『외법논집』 제28집, 2007.

- LU Bo, "CJK FTA, Political Obstacles and Economic Difficulties", 2008.7.29.
- Lyou, Byung-Woon, "Building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Summer, 2004.
- McWhinney, "The Evolution of United Nations Constitutionalism. The Emerging Constitutional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16 Thesaurus-Acroasium*, 1990.
- Miyoshi, M., "Globalization, culture and the universal", in Jameson, F & Miyoshi, M.(ed). *The Culture of Globalization*,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8.
- P.B. Potter, "origins of the Term International organization", *39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45.
- Pierre Jacquet, "Regional Economic Integation: The European Model", 『대외경제연구』 제5권 제2호, 2001.
- Pitman B. Potter, "Origin of the Term International Organization", *39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45.
- Rodrik. D., "Has globalization gone too far" In Roberts, T. J. & Hite, A.(Eds), *From modernization to Globalization*, Oxford: Blackwell Publishers, 2000.
- S. Berlin and R. Higgott and B. Rosamond, "Reg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CSGR Working Paper*, NO. 107, 2002.
- Suh-Yong Chung, "Is the Mediterranean Regional Cooperation Model Application to Northeast Asia?", *Georgetow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view*, Winter 1999.

<중국어>

- 沈四寶, 『世界貿易組織法教程』,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05.
- 戴炳然, 『歐洲共同體條約集』, 復旦大學出版社, 1993.
- 丁偉, 『經濟全球化與中國外資立法完善』, 法律出版社, 2004.

- 範愛軍, 陳曉文, 『國際貿易: 理論與政策』, 山東人民出版社, 2009.
- 樊瑩, 『國際經濟一體化的經濟效應』, 中國經濟出版社, 2005.
- 高明振, 『二十世紀要事概覽』, 湖北人民出版社, 1994.
- 耿協峰, 『新地區主義與亞太地區結構變動』, 北京大學出版社, 2003.
- 郭力, 『俄羅斯東北亞戰略』, 社會科學出版社, 2006.
- 郭喻, 『國際經濟組織法教程』, 北京大學出版社, 2008.
- 國際貨幣基金組織, 『世界經濟展望』, 中國金融出版社, 1997.
- 河志工, 安小平, 『東北亞區域合作通向東亞共同體之路』, 時事出版社, 2008.
- 胡延泓 譯, 『全球化的管理: 相互依存時代的全球化趨勢』, 上海譯文出版社, 1998.
- 胡俊芳, 『中日韓自由貿易區貿易效果的實證分析』, 復旦大學出版社, 2007.
- 李向平, 『東北亞區域經濟合作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 梁峰, 『東北亞區域經濟發展與合作』,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7.
- 梁西, 『國際法』, 武漢大學出版社, 2008.
- , 『國際組織法』, 武漢大學出版社, 2001.
- 劉世元, 『區域國際經濟法研究』, 吉林大學出版社, 2001.
- 劉曙光, 『全球化與反全球化』, 湖南人民出版社, 2003.
- 劉淑君, 『國際法學』, 蘭州大學出版社, 2006.
- 馬維野, 『全球化時代的國家安全』, 湖北教育出版社, 2003.
- 朴鍵一, 朴光姬, 『中韓關係與東北經濟共同體』,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 饒戈平, 『國際組織法』, 北京大學出版社, 2003.
- 邵津, 『國際法』, 北京大學出版社高等教育出版社, 2003.
- 史自力, 『國際經濟學』, 鄭州大學出版社, 2002..
- 索光學, 『CEPA條件下內地與香港法律適用問題研究』,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 談毅, 『國際區域經濟合作』, 西安交通大學出版社, 2008.
- 唐海燕, 『全球化與中國開放戰略』,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3.
- 田家谷, 『國際經濟組織法』, 中國法制出版社, 2000.
- 王貴國, 『區域合作法律問題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04.
- , 『世界貿易組織法』, 法律出版社, 2003.

- 王厚双,『中日韓自由貿易區與老工業基地振興互動關係研究』,遼寧人民出版社, 2004.
- 王勝今 外,『東北亞地區合作與中國東北振興研究』,吉林人民出版社, 2007.
- 吳興光,『世界貿易組織法概論』,中國商務出版社, 2003.
- 徐光旦,『全球化熱點問題聚焦』,學林出版社, 2001.
- 楊潔勉,『大整合亞洲區域經濟合作的趨勢』,天津人民出版社, 2007.
- 張軍 外 譯,『經濟史中的結構與變遷』,上海三聯出版社, 1995.
- 張幼文,『世界經濟學』,立信會計出版社, 1999.
- 張獻,『APEC的國際經濟組織模式研究』,法律出版社, 2001.
- 張蘊嶺,『東北亞區域合作』,世界知識出版社, 2004.
- 趙傳君,『東北經濟振興與東北亞經貿合作』,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 ,『東北三大關係研究』,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 趙維田,『世界貿易組織的法律制度』,吉林人民出版社, 2000.
- 趙玉煥,『區域經濟集團』,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07.
- 朱曉青,『國際法』,社會科學出版社, 2004.
- 蔡成喜,“中日官方貿易關係建立始末”,『百年潮』第5期, 2004.
- 常黎,“關於「區域貿易協定透明度機制」的決議”,『WTO 經濟導刊』第6期, 2008.
- 陳愛蓓,“地域經濟合作的制度框架與我國的可行性選擇”,『學海』, 2008.
- 陳金濤, 曹軍婧,“促進大圖門江區域經濟協力的國際法思考”,『吉林財稅高等專科學校學報』,第2期(總第83期), 2007.
- 陳瑞蓮,“歐盟經驗對珠三角區域一體化的啓示”,『學術研究』第9期, 2009.
- 陳憲民,“論區域經濟一體化對WTO制度產生的影響”,『法域縱橫』第15期, 2004.
- 蔡茵,“歐洲自由貿易區的最後談判”,『歐洲』第4期, 1993.
- 崔炳強,“論經濟全球化與世界經濟一體化的現實性與障礙”,『經濟論壇』,第10期, 2009.
- 戴德生,“世界貿易組織區域經濟一體化法律規制與我國的對策”,『國際貿易問題』第4期, 2003.
- 費赫夫,“北美自由貿易區爭端解決機制”,『南華大學學報』第7卷 第3期, 2006.

- _____, “北美自由貿易區爭端解決機制”, 廣西師範大學學碩士論文, 2004.
- 馮建武, “歐洲自由貿易聯盟”, 『國際問題研究』第3期, 1987.
- 馮雷, 宋麗華, “全球區域經濟組織的發展”, 『中國工商管理研究』, 2004.
- 傅岷成, “從南中國的區域經濟一體化走向大中華”, 王貴國編『區域安排法律問題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04.
- 傅明, 張訥, “論《北美自由貿易協定》之分散型爭端解決機制”, 『國際經濟法學刊』第13卷 第2期, 2006.
- 耿麗華, “東北亞區域經濟一體化的最佳路徑選擇”, 『遼寧大學學報』第33卷 2期, 2005.
- 顧經儀, “建立亞太地區自由貿易區構想和法律框架初探”, 『政治與法律』第2期, 2005.
- 韓龍, “世界組織的區域經濟一體化制度芻議”, 『國際貿易問題』第3期, 2003.
- 何樹全, “NAFTA投資爭端解決機制”, 『貴州財經學院學報』第3期, 2005.
- 候力, “東北亞地區勞務合作機制建設構想”, 王勝今著『東北亞地區合作與中國東北振興研究』, 2007.
- 黃薇, “北美自由貿易區服務貿易制度研究”, 廣西師範大學學碩士論文, 2008.
- 李双元, 李贊, “從WTO和EU法律制度談全球經濟一體化與區域經濟一體化的關係”,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Vol.34 No.6, 2005.
- 劉彬, “論WTO對RTAs的適度規制”, 『國際經濟法學刊』第14卷 第1期, 2007.
- 陸建人, “論東北亞經濟共同體”, 『當代亞太』, 第6期, 2005.
- 李向陽, “全球化時代的區域經濟合作”, 『世界經濟』第5期, 2002.
- 李揆哲, 喻潔, “NAFTA爭端解決機制評述”, 『國際經濟法論叢』第5卷, 2002.
- 劉昌黎, “日本FTA/EPA的新發展與中日FTA難以啓動的對策”, 『世界經濟研究』第10期, 2007.
- 劉世元, “區域國際經濟法的發展趨勢及其影響”,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第4期, 1998.
- _____, “區域國際經濟法若干基本理論問題探討”, 『法制與社會發展』第4期, 1997.
- _____, “論區域國際經濟法的主體”,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第5期, 1999.
- _____, 韋經建, 車丕照, “地域國際經濟法的基本原則”, 『法制與社會』第5期, 1998.
- 羅剛, “自由貿易區法律制度比較研究”, 『云南大學學報(法學版)』第4期, 2007.

- 馬瑞霞, “地域經濟合作組織比較研究”, 『山西煤炭管理幹部學院學報』, 2008.
- 孟祥秀, “論區域經濟安排與多邊貿易體制之關係”, 『哈爾濱學院學報』第11期, 2005.
- 莫謝伊, 王興權譯, “世界經濟全球化與地域化過程”, 『國外社會科學』, 2003.
- 慕亞平, 秦淑明, “世界貿易組織對區域貿易協定的規範及對我國的影響”, 『華南師範大學學報』第2期, 2004.
- 慕亞平, 洗一帆, “對WTO體制下的區域經濟一體化的法律分析”, 『學術研究』第6期, 2003.
- 龐德良, 張建政, “中日韓金融合作與東北亞區域經濟發展”, 『東北亞論壇』第4期, 2002.
- 戚文海, “東北亞地區科技共同體的框架”, 王勝今『東北亞地區合作與中國東北振興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007.
- 邱杓丹, “從《歐盟憲法條約》看國際組織法”, 『法制與經濟』(上半月)第2期, 2007.
- 沈四寶, 付榮, “區域貿易安排法律制度之比較研究”, 『視野』, 2007.
- , 王秉乾, “北美自由貿易區的經驗及對中國啓示”, 『法學雜誌』第6期, 2005.
- 沈文高, “特許經濟與品牌保護”, 『商業現代化』第10期, 1997.
- 石其寶, “「中日長期貿易協議」的發展歷程”, 『現代日本經濟』第5期(總第149期), 2006.
- 王凱, “中日FTA的政治經濟學分析”, 『亞太縱橫』, 2007.
- , 倪建軍, “中日自由貿易區: 動議, 收益與障礙”, 『現代國際關係』第4期, 2007.
- 王春捷, “區域經濟一體化的組織模式比較”, 『山東經濟』, 2005.
- 魏全平, “東亞濟一體化進程中的中日FTA戰略比較”, 『深圳大學學報』第25卷 第1期, 2008.
- 問云芳, “區域經濟一體化與多邊貿易體制關係的法律分析”, 西南政法大學碩士論文, 2004.
- 吳敏, “全球經濟一體化與區域經濟一體化的衝突與協調”, 『華東師範大學學報』第2期, 2008.
- 伍貽康, 張海水, “全球化與一體化辨析”, 『世界經濟研究』第5期, 2002.
- 鮮艷, “論兩岸四地經濟一體化法律制度的構建”, 西南財經大學 碩士論文, 2006.
- 新華社, “吳儀副總理在日本東海日中貿易中心成立50周年紀念會上的演講”, 『人民日

- 報』，2005.5.19.
- 許純，“區域經濟法制規制研究”，首都經濟貿易大學碩士論文，2005.
- 徐梅，趙江林，“中日兩國FTA戰略的比較分析”，『日本學刊』第6期，2006.
- 徐孟洲，“論地域經濟法的理論基礎與制度構建”，『政治與法律』，2007.
- 徐坡嶺，陳悅，“東北亞區域經濟合作的制約因素及模式選擇”，『當代亞太』第4期，2004.
- 薛林，“論GATT第24條對RTA與區域經濟一體化的規範”，『廣西政法管理幹部學院學報』，第21卷 第4期，2006.
- 楊麗艷，“地域經濟一體化法律制度研究”，武漢大學博士學位論文，2003.
- 楊忻，滕召學，“東北亞區域經濟合作應進一步加強”，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1期 第20卷，2005.
- 楊澤偉，“東北亞能源共同體法律框架初探”，『比較法研究』第4期，2006.
- 楊雪冬，王列，“關於全球化與中國研究的對話”，『當代世界與社會主義』第3期，1998.
- 楊義瑞，“日本對中日韓自由貿易區的立場淺析”，『世界經濟與政治』第5期，2004.
- 葉興平，“《北美自由貿易協定》的投資規則及其對多邊國際投資立法的影響”，『國際經濟法論叢』第6卷，2002.
- 虞學群，“談世界經濟全球化與世界經濟一體化的區別”，『審記與經濟研究』제6期，1994.
- 張寶珍，“經濟全球化需要研究的十大問題”，『世界經濟』第9期，1998.
- 張輝，“NAFTA爭端解決機制的內容和特點”，『甘肅政法成人教育學院學報』第1期，2007.
- 張樂平，“區域經濟合作模式-APEC初探”，外交學院 碩士論文，2002.5.
- 張曉靜，“經濟全球化背景下的區域經濟一體化研究”，『2008年中國國際經濟法學會暨學術研討會論文集(上)』，2008.
- 張壺，“中日韓自由貿易區戰略的比較研究”，『經濟研究導刊』第13期，2009.
- 張永志，“中日建立FTA/EPA面臨的障礙”，『經濟論壇』，2007.12.
- 趙建民，“試論構建“東亞共同體”的思想文化基礎”，『東北亞論壇』，第16卷 第1期，2007.
- 曾華群，“兩岸四地經合模式之展望”，王貴國：編『區域安排法律問題研究』，北京大

學出版社, 2004.

曾令良, “論WTO體制下區域貿易安排的法律地位與發展趨勢”, 『國際經濟法論叢』
第7卷, 法律出版社, 2003.8.

_____, “歐洲共同體對外關係與西歐一體化”, 『武漢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5期,
1992.

<일문어>

安藤光代, “東アジアにおける自由貿易協定(FTA)の經濟効果”, 『RIETI Research
Digest』 No.50, 2009.

金奉吉氏, 第3回 2 限 “北東アジア經濟圏の必然性”, 富山縣大學連携協議會公開講
座, 2009.9.26.

渡邊賴純, “日中韓FTAの可能性と課題”, 『エコノミスト』 (Weekly economist)87
(67)(4074), 毎日新聞社 [マイニチ シンブンシャ], 2010.

岩淵節雄, 佐藤賢明 共譯, 『國際經濟法』, 新讀書社, 1986.

孫基燮, “日中韓關係の構造轉換と方向性”, 『일본문화연구』 제17집, 2006.

“日本・中國・韓國の自由貿易協定に向けた可能なロードマップ—その課題と展望”,
『日中韓共同研究 國際シンポジウム』 (シンポジウムの概要), 2008.

“官房長官の中日FTAに對する議論”, 『毎日新聞』 (マイニチシンブンシャ),
2005.5.19

3. 기타자료

『東アジア經濟共同体構想と日本の役割』, 2003.6, 日本國際フォーラム政策委員
會第23政策提言(2010.3.9 방문), <<http://www.jfir.or.jp/j/pr/pdf/23.pdf>>

“北東アジア (環日本海) 經濟圏構想について”, 小松基地問題研究會. <<http://blog.goo.ne.jp/aehshinnya3/e/fc75463a4755c4cffe9a12c809873cfc>>(2010.3.18방문)

松井一彦, “東アジア共同体と日本”, <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20060421107.pdf> (2010.3.10 방문)

“日本・中國・韓國の自由貿易協定に向けた可能なロードマップ—その課題と展望”, 『日中韓共同研究 國際シンポジウム』(シンポジウムの概要), 2008.8.1.

“駐韓日本大使、北東アジア經濟共同体の實現に期待”, 韓國政治ニュース, < <http://www.wowkorea.jp/news/Korea/2009/0413/10055897.html>>(2010.3.13. 방문)

“建設東亞經濟共同体 時不我待”, 中國評論月刊網絡版, <<http://www.chinareviewnews.com>>(2010.3.24 방문)

盧錚, “韓學者倡議中日韓金融合作可從匯率入手”, 「中國証券報」, 2007.5.31. <<http://forex.money.hexun.com/2254399.shtml>>

劉江永, “東亞區域合作面臨新機遇及挑戰”, <<http://www.cass.cn/file/20100316261122.html>> (2010.3.24 방문)

吳瑟致, “中國大陸經濟崛起的國際環境因素之研究: 全球主義之觀點”, <<http://www.2.nsysu.edu.tw/sis/discuss/1C-2.pdf>>(2009.9.21 방문)

於兆升, “東亞經濟共同體的前景展望”, 共識網, 全球事務, 區域研究. <<http://www.21ccom.net/newsinfo.asp?id=5200&cid=10332500>>.(2010.2.10 방문)

人民網, <<http://www.people.com.cn/GB/shizheng/1026/2808425.html>> (2010.3.12 방문).

人民網日本語版(2009.7.24). <<http://japanese.dbw.cn/system/2009/07/24/000147222.shtml>>

“중국-싱가포르 FTA, 한중 FTA에 주는 시사점”, <<http://blog.naver.com/poem7777?Redirect=Log&logNo=60056490442>>(2010.3.1방문).

동북아시대위 문정인 위원장, “동북아경제공동체 미룰 수 없어”, 연합뉴스, 2004.10.27. <<http://cafe.daum.net/kbshistory>>

“박정희시기 한일 경제협력”,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jsessionid>>(2009.11.20 방문)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2008.12.12. <<http://stoo.asiae.co.kr/news/stview.htm?idxno=2008121214110619220>>

외교통상부, 정책홍보담당과실,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 2009.10.12.

오승렬, “한중 FTA의 전략적 의미”, < <http://webzine.ylc.or.kr/609>>(2010.2.11방문).

윤증현, “중동 등 신흥국과 경제협력 강화”, 2010.02.18, 뉴스핌 & Newspim.com

“중국-싱가포르 FTA, 한중 FTA에 주는 시사점”, <<http://blog.naver.com/poem7777?Redirect=Log&logNo=60056490442>> (2010.3.1방문).

이석수, “대동북아정책 평가 및 차기정부의 과제”, <www.hanyang.ac.kr/home_news/H5EAKB/0007/101/2007/196-1.pdf> (2010.3.22방문)

李洙勳, “동북아 공동체 건설의 과제”, 2006.2.14,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자료실. <<http://www.east-asia.or.kr/>>

FTA국내대책위원회, “한·중 FTA 교섭의 정체 원인은?”, <blog.daum.net/korusfta/16895163> (2010.3.1방문)

“한미·한일 투자협정(BIT)/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자료” 참조. <http://minbyun.org/?document_srl=4256> (2009.12.7방문)

“한중 FTA, 중국에게는 '정치전략적 FTA'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411110309&Section=05>(2009.12.4방문)

“한중 FTA, 농수산업 보호대책 뒤 추진”, YTN & Digital YTN, 2008.05.28.

윤증현, “중동 등 신흥국과 경제협력 강화”, 2010.02.18, 뉴스핌 & Newspim.com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日韓 스왑 협정에 관하여”, 1999.3.20. <http://www.kr.emb-japan.go.jp/diplo/d_ecocrisis/r_eco_990320_01_4_01.htm>

“최근 한일 경제관계 현황”, 일본개요/ 종합뉴스, 2007.12.22. <<http://cafe.naver.com/innolife.333>>

외교통상부, “한·일 정상회담 결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2008.2. 27.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의 이야기: 동북아지역공동체”, <<http://www.ccps.gov.cn/syzblm/sxldt/13063.htm>>(2010.3.23방문).

“한국과의 주요이슈”, KOTRA <<http://wepic.co.kr/home/nationTrend/printViewGenerall.jsp?GTSEQ>>(2010.2.25 방문)

“한국은행, 일본은행과의 원/엔 통화스왑계약 규모 확대”, 보도자료, 2008.12.12. <<http://www.bok.or.kr>>

경향신문	The Kyung Hyang Shinmun/ www.khan.co.kr
내일신문	The Naeil News/ www.naeil.com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
연합뉴스	Yonhap News/ http://www.yonhapnews.co.kr
조선일보	The Chosun Ilbo/ www.chosun.com
통일뉴스	The Tongil news/ www.tongilnews.com

한겨레 The Hankyoreh/ www.hani.co.kr
한국일보 The Hankook Ilbo/ www.hankooki.com

4. 웹사이트

국제무역연구원 <http://iit.kita.net>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동남아국가연합 <http://www.aseansec.org/index2008.html>
세계무역기구 <http://www.wto.org>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http://www.apec.org>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유럽연합 <http://europa.eu>
유럽자유무역연합 <http://www.eftafairtrade.org>
일본외무성 <http://www.mofa.go.jp/index.html>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http://www.jeju.kr.emb-japan.go.jp>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http://www.mofcom.gov.cn>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 <http://www.fmprc.gov.cn/chn/gxh/tyb/>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중무역투자정보망 <http://koreachina.mke.go.kr>
FTA활용지원단 <http://fta.kita.net>

Abstract

A Study on Modeling for Korea-China-Japan Economic Community

-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Law -

Hong Dong, Cui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Economic glob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community are becoming two trends of the world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formation of WTO, economic globalization is entering a new stage on the basis of the integration of international market and the formation of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trade norms. However,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4th Doha Round of talks in 2003, it makes many Countries realize the limits of multilateral trade system. So, nowadays, regional economic community is developing at high speed and becoming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form. Generally speaking, the types of regional economic community comprise FTA, Customs Union, Common Market, Economic Union and 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With development and formation of regional economic community, Korea, China and Japan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ree Countries. Since the conclusion of

China-ASEAN FTA, Korea, China and Japan all have begun to conclude RTA with the other Countries or regional organization. Furthermore, Korea, China and Japan are separately negotiating or have concluded a bilateral FTA with ASEAN.

At present, Korea-China, Korea-Japan and China-Japan BITs were concluded among three Countries, and are expected to develop into regional investment treaty among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are exploring and discussing a promotion plan for the investment security and the liberalization. However, the promotion of RTA among three Countries has not completely succeeded. Korea-Japan FTA negotiation which began in 2003 is in a suspended state because of Korean anxiety about the possible damage of manufacturing and Japanese anxiety about the possible damage of agricultural sectors. And the industry-government-academia joint study of Korea-China FTA had been finished, but Korea and China can not begin to negotiate Korea-China FTA because of Korean anxiety about possible damage of the agricultural field.

Recently, with a prominent regionalization of the global economy, a construction plan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is actively discussed. However, the plan was not realized. Korea, China and Japan are promoting th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various fields, but Korea-China-Japan FTA can not be concluded and are in a process of industry-government-academia joint study.

There are the world's highest economic growth rates, potential powers and high trade dependence in Northeast Asia, so that Northeast Asian area can be called the most dynamic economic region in the world. Therefore, if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does not form, it is unfavorable fo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global economic position. As the central Countries of Northeast Asia, from the GDP, trade volume,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the population, Korea, China and Japan have the potential powers which can develop into one of the three major economic blocs including Europe and North America.

At the Trade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Japan and China on 23 May 2010, three Ministers discussed the high possibility of development from Trade Ministers' Meeting's regularization to the conclusion of investment agreement, FTA and to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promotion of Korea-China-Japan FTA was discussed at the meeting. At the 3rd Korea-China-Japan summit meeting on 29-30 May 2010, the summits also discussed and exchanged opinions on the establishment of common market in the long term, concluding the investment agreement within the year of 2010 and promoting FTA.

Though the conclusion of Korea-China-Japan FTA is an important project, Korea, China and Japan are sure that the FTA among three Countries will and need to be concluded because they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an economic community vision at the 3rd Korea-China-Japan summit meeting. In this sense, it seems to be significant that Korea, Japan and China build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on the basis of conclusion of FTA. But now it is impossible to build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including China, South Korea, North Korea, Japan, Russia and Mongolia, so Korea-China-Japan economic community is supposed to be firstly established.

With the spread of regionalism, Korea-China-Japan economic community is mostly studied on economically, and until now there are not so many studies in international law area. If a specific regional economic community forms, it is essential to build organs, system or policy for its operation and management. Although there are political conflicts and economic obstacles in the process of build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in response to the trend of global economic development, Korea, Japan and China have

realized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an economic community in Northeast Asia by an attitude of open regionalism. Considering these aspects, this thesis decided to study the necessity and legal basis for the building of Korea-China-Japan economic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And what's more, in order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ree Countries, they have realized that it is important that the binding Korea-China-Japan economic community is built legally.

In this thesis, the study for Korea-China-Japan economic community was mainly performed by methods in literature study as well as the case analysis. In order to study the ideas of Korea-China-Japan economic community, the viable plans on the concrete development path of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was proposed by studying and analyzing possibility and the obstacles on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By analyzing the differen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the contents of the establishment treaty of Korea-China-Japan economic community', establishment object, fundamental principles, legal status of activity field, activities procedures, implementation of organs' resolution,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main organs and so on are necessary for the building of Korea-China-Japan economic community model.

Korea, China and Japan are facing many restrictions in building Korea-China-Japan economic community because of the imbalance of economic development level, historical issues, territorial disputes, maritime disputes and political conflicts among the three Countries. But these barriers can not block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Japan economic community. In this sense, the NAFTA is a very special model case. Because the economic obstacles can be overcome by fully using subsidiary, adequately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each country, eliminating tariffs in steps, and implementing national compensation policy in vulnerable sectors on the basis of mutual benefit and win-win principles from now on. In fact, the political conflict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re not a major problem in comparison to the conflicts between France and Germany in the EU integration process. A Korea-China-Japan permanent secretariat will be established next year.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Japan permanent secretariat will not only institutionalize th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but also become an important a steppingstone in building East Asian community, concluding Korea-China-Japan FTA, forming Korea-China-Japan economic community or furthermore Northeast Asian community. With institutionalizing the Korea-China-Japan economic cooperation, the various political pending issues among the three Countries will be settled.

As a completion stage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the development directions and procedures of Korea-China-Japan common market are suggested in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If Korea-China-Japan common market will form, it will be enlarged to North Korea, Mongolia, Russia and form a real Northeast Asian common market.

The formation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will be able to build the foundation for coexistence and common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nd it can also increase economic benefits, enhance cooperation in politics, culture, security, environment and other fields, and resolve political conflicts. As one axis of Northeast Asian community, Northeast Asian common market has a crucial role in the process of building Northeast Asian community. Northeast Asian common market, such as EU, can lead to more cooperation in many fields, continue to expand and finally develop into Northeast Asian community. But Northeast Asian community is not a supranational organization, has no supranational organs and is a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organization. The formation of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is favorable not only for the regional peace and prosperity but also for the world peace and stability. It can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a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and even in the global economic development.